화학물질관리법 해설서

2015. 1.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 주의 사항 ≫

❖ 본 해설서는『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12490호, 2015.1.1. 시행)』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서, 동 법령의 골자와 주요 제도들에 대한 해석 및 질의·답변사례 등을 담고 있습니다.

❖ 본 해설서는 동 법령 관련 업무종사자들이 혼란이 없이 법적 의무의 이행을 돕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 본 해설서는 현재까지의 경험과 정책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므로, 행정 여건 또는 정책적 판단이 새롭게 변화되는 경우, 또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해설서는 동 법령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을 기술하고 있어 개별 사항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며, 본 해설서에 명시된 내용은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본 해설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와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홈페이지(http://www.chemnavi.or.kr)에 게재되며, 지속적으로 보완될 예정입니다.

순 서

Ⅰ.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란? ····· 1

1. 화관법 개요 ····· 3

2. 화관법의 주요 내용 ····· 6

3.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관별 기능·역할 분장 ··· 21

4.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이행사항 일람 ··· 22

Ⅱ. 화관법 주요 규정별 해설 ····· 32

1. 화학물질 관리 ····· 34

2. 취급사업장 안전 ····· 89

3. 영업 관리 ····· 184

4. 사고 예방·대응 ····· 265

Ⅰ.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란?

1. 화관법 개요

□ 목적

○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

○ **화학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

□ 주요 구성

○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설치·운영기준 구체화 등의 **안전관리 강화**

○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 및 영업허가제 신설 등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 강화**

* 사업장 밖의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 개념에 따라 시설을 설계·설치하였는지 확인하는 과정

○ 사고대비물질 관리 강화, 화학사고의 발생 시 즉시 신고의무 부여 및 현장조정관 파견 등 **화학사고의 대비·대응**

□ 사업장의 주요 의무사항

구분	사업 양태					이행 의무	시기
	제조	수입	판매	사용	보관		
장외영향평가	O	X	X	O	O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운영자 ▪ 평가서 제출 및 결과에 따른 시설 보완 * 위험도 확인 ↔ 보완·조정	▪ 기존시설: '19년 12월 말까지 단계별 시행 ▪ 신규시설: '15.1.1~ (착공 30일 전)
시설관리	O	X	O	O	O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운영자 ▪ 시설 배치, 설치, 관리기준 준수	'19년 12월말까지 개선
사고대응	O	X	O	O	O	▪ 모든 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운영자 ▪ 화학사고 시 조치 의무 * 즉시 신고, 위해관리계획에 따른 조치	'15.1.1~

참고 화관법 구성 체계

□ 화관법은 **총 6장 64조 및 부칙**으로 구성

< 화관법 체계도 >

제1장 총 칙	제1조 ~ 제8조	-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국가 등의 책무 -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화학물질관리 위원회 등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9조 ~ 제12조	- 화학물질확인 -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제1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	제13조 ~ 제22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량 제한 등 -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등 - 금지물질의 취급금지 -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허가 등 -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 -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 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23조 ~ 제26조	-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 - 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및 영업허가	제27조 ~ 제30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제31조 ~ 제38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등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권리·의무의 승계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활용 승인 등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제39조 ~ 제42조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제43조 ~ 제47조	-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 화학사고 현장 대응 - 화학사고 영향조사 - 조치명령 등 -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제6장 보 칙		제48조 ~ 제64조	-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보고 및 검사 등 - 서류의 기록·보존 - 청문 - 자료의 보호 -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 수수료 - 권한의 위임·위탁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2. 화관법의 주요 내용

≪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

□ 화학물질 확인 (법 제9조)

○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해당 화학물질이 다음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예외: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 제조 또는 수입 후 14일 이내에 제출 가능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시 유독물질 등을 함유한 경우 법에서 정한 별도의 신고(허가) 등의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확인대상 】

-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 ▸ 유독물질
- ▸ 허가물질
- ▸ 제한물질
- ▸ 금지물질
- ▸ 사고대비물질

【 화학물질 확인에 필요한 서류 】

- ▸ 성분명세서: 제조·수입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CAS* No. 함량 등을 적은 서류
  * Chemical Abstracts Service
- ▸ 제조자·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받은 자가 제공하는 확인관련 서류

※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은 제외

※ 화학물질확인 증명: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화학물질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확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명 신청하는 제도

□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법 제10조)

○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통계조사를 통해 화학물질 관리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합니다.

* '취급'(화관법 제2조제12호):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함

➡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4-254호, '14.12.31)

【 화학물질 통계조사 】

- 조사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 조사주기: **2년**
- 조사내용: 화학물질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
- 조사방법: 조사시스템 구축·운영 등
- 업무흐름도

조사표 작성 (나라 통계조사보고시스템 제출) 《사업장 → 환경청》 ※ 협회 지원	⇒	조사표 취합·승인·조사 《환경청》 ※ 협회 지원	⇒	조사결과 검증 및 분석결과 보고 《화학물질안전원》	⇒	조사결과 발표 《환경부》

□ 배출량 조사 (법 제11조)

○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에서 자발적인 화학물질의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배출량 조사**를 실시합니다.

➡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4-255호, '14.12.31)

【 배출량 조사 】

- 조사대상: **배출량조사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 조사주기: **매년**
- 조사내용: 화학물질 취급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 등
- 조사방법: 조사시스템 구축·운영 등

< 화관법 통계조사 보고절차 체계도 >

조사대상여부확인

-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사업장이면서 41개 업종 해당여부확인
- 화학물질 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입여부 확인

⇩

제품별취급량조사

- 제품별 입고량(제조, 수입, 구매, 이월)과 출고량(사용, 판매, 수출, 재고) 확인
  - 제품별취급량 1ton 초과 여부 확인
  (단,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은 100kg 초과 경우 대상임)

⇩

구성성분조사

- 제품별 성분명세서, MSDS, 시험성적서, 구성 성분표 확인

⇩

시스템가입 /업체정보확인

- 화학물질 통계조사 시스템 접속 (http://www.narastat.kr/chemdata)
- 업체검색(업체별 등록번호 입력)
- 검색결과 없는 경우 신규업체가입(승인절차 필요)
- ID/PW 등록
- 불러오기된 업체정보 확인

⇩

서식1 일반사항작성

- 대표업종
- 농공단지
- 종업원수
- 유입수계
- 산업단지
- 연간매출액 등 23개 항목

⇩

서식2 제품취급현황작성

- 제품별 용도, 구성성분, 형태, 단위, 나노물질여부
- 입·출고량, 수출정보(해당국가 선택)
- 성분보유자정보입력

⇩

보고서 제출

- 보고서 제출 버튼 클릭
- 제출번호확인(보고시스템에서 확인가능)

□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법 제12조)

○ 정보의 공개

- 조사결과는 조사완료 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 **기업의 영업기밀과 관련된 사항 등*** **공개여부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통지·소명기회**를 **부여**합니다.

  * 비공개 사유의 해석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임('15.3월)

≪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 (법 제13조)

○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경과규정

-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자**로서 시설·장비·설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16.12.31일까지** 이행하여야 합니다.

【 취급기준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관리할 것

▸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 보관·저장하지 말 것

▸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일 것

▸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취급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법 제14조)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4-259호, '14.12.31)

□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량 제한 등 (법 제15조)

○ 유해화학물질을 **일정량*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진열보관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독물질: 500㎏ /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100㎏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1회 일정량*을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 사전에 운반자, 운반시간, 운반경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운반계획서**를 작성하고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독물질: 5톤 /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3톤

□ 유해화학물질 표시 (법 제16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국제연합번호** 등이 포함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경과규정

-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 표시를 한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16.12.31일까지** 이행하여야 합니다.

< 例: 보관 · 저장시설, 진열 · 보관 장소에 표시하는 경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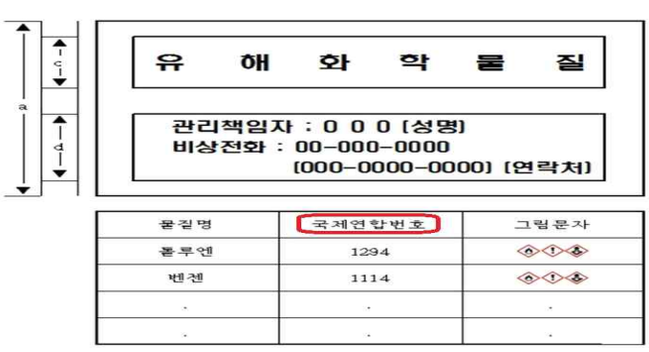

□ 금지·허가물질 등의 취급 및 수입허가 (법 제17~21조)

○ (**금지물질**) 누구든지 금지물질을 취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물질**)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제한물질**) 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한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적정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종전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15.12.31일까지 환경청으로부터 허가증 갱신 필요

○ (**유독물질**)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신고**합니다.

* 종전 수입신고를 한 자는 '15.12.31일까지 환경청으로부터 신고증 갱신 필요
※ 다만, 2015년에 한해 유독물 수입신고 업무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대행

□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법 제23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받는 제도입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4-253호, '14.12.31)

➡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4-260호, '14.12.31)

○ **사업장**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부담을 덜기 위해 범용프로그램**을 **개발·배포**('14.12.31)하였습니다.

* (**이용방법**)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접속

▷ 홈피 상단의 "정보마당" ≫ 장외영향평가 ≫ 6.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지원 범용프로그램 게재에서 다운로드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 제출 절차 체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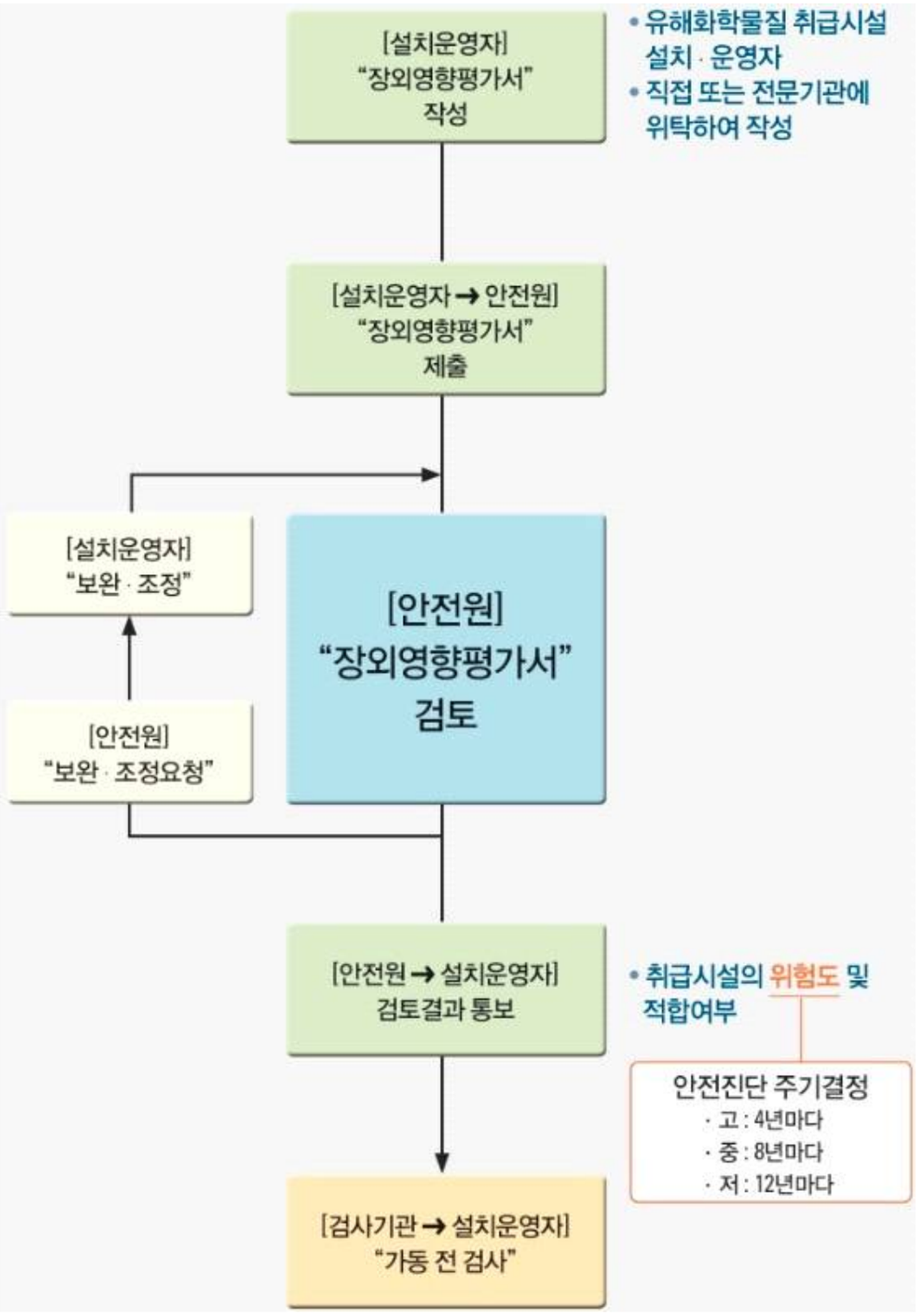

○ 경과규정

【 화관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

① 2015년 12월 31일까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제출 대상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② 2016년 12월 31일까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③ 2017년 12월 31일까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④ 2018년 12월 31일까지

- ①부터 ③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⑤ 2019년 12월 31일까지

- ①부터 ③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 화관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자 】

① 2018년 12월 31일까지

- 위 ①부터 ③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② 2019년 12월 31일까지

- 위 ①부터 ③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 화관법 시행당시 취급시설 설치 중인 자 】

- 2015년 이내 제출

□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 개선명령, 자체점검 (법 제24~26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설치·운영되어야 합니다.

○ 경과규정

-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영업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9.12.31일까지**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 검사 및 안전진단 】

▸ 취급시설 설치를 완료한 자는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취급시설별 자체·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한국환경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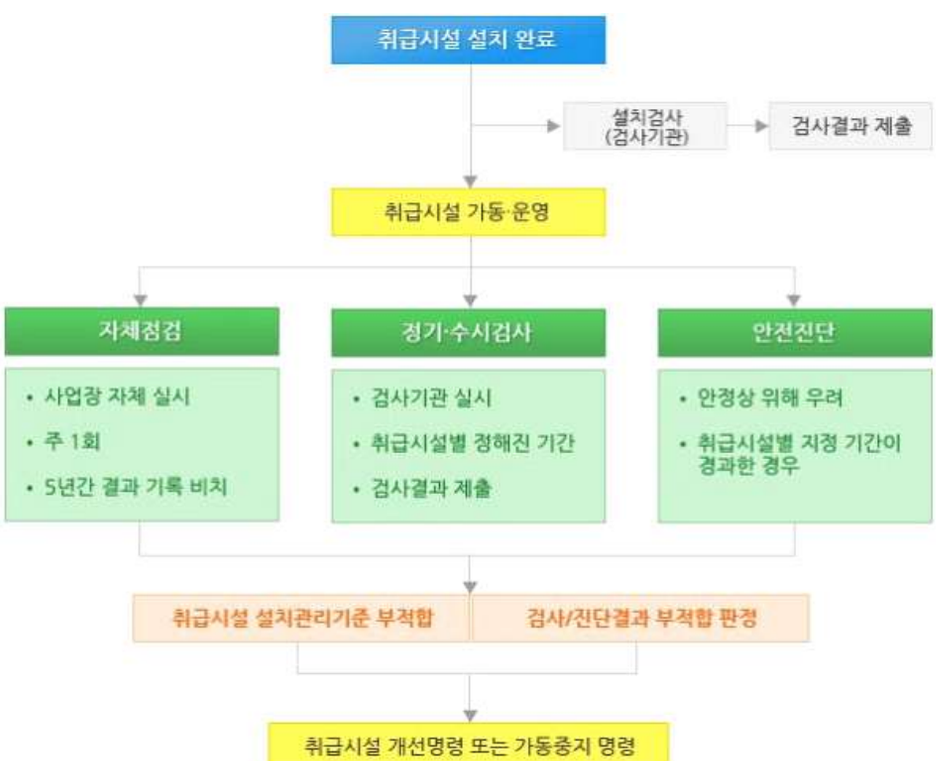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환경부 고시 제2014-251호, '14.12.31)**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4-258호, '14.12.31)**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

□ 유해화학물질 영업 구분, 허가 등 (법 제27~28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영업 구분(금지물질 및 허가물질 제외)
·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

【 영업허가신청 시 제출 서류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제23조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제24조제5항에 따라 적합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제41조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기술인력 명세서 등

※ 업종별 보관·저장시설 용량의 증가 등 변경사항은 변경허가·신고

□ 도급 신고 (법 제31조)

○ **유해화학물질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

➡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환경부 예규 제537호, '14.12.31)

○ 경과규정

- **현재**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 중**인 경우는 '15.12.31일까지 도급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법 제32조)

○ **유해화학물질영업자**는 취급시설의 안전확보 등을 위해 사업 개시 전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해임 또는 퇴직한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경과규정

-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관리자**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자를 임명**한 경우에는 **'15.12.31일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법 제33조)

○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등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영업자는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

□ 사고대비물질 지정 및 관리 (법 제39~40조)

○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일정 수량이상 취급**하는 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제출**하고 **지역사회**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업종)은 2015년 내 제출, 규정수량은 2016년 내 제출, 기타 사업장은 2017년 내 제출

□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법 제41조)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4-256호, '14.12.31)

○ **사업장**의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부담을 덜기 위해 범용프로그램**을 **개발·배포**('14.12.31)하였습니다.

* (**이용방법**)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접속

▷ 홈피 상단의 "정보마당" ≫ 위해관리계획 ≫ 6.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지원 범용프로그램 게재에서 다운로드

【 위해관리계획서의 주요 내용 】

-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 절차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계획
-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산계획
-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법 제42조)

○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취급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위해관리계획서 내용 중 다음의 정보를 알기 쉽게 **매년 1회** 고지하여야 합니다.

☞ 화학물질안전원에 위해관리계획 **고지 전담 사이트**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 제출 및 지역사회 고지 절차 체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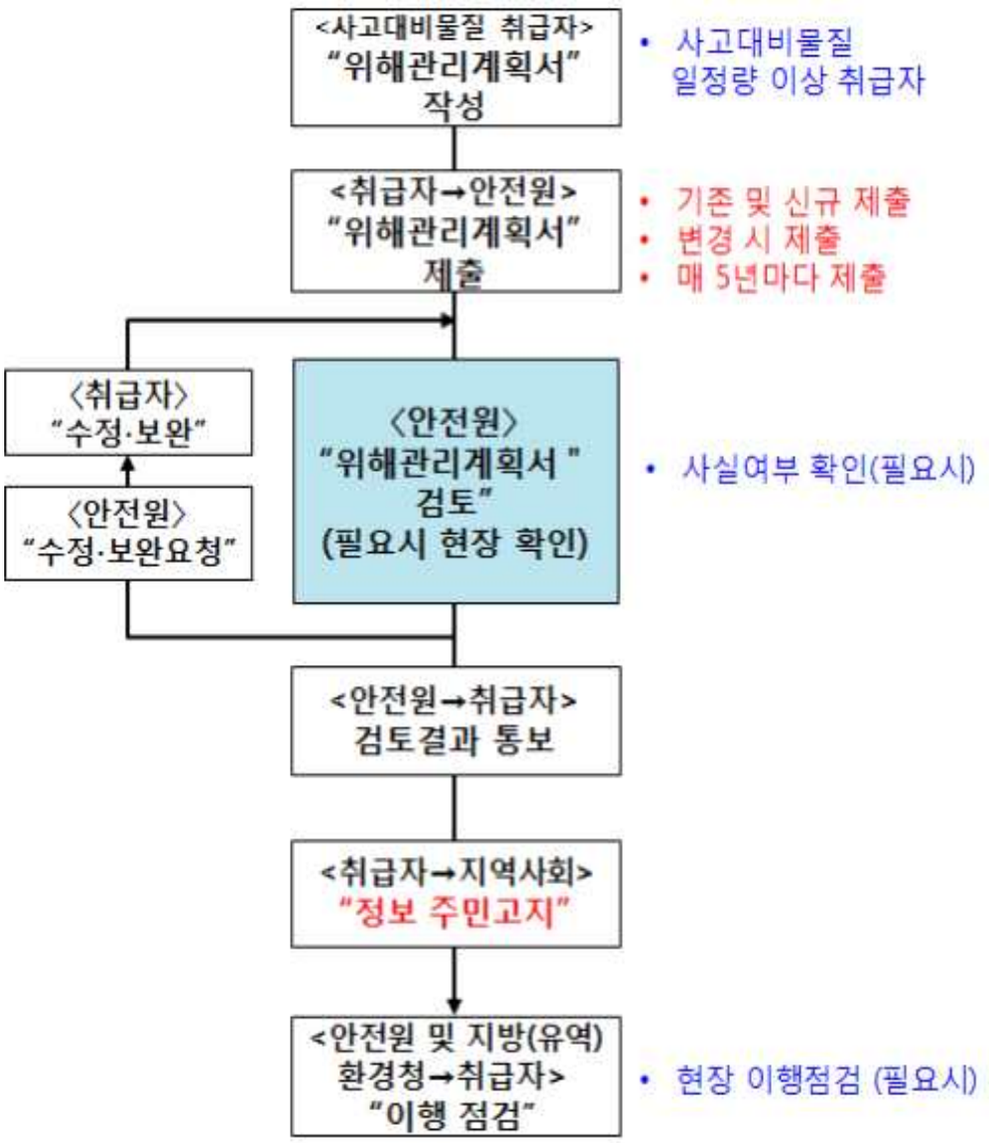

□ 화학사고 발생신고, 현장대응 (법 제43～44조)

○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환경부 예규 제538호, '14.12.31)

- 화학물질 유출·누출로 **사람이나 사업장 밖의 환경에 영향**이 있는 경우는 **즉시 신고(15분 이내** 다만, 화학물질 취급자가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 화학물질이 유출·누출되었음에도 인명피해가 없고, 사업장 밖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는 유해화학물질이 5L 또는 5kg을 초과 시 신고, 유해성·이화학적 특성이 확보된 물질은 기준량 별도 설정(**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 화학사고 조치 흐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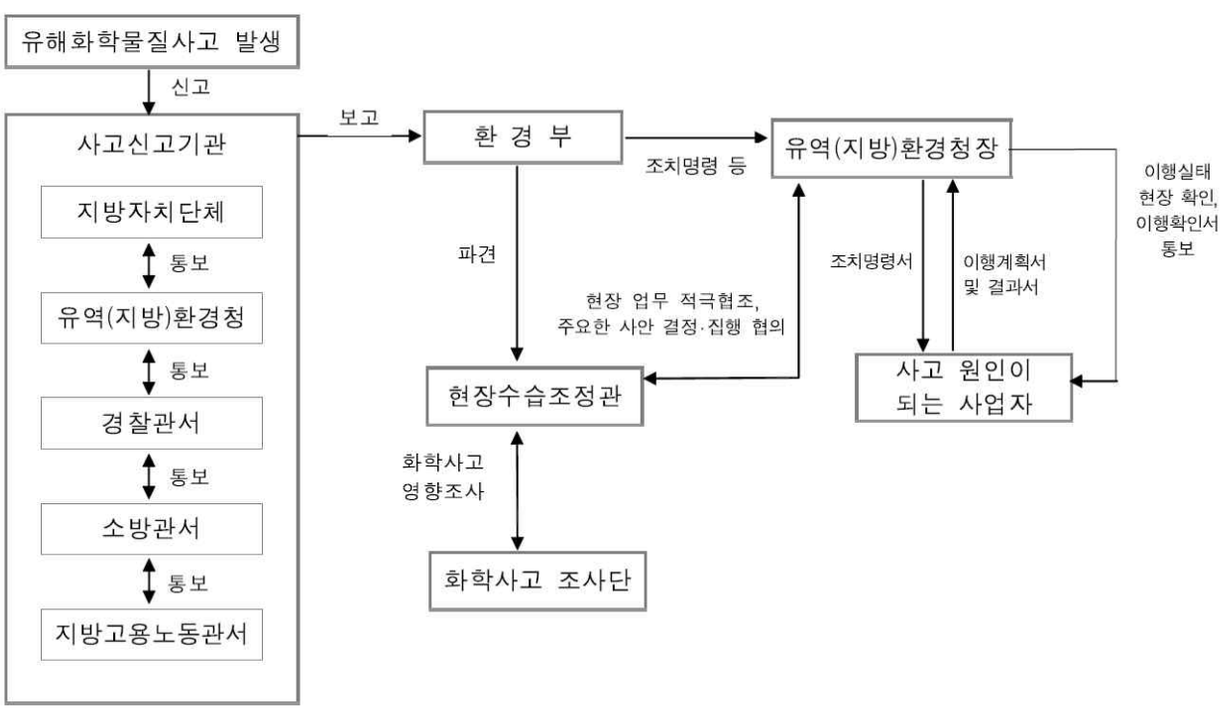

참고 화관법의 주요 관리체계 개괄

□ 관계기관별 규제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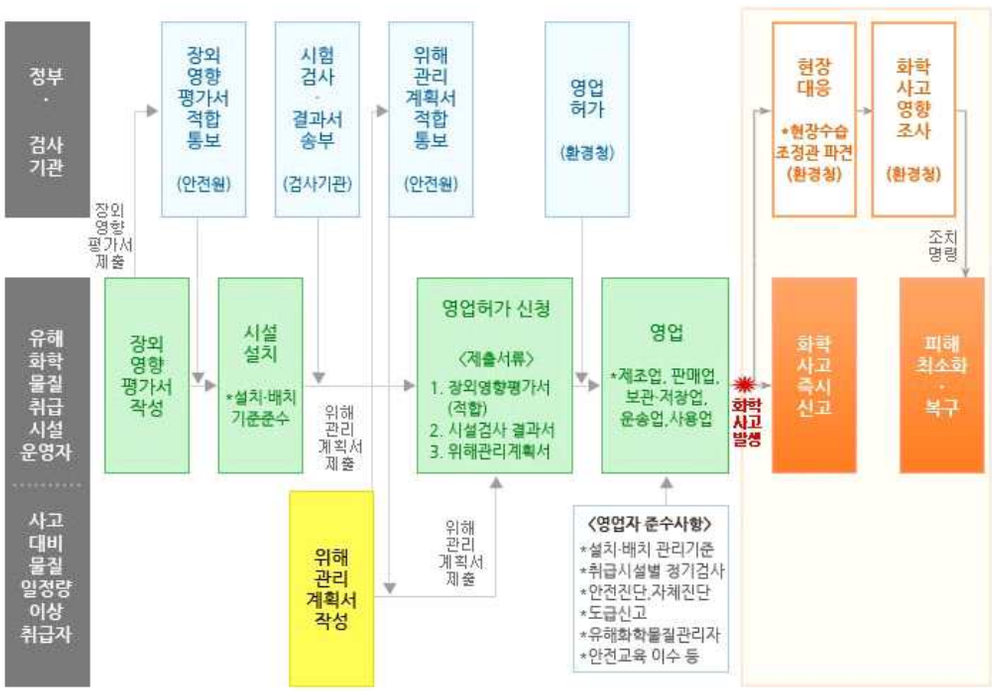

□ 유해화학물질별 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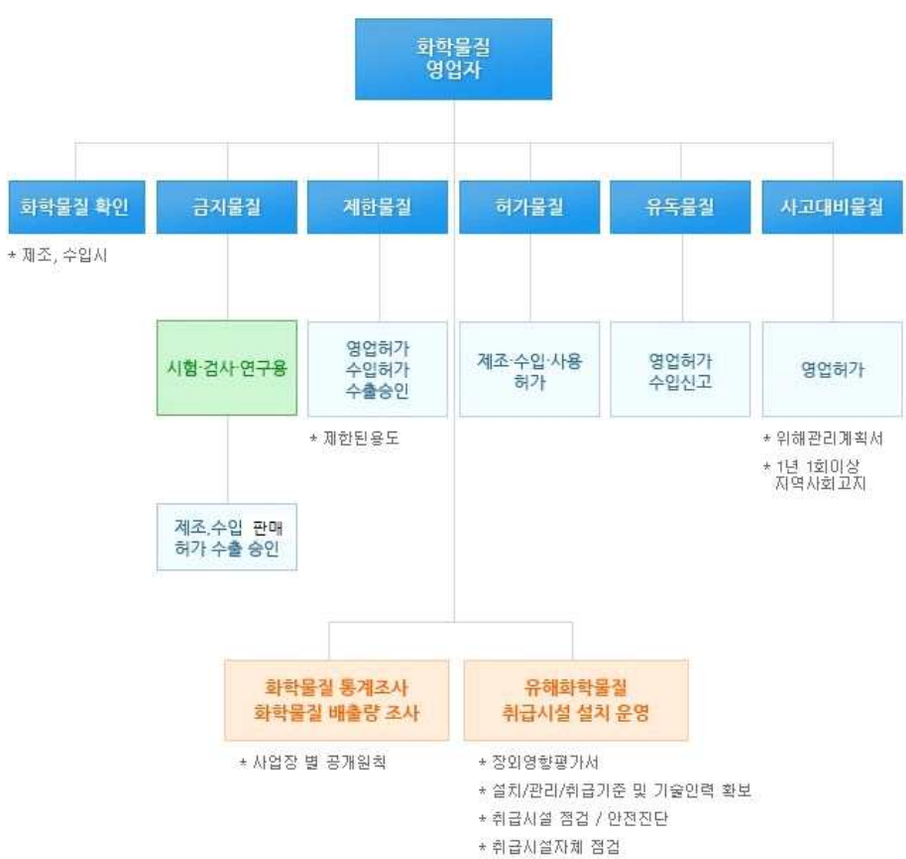

3.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관별 기능 · 역할 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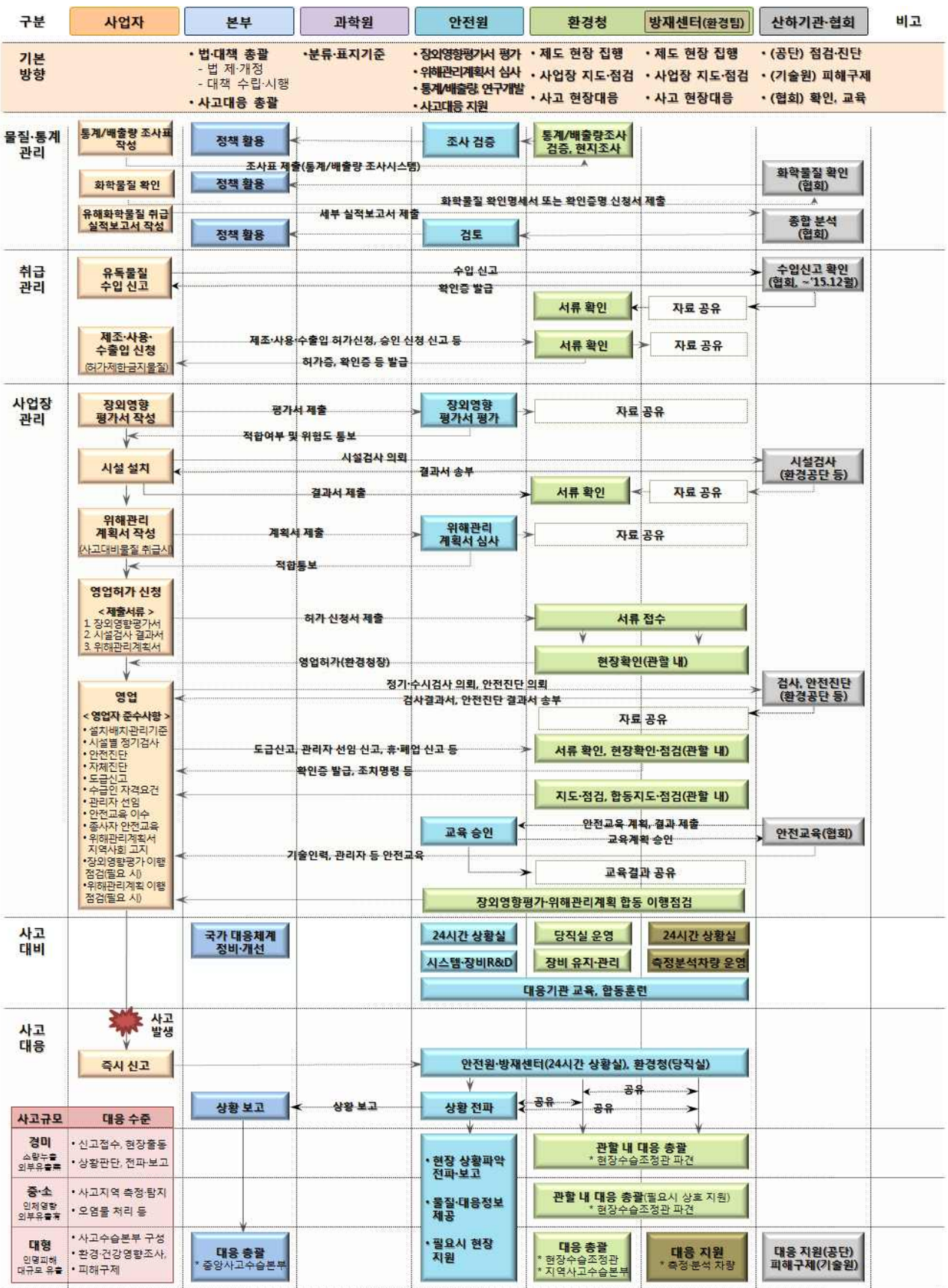

4.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이행사항 일람

제목	세부내용	대상	이행시기 또는 경과규정	벌칙	행정처분
화학물질 확인제도 (법 제9조)	◦서류: 확인명세서, 확인자료 ◦제출처: 한국화학물질협회	◦화학물질 제조 또는 수입자	◦제조·수입전 ※ 시험용 등은 14일 이내		◦미제출, 거짓제출시 : 천만원 이하 과태료 **※ 위반일자별 처분**
화학물질 통계조사 (법 제10조)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 현황 제출	◦화학물질 제조, 보관·저장, 수출·입, 사용자 등	◦매 2년마다 ※ 2015년 조사		◦미제출, 거짓제출시 :개선명령~영업정지 및 천만원 이하 과태료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법 제11조)	◦화학물질 배출 현황 제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매 1년마다		◦미제출, 거짓제출시 :개선명령~영업정지 및 천만원 이하 과태료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법 제13조) [강화]	**◦안전사고 예방 강구 등** ◦공통기준(46항목) ◦구체적인 기준은 화학물질 안전원장 고시 ※ 734종 고시 완료('14.12.31)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시설, 장비 및 설비기준 :'16년말까지	◦기준 미준수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기준 미준수 :개선명령(경고)~영업정지
취급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법 제14조) [신설]	◦기체, 액체 증기 발생 우려가 있은 경우 등 ◦물질별 기준은 장관 고시 ※사고대비물질별 고시 예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보호구 미착용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호구 미착용 :개선명령(경고)~영업정지

제목	세부내용	대상	이행시기 또는 경과규정	벌칙	행정처분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량 제한 (법 제15조) [일부 신설]	◦일정량 초과 **진열·보관**시 계획서를 환경청에 제출 ·유독물질 : 500㎏ ·허가물질 등 : 100㎏	◦판매자		◦초과 진열 등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초과 진열 등 :개선명령(경고)~영업정지
	◦일정량 초과 **운반**시에 계획서를 환경청에 제출 ·유독물질 : 5,000㎏ ·허가물질 등 : 3,000㎏	◦운반자 (제조업, 판매업, 운반업 등)		◦초과 운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초과 운반시 :경고~영업정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법 제16조) [강화]	◦보관·저장·운반 시설, 용기 등에 표기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 정보, **국제연합번호**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기존 표시자 :'16년말까지	◦미표시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미표시 :개선명령~영업정지
금지물질 허가 (법 제18조)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 시약으로 제조, 판매, 수입시에만 허가	◦금지물질 제조, 판매, 수입자		◦ 금지물질 취급시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허가 또는 변경허가 미이행 :6개월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제목	세부내용	대상	이행시기 또는 경과규정	벌칙	행정처분
허가물질 허가 (법 제19조) [신설]	◦위해성 자료, **대안분석, 대체 계획서 등 제출** ◦공동 허가 신청 가능 ※허가시 허가기간을 부여 (만료전 재허가 신청)	◦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자		◦미허가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허가조건 미이행 :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 신고 (법 제20조)	◦제한물질 수입전에 환경청 허가 이행	◦제한물질 수입자	※기존 허가받은 자는 1년 이내 환경청으로부터 허가증 갱신	◦미허가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유독물질 수입전에 환경청 신고 이행 ※ 다만, 2015년은 한국화학물질 관리협회에서 신고업무 대행	◦유독물질 수입자	※기존 신고자는 1년 이내 환경청으로부터 신고증 갱신 ※ 2015년은 협회에서 대행	◦미신고 :1년이하 징역 또는 3만원 이하 벌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 승인 (법 제21조)	◦제한용도로 수출하는 제한물질, 금지물질 수출시 환경청에 승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수출자		◦제한물질 수출미승인 :1년이하 징역 또는 3만원 이하 벌금 ◦변경승인 미이행 :6개월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제목	세부내용	대상	이행시기 또는 경과규정	벌칙	행정처분
화학사고 장외영향 평가의 작성·제출 (법 제23조) [신설]	◦착공일 **30일전에 안전원 제출 ·안전원에서 고중저위험도 결정** ◦취급시설 증설, 위치변경, 물질변경시 다시 제출 ◦**소규모 취급**하면서 화학사고 영향 없을때는 **간이 제출** ※ 소량기준(409종) 장관 고시, 전문기관 작성 가능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설치·운영자	◦ 기존 운영자 (허가자) :'15~'19년까지 (설치운영자) :'18, '19년까지 ◦설치중인 자 :'15년말까지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준수 (법 제24조) [신설]	**①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제조/사용, 실외, 실내, 지하, 차량, 배관 등 6개분야로 세분화 **②시설 검사** ◦설치완료시 : 가동전 ◦설치·운영시 (정기)허가업체는 1년, 면제업체는 2년마다 (수시)사고발생시 7일이내 **③안전진단** (안전우려시)검사일로부터 20일 이내 (정기)고위험 시설은 4년 중위험 시설은 8년 저위험 시설은 12년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설치·운영자 ※검사기관 :한국환경공단 등 ※검사 및 안전진단 결과는 환경청에 제출	◦ 기존 허가자 :'19년말까지	◦안전진단 결과 미제출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적합 시설 운영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검사, 안전진단 미실시 :개선명령~영업정지 ◦안전진단 결과 미제출 :개선명령~영업정지

제목	세부내용	대상	이행시기 또는 경과규정	벌칙	행정처분
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법 제25조)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맞지 않을 경우 ◦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한 경우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설치·운영자		◦개선명령 불이행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선명령 불이행 :개선명령~영업정지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법 제26조) [강화]	◦**주1회 점검** ◦최종 기록일로부터 **5년간 비치**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설치·운영자		◦미점검 또는 5년간 미보존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미점검 또는 5년간 기록 미보존 :개선명령~영업정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법 제28조) [강화]	◦**허가 서류 확대** ·적합받은 장외영향평가서, 시설 검사결과, 위해관리계획서 추가 ◦**취급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신설** ◦유독물이 아닌 **사고대비물질도 영업허가 대상**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	◦기존 사고대비물질 취급자 영업허가 :'15~'17년말까지 ◦취급시설, 기술인력 등 :'17년말까지	◦미허가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변경허가 미이행시 :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변경허가 미이행시 :개선명령~영업정지 ◦ 변경신고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영업허가 면제 ◦ 기계, 장치에 내장된 경우 ◦ 한번에 1톤 이하 운반 ◦ 제한물질 : 60톤 이하 사용 ◦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 시약인 경우 ◦ 유독물질 : 120톤 이하 사용, 단 전용공업지역은 240톤 이하 ◦ 유독물이 아닌 사고대비물질 : 연간 100㎏ 이하 사용 **※영업의 종류 : 제조업, 사용업, 운반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제목	세부내용	대상	이행시기 또는 경과규정	벌칙	행정처분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신고 등 (법 제31조) [신설]	◦**도급 신고** 의무화(10일 이내) ◦도급업체 **책임 강화** -수급인 관리·감독 의무 -능력, 기준 적합한 수급 업체에만 도급 ◦수급인의 위반처분은 도급인에게도 영향을 미침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기 도급자 :'15년말까지		◦미신고시 :경고~영업정지 및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무능력자 도급, 수급자에게 무리한 취급시설 운영 요구 :경고~영업정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법 제32조) [강화]	◦**선임·해임·퇴직신고** 의무화 (종류) 책임자, 점검원 (자격) 종전과 유사 (인원) 취급량, 종사자수에 따라 점검원 추가 선임 (직무대행자) 질병 등 사유 발생시 지정, 최대 60일 ※종업원 10명 미만은 점검원이 책임자를 겸함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기 임명자 :'15년말까지		◦미선임시 :개선명령~영업정지 ◦미신고 또는 직무 대리자 미지정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법 제33조) [강화]	◦ **(전문교육)** -기술인력, 관리자, 취급 담당자는 2년 16시간 ◦ **(종사자교육)** 년 1회, 2시간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안전교육 미실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2.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3.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제목	세부내용	대상	이행시기 또는 경과규정	벌칙	행정처분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단 및 휴업·폐업 등(법 제34조) [강화]	◦**30일 이상** 취급중지시 안전 관리 대책 수립 ◦**60일 이상** 취급중지시 잔여 유해화학물질 처분 ◦**휴·폐업 10일전**에 환경청 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잔여물질 미처리시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휴·폐업전 조치명령 미이행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휴·폐업 미신고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법 제36조) [신설]	◦**부과원칙** -매출액의 100분의 5이하, 단일사업장은 1천분의 25 ◦**1일당 과징금** -연 매출액의 3,600분의 1 단일사업장은 7,200분의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권리·의무의 승계 (법 제37조)	◦영업자 사망, 양도, 법인 합병되는 경우 등 ◦30일 이내 환경청 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미신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목	세부내용	대상	이행시기 또는 경과규정	벌칙	행정처분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활용 승인 등 (법 제38조)	◦같은 부지나 건축물 내 2 이상인 경우, 환경청에 신청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미승인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준수 (법 제40조)	◦**(일반)**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개인보호구 착용 등 ◦**(개별)** 황산, 질산 등 도난·전용 위험물질(16종) ·인수·인계서 작성 ·외부인 출입대장 작성 등 ※대학,연구기관 등 연구실 제외	◦사고대비물질 취급자		◦기준 미준수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관리기준 미준수시 : 개선명령~영업정지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법 제41조) [강화]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시는 안전원에 제출**(5년마다)** ※물질별 지정수량은 시행규칙 별표10참조	◦사고대비물질 지정 수량 이상 취급자	◦기존 자제방제계획 제출 또는 면제자 :'15~'17년까지	◦미제출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수정·보완 미제출 :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법 제42조) [강화]	◦매년 1회 이상 (변경시 1개월 이내 재고지) ◦서면, 개별설명, 집합전달, 안전원 홈페이지 게재 등	◦사고대비물질 지정 수량 이상 취급자		◦미고지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미고지시 :개선명령~영업정지

제목	세부내용	대상	이행시기 또는 경과규정	벌칙	행정처분
화학사고 발생 즉시 신고(법 제43조) [강화]	◦사고발생 또는 우려시 위해 관리계획에 따라 응급조치 (취급시설 중단) ◦사고발생시 **즉시 신고** ※유출량, 사고양태에 따라 즉시 신고 기준마련 예정	◦화학물질 취급자		◦응급조치 미이행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사고 즉시 미신고 :2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업무상 과실로 화학 사고 사상자 발생 :경고~영업정지 ※피해액 1억원당 영업정지 1일, 최대 60일 ◦업무상 중대과실로 화학사고 사상자 발생 :영업정지 ※피해액 5천만원당 영업정지 1일, 최대 180일 ◦사고시 응급조치 미이행시 또는 사고 즉시 신고 미이행시 :경고~영업정지
조치명령 등 (법 제46조)	◦사람, 환경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제거 ◦오염지역 복구 등	◦화학사고 원인 사업자		◦조치명령 미이행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목	세부내용	대상	이행시기 또는 경과규정	벌칙	행정처분
보고 및 검사 등 (법 제49조)	◦연간 **실적 보고** -3.31일까지 협회로 제출 ※실적보고는 허가건별로 이행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자 등			◦실적보고 미이행시 :개선명령~영업정지 및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서류의 기록·보존 (법 제50조)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 및 기록보존(5년간)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기록·보호 미이행시 :개선명령~영업정지 및 300만원 이하 과태료
	◦화학물질 확인자는 관련 서류 5년간 보존	◦화학물질 확인자 (제조, 수입자)			
자료의 보호 (법 제52조)	◦화학물질 성분 등에 대한 자료 보호를 안전원, 환경청에 요청 (5년, 5년씩 2번 연장 가능) ※상품명칭, 용도, 폐기방법, 사고대응방법, 위해성 등은 공개	◦자료 제출자			

Ⅱ. 화관법 주요 규정별 해설

1. 화학물질 관리

1 화학물질 확인

○ 제도 개요

- **제조 또는 수입 전** 사업장 스스로 **화학물질 확인** 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확인명세서' 제출** 시 성분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제도

  * 화관법 제3조(적용범위) 적용제외 대상품목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확인명세서 제출

○ 제도에 대한 이해

- 본 조는 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 대하여 '**화학물질 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화학물질 확인이란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자신이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화학물질이 이 법률에서 규제하는 화학물질, 즉 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것을 말함
- 그 확인의 결과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스스로 화학물질의 확인을 할 수 없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를 배려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화학물질확인의 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화학물질확인의 접수 및 확인증명신청의 접수는 이 법률 제55조제2항 및 시행령 제22조제3항제2호에 의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에게 위탁되어 있음

○ 화학물질 확인제도 업무 흐름도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 명세서 및 확인자료 제출 → 한국화학물질 관리협회 → 미제출자 통보 (분기별) → 지방(유역) 환경청 → 지도·점검 → 명세서 미제출 사업장

○ 법령 내용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 9 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3. 유독물질 4. 허가물질 5. 제한물질 6. 금지물질		**제2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함량,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등을 적은 서류(이하 "성분명세서"라 한다) 2. 제조자·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확인 관련 서류 3. 제3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명세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화학물질확인에 이용한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7. 사고대비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 후 14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제3조(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증명신청서에 성분명세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신청서를 받은 협회의 장은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화학물질 확인의 주체

- 화학물질의 확인은 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이를 해야 함

  * 제조자: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
    수입자: 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 수입대행자가 있는 경우, 수입을 위탁한 자가 화학물질확인의 주체가 됨

- 확인자는 ①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화학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함량, 즉 조성(造成)을 알아야 하며, ②그 구성 화학물질이 이 법에서 규제하는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함

< 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제143조제4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하역허가를 받은 자
3. 제158조제5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
4.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
5. 제187조제6항(제195조제2항 또는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
6.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

7.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8. 제253조제4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
9.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
10.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가. 보세구역의 장치물품(藏置物品): 그 운영인 또는 제172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이하 "화물관리인"이라 한다)
나. 보세운송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다. 그 밖의 물품: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
1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화주 또는 신고인과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조약, 협약 등에 따라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④ 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여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의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본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인 납세의무자
2. 제1항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되는 법인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및 신회사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2.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3.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⑦ 이 법에 따라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진다.
⑩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만 「국세징수법」 제13조를 준용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관세의 납세신고일(제39조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말한다)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규제대상 화학물질(신규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금지물질)의 확인 방법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ncis.nier.go.kr/)에서 확인 가능

【 검색 방법 】

▸ 화학제품의 구성성분별 CAS No, 화학물질명 등을 입력 후 검색 버튼 클릭(외국의 제조(수출)자의 경우 우측 상단 영문 메뉴 English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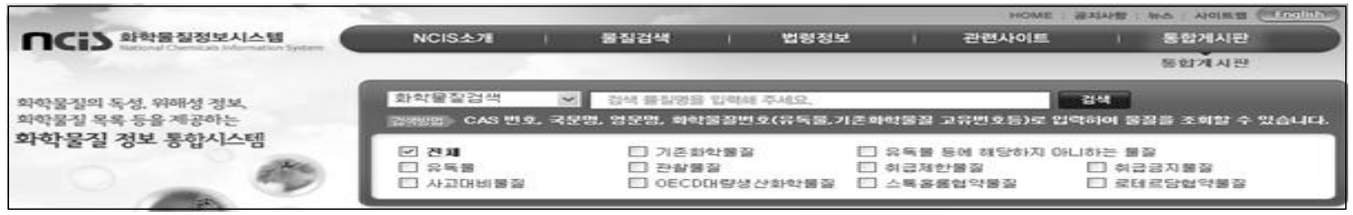

【 검색 결과 확인 방법 】

▸ 기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금지물질 해당여부 확인

* 기존화학물질의 수화물의 경우 기존물질에 해당

▸ 기존화학물질 번호가 없는 화학물질은 신규화학물질에 해당됨.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금지물질에 해당될 경우 해당물질을 클릭 하면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금지물질에 해당될 경우 기준 규제대상 함량 미만인 경우에도 화학물질확인명세서 기재

○ 화학물질 확인의 방법(시행규칙 제2조)

- (**성분명세서**) 확인대상 화학제품의 제조자 또는 수출자가 그 구성성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 즉 구성성분별 화학물질명,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등재번호 및 함량을 기재한 서류를 말함. 성분명세서에는 제조자 상호, 작성자 성명, 소속부서명, 직위, 서명일자 등의 정보가 기재되고 작성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함

< 성분명세서 예시 >

KASMI Ltd.
1-21-7, Toranomon Minato-Ku, Tokyo 105, JAPAN
Tel : 03-3592-2228, Fax : 03-2592-2230

QuRar 4040-a(제품명)

Chemical name	CAS No.	함량
Maleic acid Monobutyl ester-styrene polymer	25215-62-7	42%
2-Propenoic acid methyl ester polymer with styrene and 1,2-ethanediol	27881-32-9	35%
Ammonium hexafluorotantalate	33380-11-9	23%

Best Regards,
Jon R. Arnson, Product Manage
DATE :

- (**제조자 등의 화학물질확인 관련 서류**) 화학물질 조성에 관하여 제조자 또는 수출자가 스스로 규제대상물질의 함유여부를 확인한 서류로써 그 규제대상물질 정보만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제품의 조성 100%를 공개하는 성분명세서와는 다름. 확인대상 화학제품에 규제대상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규제대상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규제물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밝히면 됨

< 제조자 등의 화학물질 확인관련 서류 예시 >

To whom it may concern:

Letter of Confirmation

Product Name : .....

Relying on the Certificate of Composition of the above-identified product, I/we hereby confirm that the product contains the following regulated chemical substance(s) as its component(s).

Regulated chemicals	CAS No	Chemical Name	Content(%)
New Chemical			
Toxic Chemical			
Restricted or Prohibited Chemical			

And, we confirm that all components of the product, excluding the above components, are not designated as new chemicals, toxic chemicals, observational chemicals, restricted or prohibited chemicals regulated under the Toxic Chemicals Control Law, and have been listed in the Korea Existing Chemical Inventory.

Date :
Sincerely yours,
Name : .....(Signature or Seal)
Title : , Name of Department :
Company : , Address:
Tel : , Fax :

* 「확인을 위임 받은 자」란 이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의 확인행위나 기타 부수되는 사무의 처리를 위임 받은 사람으로서 민법상의 수탁자(受託者)의 권한과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확인대상 화학제품의 수입자, 제조자 또는 수출자의 화학물질 확인업무를 위임 받은 민간전문가가 여기에 해당됨

* 확인을 위임받은 자가 화학물질 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조자 또는 수출자가 제공한 성분명세서, 자진확인서 등을 참고해야 하며, 유역(지방) 환경관서의 요구가 있으면 확인의 근거가 된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동 서류에는 제조자 또는 수출자의 상호, 확인자의 성명, 소속부서명, 직위, 서명일자, 확인방법 등의 정보가 기재되고 확인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함

- (**화학물질 확인증명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가 스스로 규제대상 화학물질의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확인을 신청하는 제도로 성분명세서를 첨부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신청하면 협회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이 규제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화학물질 확인증명서를 발급해 줌.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의 제출을 면제 받게 됨. 이는 확인대상 화학제품에 관한 성분명세서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여 규제물질 함유여부에 대하여 이미 확인을 받은 것이므로 행정절차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제출절차를 면제한 것임

❍ 화학물질 확인내용(화학물질확인명세서)의 제출

-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제품의 조성에 대한 확인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확인내용의 접수업무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되어 있음(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제2호)

• 제출 시기: 제조 또는 수입(통관) 전 (단,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은 14일 이내) • 제조 또는 수입량에 관계없이 제출 • 제출 방법: 전자문서(http://ols.kcma.or.kr) 또는 우편 등 • 제출 면제: 제조과정에서 형성된 특정한 형태 및 기능이 최종사용과정까지 유지되는 제품으로 그 사용과정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아티클(고형완제품)]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후의 후속절차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시 신규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을 함유한 경우 법에서 정한 별도의 신고(허가)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대상 예시

- 국내에서 제조한 화학물질(제품)을 수출 후 재수입하는 경우 → 제출대상
- 국내제조자가 수출한 화학물질(제품)을 반품 받는 경우 → 제출대상
- 국내제품을 외국에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 제출대상
- 보세구역에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제출대상
  ※ 보세구역에서 화학물질 확인을 받은 화학물질(제품)을 통관절차를 거쳐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 제출대상 아님
- 해외우편을 통해 화학물질(제품)을 받고자 할 경우 → 제출대상

벌 칙

○ 과태료

-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1차 위반: 600만원, 2차 위반: 80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법 제64조제1항제1호, 시행령 별표2)

FAQ

○ 연구용 시약의 경우 수입 후 14일 이내 확인명세서를 제출해도 된다면 이 기간(수입 후 14일 이내)에 판매도 가능한가요?

⇒ 확인명세서를 제출하기 전에 판매하실 수는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2조제2항 후단은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 확인명세서를 제조 또는 수입 후 14일 이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에 한하여 제조 또는 수입 후 제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이 기간에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2 화학물질 통계조사

○ 제도 개요

- 화학물질 통계조사대상사업장은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현황 및 취급시설 등을 조사지침에 따라 조사표를 작성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거나, 통계청 웹사이트의 나라통계조사·보고시스템에서 직접 입력하여야 함

- 조사대상사업장은 환경부 장관고시「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면제조건에 해당되어 조사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 일반사항만 작성하고 면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함

○ 제도에 대한 이해

- (**목적**) 화학물질 통계 조사는 국내에서의 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입 등의 취급량, 용도, 취급시설 정보 등을 파악함으로써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기반자료를 확보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해당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체제를 마련하기 위함

- (**달라진 점**)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유통량 조사**가 개정된 법에서 **화학물질 통계조사로 확대·개편**되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이 변경됨

• 조사주기가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됨 • 기존 조사대상에 보관·저장업이 추가됨 • 조사대상 범위에 용도, 취급시설 관련 정보 등이 추가됨 •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정보는 공개

- 유역(지방)환경청은 조사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 통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이 유통량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장을 현지 조사할 수 있음

○ 화학물질 통계조사 업무 흐름도

조사표 작성 또는 나라 통계조사보고시스템 제출 (사업장→유역(지방)환경청)	⇒	조사표 취합·승인 (유역(지방)환경청)	⇒	사업장 현지조사 (유역(지방)환경청)	⇒	조사결과 검증 및 분석결과 보고 (화학물질안전원)	⇒	조사결과발표 (환경부)

○ 법령 내용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		**제4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을 제조·보관·저장·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사업장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통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대상 ②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유입수계(流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화학물질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入水系)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제조·수입·판매·사용 등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제품명 및 취급량 3. 화학물질의 입·출고량, 보관·저장량 및 수출입량 등의 유통량 4. 가정용품, 전지, 조명기구 등 비점오염원을 구분할 수 있는 관련 정보 5.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관련 정보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내용 및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활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관련고시: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4-254호, '14.12.31)

○ **화학물질 통계조사 대상범위**

- 조사대상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를 한 사업장
  - 화학물질 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입 사업장
- 조사일정
  - 통계조사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현황을 조사표 또는 나라통계조사·보고시스템에 입력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 다음해 9월 30일까지 작성·제출하고 매 2년 주기로 실시함
- 조사면제사업장
  - 단일물질과 혼합물질에 관계없이 연간 화학물질 취급량이 1톤 이하인 사업장
  -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은 연간 취급량이 100㎏ 이하인 사업장

○ 화학물질 통계조사 조사표(별지 제1호 서식 1. 일반사항)

- 항목: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업종, 종업원 수 등 총 23항목

【별지 제1호 서식】

화학물질 통계조사('15년) 조사표

서식 1. 일반사항

작성일자 2015년 월 일

①	업 체 명		②	대 표 자				③	사업자등록 번호		
④	소재지주소	□□□-□□									
⑤	대표업종	□□	⑥	종업원수	명	⑦	연간매출액	□ 300억 이상· □ 100억 이상~300억 미만 □ 50억 이상~100억·미만 □ 30억 이상~ 50억 미만 □ 10억 이상~ 30억 미만 □ 10억 미만	⑧	부지면적	m²
⑨	일평균조업시간	시간	⑩	연간조업일수	일			⑪	관할환경청	□□□□	
⑫	산업단지	□□□□	⑬	농공단지	□□□□			⑭	유입수계명	□□□□	
⑮	상수원 보호구역명	□□□□	⑯	수질보전특별 대책지역명	□ 팔당 Ⅰ권역 □ 팔당 Ⅱ권역 □ 대청 Ⅰ권역 □ 대청 Ⅱ권역 □ 해당 없음			⑰	대기보전 특별 대책지역명	□ 울산·미포, 온산 국가산업단지 □ 전남 여천 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 해당 없음	
⑱	배출시설종류	대기(악취)배출시설 □ 종			수질배출시설 □ 종				□ 해당 없음		
⑲	비점오염원 배출량조사대상 제품 제조/수입	□ 가정용품 □ 전지 □ 조명기구 □ 세탁용제 □ 해당 없음									
⑳	화학물질 취급시설 종류 (개수)	□ 제조시설 ( ) □ 보관·저장 시설 ( ) □ 운반차량 ( ) □ 사용시설 ( )						㉑	화학사고발생건수	건	
㉒	비상연락망	회사 내		전화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전화	
㉓	결 재	근무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동전화 (E-mail)		직위		성명	서명	
	작성자		( )		( )						
	확인자		( )		( )						

※ 21번 화학사고 발생건수는 관련 기관에 신고·접수된 것을 대상으로 함.

○ 화학물질 통계조사 조사표(별지 제1호 서식 2. 제품취급현황)

- 항목: 제품명, 용도, 제품구성, 형태, 입고량, 출고량, 나노물질포함여부, 비점오염원 배출량 조사대상 제품분류

- 관련 붙임서류: <붙임1> 수출에 관한 정보, <붙임2> 구성성분정보, <붙임3> 성분보유자정보

- 제품취급현황 관련 작성순서

○ 제품구분
- 제조(또는 수입) 화학제품
- 제품제조용 원료, 부원료 등
- 기타시설, 장치 유지보수에 사용
- 보관·저장 위탁 제품
  → 위 4가지 중 선택

⇒

○ 입·출고량 입력
- 제조, 수입, 구매, 이월 입력
- 사용, 판매, 수출, 재고 입력

⇒

○ 수출량이 있음
- "**<붙임1>** 수출에 관한 정보"

⇓

○ 구성성분의 입력
- "**<붙임2>** 구성성분정보" 입력
- 구성성분 모두 입력
- 물질명, CAS No., 함량 입력

⇐

○ 화학물질의 제조구분
- 화학제품의 경우 구성성분을 합성, 분리·정제·추출, 혼합·가공·기타로 구분

⇐

○ 성분정보를 알 수 없음
- 작성근거에 자료없음 표시한 경우
- "<붙임3>성분보유자 정보" 입력
- 적정한 미기재사유 입력

【별지 제1호 서식】

서식 2. 제품취급현황

제품구분	일련번호	제품명(상품명)	용도	제품구성	제품형태	'14년 입고량(톤/년)				'14년 출고량(톤/년)					나노물질포함	비점오염원 배출량조사 대상 제품여부
						제조	수입	구매	이월	사용	판매	수출	재고	손실/폐기		
제조(또는 수입) 화학제품	1-1			□ 단일물질 □ 혼합물질	□고체 □액체 □기체										□	□가정용품 □전지 □조명기구 □세탁용제 □산업도장 □건설도장 □인쇄잉크 □탈지세정 □염색표백 □기 타 □해당없음
제품 제조용 원료, 부원료, 첨가제, 촉매 등	2-1			□ 단일물질 □ 혼합물질	□고체 □액체 □기체										□	□가정용품 □전지 □조명기구 □세탁용제 □산업도장 □건설도장 □인쇄잉크 □탈지세정 □염색표백 □기 타 □해당없음
기타 시설, 장치 유지· 보수 등에 사용되는 제품 (폐수처리약품, 냉각수 등)	3-1			□ 단일물질 □ 혼합물질	□고체 □액체 □기체										□	□가정용품 □전지 □조명기구 □세탁용제 □산업도장 □건설도장 □인쇄잉크 □탈지세정 □염색표백 □기 타 □해당없음
보관·저장을 위탁받은 제품	4-1			□ 단일물질 □ 혼합물질	□고체 □액체 □기체										□	□가정용품 □전지 □조명기구 □세탁용제 □산업도장 □건설도장 □인쇄잉크 □탈지세정 □염색표백 □기 타 □해당없음

※ 구매, 판매량은 유상, 무상의 경우를 모두 대상으로 함

<붙임1> 수출에 관한 정보

일련번호	제 품 명 (상품명)	수 출 국					
		EU	중국	대만	미국	일본	기타
1-1							
1-2							
1-3							

※ 수출국란에 국가별 수출여부(○,X)를 표시

<붙임2> 구성성분정보

일련번호	제 품 명 (상품명)	작 성 근 거	일련번호	구 성 성 분			제조구분
				물 질 명	CAS No.	순도 및 함량(%)	
1-1		□제조사발행 성분명세서 □MSDS □시험성적서 □기타 □자료없음	1-1-1				□합성, □분리·정제·추출 □혼합, 가공, 기타
			1-1-2				□합성, □분리·정제·추출 □혼합, 가공, 기타
1-2		□제조사발행 성분명세서 □MSDS □시험성적서 □기타 □자료없음	1-2-1				□합성, □분리·정제·추출 □혼합, 가공, 기타
			1-2-2				□합성, □분리·정제·추출 □혼합, 가공, 기타
1-3		□제조사발행 성분명세서 □MSDS □시험성적서 □기타 □자료없음	1-3-1				□합성, □분리·정제·추출 □혼합, 가공, 기타
			1-3-2				□합성, □분리·정제·추출 □혼합, 가공, 기타

<붙임 3> 성분보유자 정보

일련번호	제 품 명 (상품명)	성 분 명 세 서 보 유 자							미기재 사유 (1)~(3)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1-1									
1-2									
1-3									

※ 작성 대상자 : 수입 또는 구매하였으나 성분명세서를 제공받지 못하여 <붙임2> 구성성분정보의 기재가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의 미기재 사유 중 1가지 기재 및 성분보유자 정보 기재

※ 미기재 사유 : (1) 국내 제3자가 성분명세서를 보유한 경우
(2) 제품 중 화학물질의 구성 성분비(함유량, %)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3) 제조사로부터 성분명세서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기관별 역할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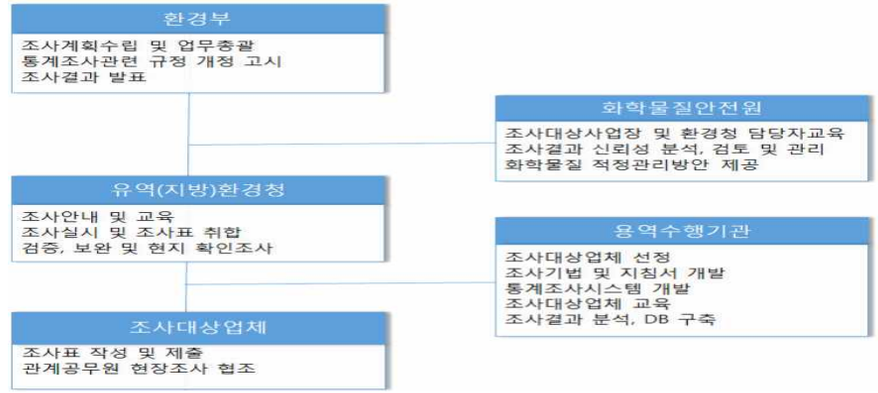

벌 칙

○ 과태료

-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1차 위반: 600만원, 2차 위반: 80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법 제64조제1항 제2호, 시행령 별표2)

○ 행정 처분

-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5조제2항제2호, 시행규칙 별표 7)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 이상 위반
•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2호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 누가 통계조사 대상인가요?

⇒ 대기·수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의 41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일정수량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입하는 사업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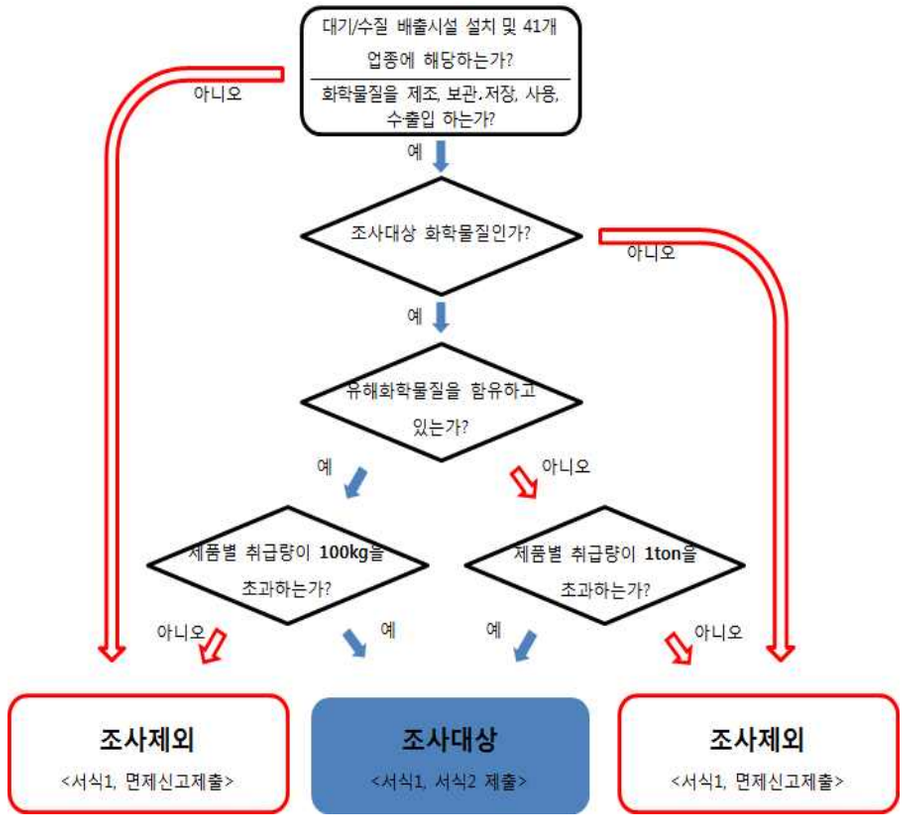

≪조사면제 대상≫

① 조사연구용(시험, 연구, 검사용)
② 기계·장치류 내장 화학물질(축전지)
③ 사업장 시설자체 일부(페인트, 건축자재)
④ 기기·장비 가동 및 유지용(별도 저장·보관시설용 화학물질 제외)
⑤ 종업원 개인용도용 화학물질
⑥ 화학물질(1톤이하/년 취급량) 및 유해화학물질(100㎏이하/년 취급량)
⑦ 연료(난방용)
⑧ 사용 중 형상변화되지 않은 완제품
⑨ 조경시설용(농약, 비료)

○ 2015년에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한 유통량조사를 계속 실시하는 지의 여부와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최초 실시 연도는 언제인가요?

⇒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던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라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포함되어 실시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년마다 화학물질 통계조사가 실시되며, 2015년부터 최초 적용됩니다.

○ 통계조사 대상에 연구용 또는 실험용 시약 제품이 포함되나요?

⇒ 환경부 고시「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제5조 '조사대상 화학물질'에 따라 연구 또는 실험용 시약을 구매하여 제한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통계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시약을 학교 또는 연구소에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통계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는 하나인데 공장은 여러 개 입니다. 본사에서만 보고하면 되나요?

⇒ 화학물질통계조사는 단위사업장별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번호가 하나이더라도 사업장별로 각각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 통계조사에서 화학물질의 제조와 사용에 대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제조는 화학물질의 사용목적에 따라 화학반응을 시켜서 새로운 화학물질을 생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은 화학물질을 혼합하여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 제조 또는 작업과정 중에 원료, 부원료, 첨가제, 촉매 등으로 쓰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임가공 업체입니다. 원청업체에서 보내온 화학물질은 구매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 화학물질이 사업장으로 입고되면 금액 지불여부와 상관없이 구매 항목에 해당물질의 양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다수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입니다. 조사표 작성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 같습니다. 보고시스템에서 하나씩 입력해야 합니까?**

⇒ 다수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작성편의를 위해 엑셀 입력 조사표를 마련하였습니다. 보고시스템에서 양식을 내려받으셔서 엑셀로 작성하시고 보고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조사표를 작성하시면 작성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 **통계조사대상 화학물질은 어떻게 되나요?**

⇒ 조사대상 화학물질은 화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질로서 아래와 같이 일정량이상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해당합니다.

* 제품별 취급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단일·혼합물질

*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는 제품별 연간 취급량 100㎏을 초과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 여부는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ncis)에서 확인 가능

○ **중간업체도 통계조사 대상이 되나요?**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4조 1항에 해당되면 통계조사 대상입니다.

○ **제조사로부터 성분내역을 전달 받지 못한 경우 성분정보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조사로부터 해당 화학물질의 성분내역을 영업기밀 등의 사유로 받지 못한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제조사 정보를 환경부 고시「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의 화학물질 통계조사 조사표(별지 제1호 서식 2. 제품취급현황 관련<붙임3> 성분보유자정보)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통계조사자료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수집된 자료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따라 국가안전, 기업의 영업비밀 등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보호받게 됩니다. 자료보호대상이 아닌 자료는 화학물질의 사용명칭 또는 상품명, 사용용도,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방법, 사고발생시 대응방법, 물리·화학적 성질, 유해성, 및 환경배출량 자료입니다.

○ **화관법 적용대상 제외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입니다. 조사대상 면제에 해당합니까?**

⇒ 화관법 제3조(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물질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각종 원료 등(관리제외 품목)의 경우는 조사대상 화학물질에 해당됩니다.

○ **폐업사업장입니다. 면제 신청을 해야 하나요?**

⇒ 네. 폐업한 사업장도 환경부 고시「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의 화학물질 통계조사 조사표(별지 제1호 서식 1. 일반사항)을 작성한 후 면제 신청란에 폐업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면제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 **완제품 제조사업장입니다. 조사대상 면제에 해당합니까?**

⇒ PVC파이프, 포장지 등 완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유의 형상이 변하지 않는 완제품으로 분류되므로 조사제외 화학물질 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어지는 각종 수지, 첨가제, 또는 코팅제 등의 원료는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폐수처리장을 운영할 시 사용하는 폐수처리제는 조사대상입니다.

○ **위험물관리법에서 빙초산은 제4류로 분류가 되는데요. 기존의 경우 아세톤과 동일하게 식약청에만 보고를 해도 되었던 부문인데, 화관법에서 이러한 물질도 보고대상이 되나요?**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4조 1항에 해당되면 통계조사 대상입니다.

○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유통량조사, 배출량조사는 모두 다른 활동인가요?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와 배출량 조사 대상에서는 건설업이 해당되지 않아 해당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별도로 시행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화관법 시행규칙 제4조, 배출량 조사는 동법 시행규칙 제5조를 근거로 하는 다른 활동입니다. 통계조사는 기존에 실시했던 유통량 조사가 변경된 것으로 조사기간, 내용, 및 범위가 확대・개편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실시됩니다. 화학물질 통계조사대상은 화관법 시행규칙 제4조1항에 근거하여 건설업은 대기 및 수질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실시대상이 됩니다. 배출량조사대상은 환경부고시 제 2012-234호 (‘12.12.27,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근거하여 건설업은 조사대상 제외업종입니다.

3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 제도에 대한 이해

- 본 조에 규정된 배출량 조사는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과정에서 대기, 수계, 토양 등 생태계로 배출되거나 폐수와 폐기물에 섞여 사업장 밖으로 나가는 화학물질의 양을 사업자가 스스로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주무관청은 조사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배출량 파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배출량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배출량 조사에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에 대하여도 해당 기관의 조사 결과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사업자에 대한 화학물질 배출량 관련 자료제출 명령, 화학물질 배출량의 출입조사 또는 기관별 조사 결과와 필요한 자료 제출요청의 권한은 이 법률 제52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 배출량 조사의 결과는 환경정책 수립의 기반자료로 활용되며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이해관계자가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한 사업자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사업장별 배출량 조사결과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배출량조사결과가 화학물질 배출량·이동량 정보시스템(ncis.nier.go.kr/prtr)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 사업장별 배출량 조사결과의 공개는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의 분석·검증과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 법령 내용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1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 등의 조사(이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함에 있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해당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기관별 조사 결과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해화학물질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 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5. 국제적인 전문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발암성·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 등을 가진 화학물질로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제5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이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계획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대상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에 관한 사항 2. 조사대상 업종·업체의 규모 및 지역에 관한 사항 3. 조사방법·절차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조사표 작성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 5.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사업장의 배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④ 제2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배출량의 산정기준은 화학물질, 취급시설·배출시설 및 취급방법 등에 따라 구분하고, 배출량을 조사할 때에는 실제로 측정을 하거나 화학물질의 투입량 및 배출량의 비율을 고려한 산정계수 등에 따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기준 또는 산정계수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배출량 조사 업무 흐름도

조문해설

○ **관련고시: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4-255호, '14.12.31)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는 기업, 공공기관 등이 환경(대기, 수계, 토양, 폐기물)중으로 배출되는 유해 화학물질의 양을 파악하여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는 보고결과를 정부, 민간, 기업이 공유하게 함으로써 기업들의 자발적 오염감소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99년에 처음 실시하였음

* OECD의 PRTR(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규정, 미국(TRI: Toxics Release Inventory), 캐나다(NPRI: National Pollutant Release Inventory), 영국(Pollution Inventory)등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를 시행

○ 대상업체는 매년 4월말까지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에 조사표를 작성・제출

벌 칙

○ **과태료**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1차 위반: 600만원, 2차 위반: 80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법 제64조제1항 제3호, 시행령 별표2)

○ **행정처분**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5조제2항제2호, 시행규칙 별표 7)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 이상 위반
•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2호	개선 명령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4 정보공개 및 자료의 보호

○ 제도에 대한 이해

-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배출량조사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된다. 다만, 국가안전, 영업비밀 등의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구체적인 정보공개의 내용 및 범위 등은 '15년 3월「화학물질 정보공개 가이드라인(가칭)」참조

○ 법령 내용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제7조(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의 예외)**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행 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2.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제6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기로 결정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이하 "화학물질 취급정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정보의 공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개대상자는 공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소명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결과 중에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의 인적사항, 화학물질 취급량 및 취급시설의 정보, 법령 위반사실 등(이하 “화학물질 취급정보”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대상자는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에 따라 자료 보호를 요청하려면 제5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료보호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소명서에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부쳐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제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제2항 전단에 따른 소명서 제출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소명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계획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결과 및 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기준, 공개절차 및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2.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명 ②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52조(자료의 보호)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 보호를 요	**제21조(자료보호기간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5년 동안 공개하여서는 아	**제57조(자료보호의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료보호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국내외에 공개된 자료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된 자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에 해당되면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자료보호 요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니 된다. 다만, 자료를 제출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씩 두 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화학물질의 상용 명칭 또는 상품명에 관한 자료 2. 화학물질의 용도에 관한 자료 3. 화학물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4. 화학물질의 사고발생 시 대응방법에 관한 자료 5.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6.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7.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8. 화학물질의 환경 배출량에 관한 자료 9. 그 밖에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호 내용의 요지 및 이유서 2. 보호대상 자료 ② 영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연장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결과서를 첨부하여 자료보호기간 만료 30일 전에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료보호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보호자료의 관리)**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은 관리대장의 비치, 관리자의 지정 등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호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조문해설

○ **관련고시: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4-250호, '14.12.31)

○ 본 조에서 말하는 자료(資料)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경우 신청자 또는 제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유의 기술상·영업상 자료를 말한다. 보호대상인 자료는 화학물질확인, 통계조사 및 배출량조사를 위하여 신청자·제출자가 주무관청에 제출한 자료로 한정된다. 국내외에 공개된 자료,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심의·의결한 자료 또는 이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자료는 보호대상이 아니다.

○ **자료보호신청서 작성방법**

- 보호내용의 요지 및 이유서

• 사유서에는 보호내용의 공개가 신청인의 경제적 이익 또는 경쟁적 위치에 어떠한 손실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 • 화학물질명 이외의 사항을 보호 신청하는 경우는 각 항목별로 특허, 계약사항 등 구체적인 사유를 타당성 있게 제시 • 보호내용이 화학물질명인 경우 CAS No., 구조식, 단량체명 등 동질성과 관련 있는 항목이 그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봄

- 보호대상자료

• 신청 첨부서류에 자료보호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그 페이지를 2부 준비해서 1부는 해당 보호내용을 보이지 않도록 하여 제출하고, 다른 1부는 해당 보호내용을 적색으로 밑줄 표시한 후 해당 면을 별도로 모아 분철하고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 자료보호신청서의 보호 대상자료로서 제출 • 밀봉한 봉투의 앞면에는 해당자료의 목록과 적색으로「보호자료」라고 기재 • 화학물질명을 자료보호 하는 경우 이에 대체한 총칭명(generic name)을 기재 ※ 총칭명: 신청인이 자료보호를 목적으로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체하여 명명한 화학물질이름을 말함

- 자료보호 연장신청

• 신청자가 자료보호연장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자료보호연장신청을 할 경우 5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음. 다만, 특허의 내용을 자료보호로 수리한 경우 특허기간 만료시에 이를 보호대상에서 해제할 수 있음 • 보호기간을 연장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는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전까지 자료보호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만일 이 기간 내에 자료보호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자료보호기간 만료일에 만료된 것으로 봄

수 금지물질의 취급

○ 개요

- 금지물질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 누구든지 모든 용도로의 취급을 금지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인 금지물질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 하려는 자는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도록 함. 또한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에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 제도에 대한 이해

- 금지물질의 경우 개정법 이전에는 변경허가가 취급예정물량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있어, 사업자가 허가를 받을 때 예정물량을 많게 작성하여 허가를 받는 경우가 많았음

- 따라서 금지물질의 특수한 관리의 필요성을 고려해 허가증에 허가조건 외에도 허가기간을 부여하여 장기간에 걸친 제조・수입・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였고, 변경허가조건도 예정물량의 100분의 20으로 강화하였음. 또한 용도의 변경도 주요 변경허가사항에 포함시킴.

○ 업무 흐름도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 (신청인)	⇒	접수 [유역(지방)환경청]	⇒	검토 [유역(지방)환경청]	⇒	허가증(신고증) 발급 [유역(지방)환경청]

○ 법령 내용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8조(금지물질의 취급금지) ① 누구든지 금지물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 취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화학사고 예방조치계획서 제출 등 해당 금지물질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4조(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사용·판매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제조·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 및 해당 물질의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조건 및 허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허가받은 금지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나. 허가받은 예정 물량 다.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라. 허가받은 금지물질의 용도 마.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변경신고 대상: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 는 사무실 소재지 ④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적어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허가증 또는 변경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조문해설

○ 금지물질은 누구든지 취급할 수 없음. 다만,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인 금지물질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 하려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 하려는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조건 및 허가기간을 정하여 허가증을 내주도록 함

○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

-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사용·판매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했고, 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물질의 안전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 허가조건 및 허가기간을 명시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함

○ 금지물질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허가증 원본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가 가능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함

벌 칙

❍ 벌칙

-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취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58조제2호)
- 제18조제1항의 단서를 위반하여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금지물질을 수입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2조제1호, 제2호)

❍ 행정 처분

- 영업허가의 취소(법 제35조제1항1호): 제18조를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취급한 경우

6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 제도에 대한 이해

- 본 조에서 수입 전에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거나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제한물질 또는 유독물질 수입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유사 시 대응을 용이하게 하고 제한물질과 유독물질의 적정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유독물질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업무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시행규칙 제17조제6항에 따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법령 내용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 ① 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한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적정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	**제1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의 면제)** 법 제20조제3항에서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측정용으로 사용되는 표준가스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 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2.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제16조(제한물질의 수입허가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제한물질 용도의 상세내역서과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사본(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허가받은 제한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나. 허가받은 예정 물량 다.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라. 허가받은 제한물질의 용도 마.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변경신고 대상: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④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적어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허가증 또는 변경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7조(유독물질의 수입신고 등)**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입신고서에 유독물질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입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에 대한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신고한 유독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 신고한 수입 예정물량 3. 신고한 유독물질의 용도 4.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④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증 원본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6호서식의 변경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독물질 수입신고 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 신고주체

- 수입자: 관세법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

  * 제한물질 및 유독물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입허가(또는 수입신고) 및 판매업 허가를 각각 득하여야 함

○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면제

-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측정용에 사용되는 표준가스를 포함)을 당해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 시험 · 연구 · 검사용 시약 확인방법 >

- 시약은 제품이나 포장지에 시약, 試藥, Reagent 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
- 국내에서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KS시약이 정해져 시약특급, 시약1급, 특수시약으로 분류
- 해당제품의 카달로그나 제조사 홈페이지 등에서 시약임을 확인
- 시약과 일반 테스트 검사용 화학물질(샘플)은 사용용도가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

-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인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 연간 100킬로그램 이란 유독물질인 제품(상품)의 전체 수입량

< 연간 100킬로그램의 계산 예시 >

▶▶케미칼(주)은 총 3회에 걸쳐 다음과 같은 유독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수입하였다.							비고
순번	제품명	유독물질명	CAS No.	%	수입량(kg)	신고여부	유독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총 수입량이 2회까지는 100kg 이하이나 3회까지의 총수입량을 합산하면 100kg 이상이 되므로 마지막에 수입하는 Dermar solution SS-1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1	Formaldehyde 37%	Formaldehyde	50-00-0	37	50	면제	
2	AVF-69	Lead dioxide	1309-60-0	30	40	면제	
3	Dermar solution SS-1	Hydrochloric acid	7647-01-0	40	50	신고	

❍ 제한물질 수입 변경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 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 변경허가	유독물질 수입 변경신고
허가받은 제한물질의 종류 및 함량 허가 받은 예정 물질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 보관·저장시설의 총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 허가받은 제한물질의 용도 사업장 소재지 변경 (단, 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 ※ 단, 사업자 명칭, 대표자, 소재지 변경 시에는 변경신고 대상	신고한 유독물질의 종류 및 함량 신고한 수입 예정 물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 신고한 유독물질의 용도 사업자 명칭, 대표자, 소재지 변경

❍ 유독물질(허가물질) 지정 형태: 화합물·염류 및 혼합물 함량

- 화합물(compound)이 유독물질인 경우: '화합물질(compound)'이란 2종 이상의 원소가 화학적인 결합에 의해 생성하여 일정의 조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말함

  * 97-1-9. 납 화합물질[Lead compounds] (예: Lead stearate(1072-35-1))

- 염류(salts)가 유독물질인 경우: '염류(salts)'란 산과 염기와의 중화반응에 의해 생성된 화합물질을 말함

  * 97-1-91. 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등(예: Zinc sulfate(7733-02-0))

- 구성성분의 함량(%)에 따라서 유독물질 해당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 97-1-136. 수산화 나트륨[Sodium hydroxide; 1310-73-2] 및 이를 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97-1-2. 과산화 수소[Hydrogen peroxide] 및 이를 6%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등

- 대상물질과 염류(salts)가 유독물질인 경우

  * 97-1-300. 톨루이딘[Toluidine; 26915-12-8]과 그 염류 및 그중 하나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등

○ **유독물질 중 유기용제의 함량범위**: 함량이 '85%이상'일 경우에만 유독물질임

영문명	한글명	CAS No.	고유번호
Nitrobenzene	니트로벤젠	98-95-3	97-1-12
Methyl alcohol ; Methanol	메틸 알코올	67-56-1	97-1-80
Methyl ethyl ketone; MEK	메틸 에틸 케톤	78-93-3	97-1-81
Benzene	벤젠	71-43-2	97-1-99
Ethyl acetate	에틸 아세테이트	141-78-6	97-1-161
Xylene(이성질체 포함)	자일렌	1330-20-7	97-1-275
o-Xylene		95-47-6	
m-Xylene		108-38-3	
p-Xylene		106-42-3	
Chloroform	클로로포름	67-66-3	97-1-281
Toluene	톨루엔	108-88-3	97-1-298

○ 유독물질(허가물질)로만 구성된 혼합물질도 유독물질(허가물질)에 해당함

  * 예: 톨루엔:30%, 자일렌:30%, 벤젠:40%인 혼합물

○ **실적보고**: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자는 법 제49조 및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다음해 3월 31일까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전년도 수입량을 보고(별지 제71호 및 제72호 서식)

7 제한·금지물질 수출 승인

❍ 제도에 대한 이해

- 본 조는 특정유해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통보승인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PIC: Prior Informed Consent 협약'으로 약칭)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PIC 협약은 1998년 9월 10일 네덜란드 로테르담 외교회의에서 채택하고 2004년 2월 24일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특정화학물질과 농약이 인류의 건강과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교환을 촉진하고 수출입에 관한 각국의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유해화학물질, 농약수입규제, 국내규제조치를 국제연합사무국에 통보하고 수출할 때 관련 자료와 수출통보서를 수입국에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은 이 법률 제55조 및 시행령 제23조제2항제8호에 의하여 유역(지방) 환경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 제한·금지물질 수출 승인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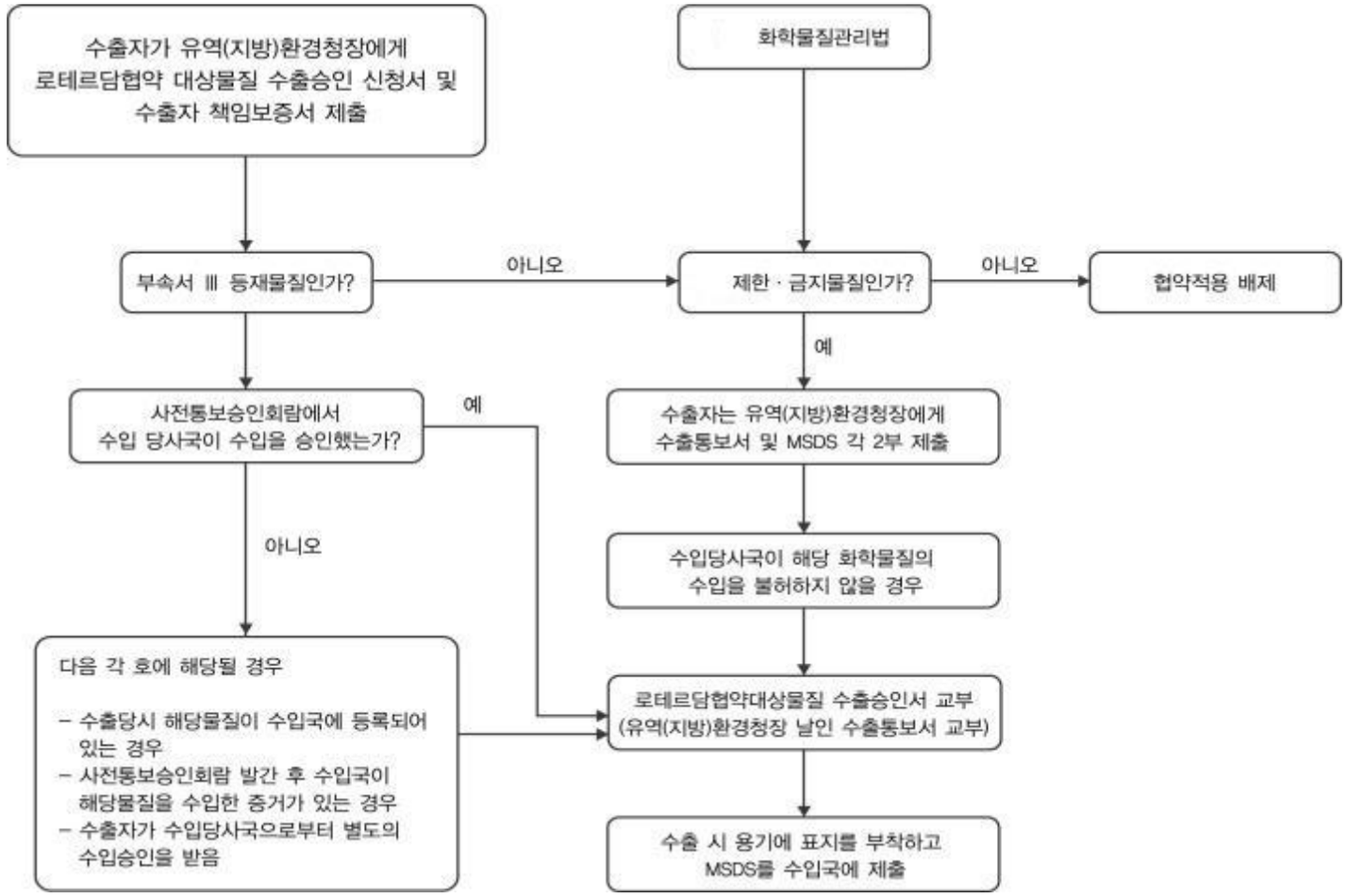

○ 법령 내용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1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① 제한물질(취급이 제한된 용도에 한한다) 또는 금지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 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이하 이 항에서 "로테르담협약"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협약 당사국이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 2. 로테르담협약 제13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자의 준수사항 3.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Ⅲ에 규정된 화학물질 4.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Ⅴ에 규정된 수출통		**제1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수출국별로 해당 물질을 최초로 수출하기 전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출통보서 2.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3. 수출자 책임보증서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의 수출통보서를 수입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국이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수입국이 수입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제2항제2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승인받은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2. 승인받은 수출 예정 물량(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⑤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3항에 따른 수출승인서 원본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변경 사항이 수입국의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수입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관련고시

-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4-252호, '14.12.31)

○ **승인대상 수출물질**: 로테르담협약 부속서Ⅲ 등재물질 중 산업용 화학물질

물질명	CAS 번호	비고
Actinolite	77536-66-4	금지물질
Anthophyllite	77536-67-5	
Amosite	12172-73-5	
Crocidolite	12001-28-4	
Tremolite	77536-68-6	
Polybrominated biphenyls (PBB)	36355-01-8(hexa-), 27858-07-7(octa-), 13654-09-6(deca-)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	1336-36-3	
Tris(2,3-dibromopropyl) phosphate	126-72-7	
Polychlorinated terphenyls (PCT)	61788-33-8	금지물질(산업안전보건법)
Tetraethyl Lead	78-00-2	유독물질
Tetramethyl Lead	75-74-1	

* Actinolite 등 9개 물질은 금지물질이므로 수출승인 대상물질에서 제외

* "유해화학물질의 교역 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참조

○ **수출 승인신청 서류 검토**

- 제출서류

  •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 수출승인 신청서

•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출자 책임보증서

• 고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수출통보서(영문 2부)

• 물질안전보건자료(영문 2부)

* 로테르담협약 부속서Ⅲ 등재물질인 경우 수출자 책임보증서만 제출

- 신청서류 검토

• 수출승인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수입인지 확인

(ⅰ) 해당물질에 대한 당해연도 최초로 수출하기 전의 수출승인 신청 여부인지를 확인

(ⅱ) 해당물질의 협약 부속서Ⅲ 등재물질 여부 및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제한물질 여부를 기재할 것

- 수출자 책임보증서 확인

• 수출통보서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수출상품에 포함된 해당 물질별로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함

○ 수입당사국의 수입의사 확인

- 해당물질별 최초 수출 전에 당사국 국가지정기관에 수출통보서 1부(MSDS 자료 첨부)를 송부

• 동일 물질의 동일 국가 수출에 대하여는 매년 최초 송부한 수출통보서를 당해연도 수출통보로 갈음할 수 있음

- 수출통보에 대하여 수입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이 수입 승인을 회신한 경우, 수입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이 수출통보를 면제한다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 또는 수입당사국이 수출통보서를 접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물질에 대한 수출승인서 교부

○ 수출승인서 교부

- 고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승인서 교부

  • 다음의 방식으로 승인번호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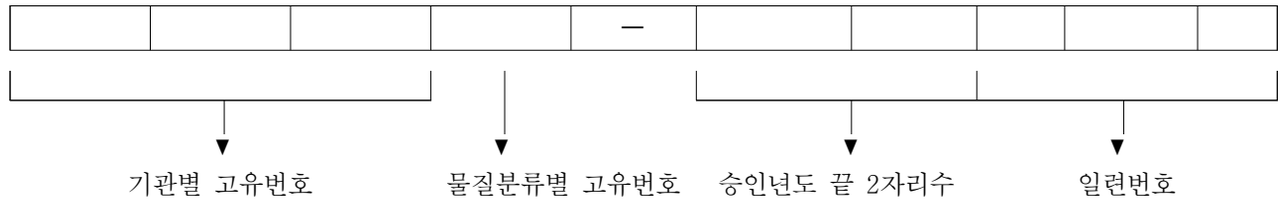

  * 물질분류별 고유번호: 로테르담협약 부속서Ⅲ 등재물질 1, 제한물질 2

- 승인대장 정리

○ 수출승인 변경신청

- 변경신청 대상

  • (**승인한 물질의 종류나 함량의 변경**) 수출승인서 상의 수출제품명(상품명) 또는 '로테르담협약 대상 물질 함유 내역'에 기재한 함유량(%)의 변경을 말함

  * 승인한 물질의 CAS No.의 변경 또는 물질명칭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출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

  • (**승인한 수출예정 물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증가**) 수출승인서 상의 '당해연도 수출예정량'의 100분의 50이상이 증가한 경우로, 수출량이 시차를 달리하여 증가하였을 경우에는 총 증가한 양이 50%를 초과하는 예상시기 이전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장의 소재지·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 변경승인 신청시기

  • 변경승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다만,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한함

- 제출서류

  •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변경승인신청서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ⅰ) 승인한 물질의 종류나 함량의 변경이나 수출예정 물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증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증가 내역서 및 신·구 비교도표)

  (ⅱ)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소재지가 변경된 사업장에 대한 등기부등본

  • 수출승인서 원본

- 승인대장 정리

  * 예) 변경사항

일 자	내 용	기 재 자
'00.00.00. (변경승인일자)	1. 물질 종류 변경 가. 수출제품(상품)이 ▶▶에서 △△으로 변경 나. 수출대상화학물질이 ▶▶▶에서 △△△으로 변경 2. 수출예정물량 증가 가. 당해연도 수출예정량이 기존 ▶▶톤(또는 ▶▶kl)에서 △△톤(또는 △△kl로 증가 3. 사업장 명칭의 변경 가. 기존 ▶▶에서 △△로 변경 4. 사업자의 변경 가. 기존 ▶▶에서 △△로 변경	○○○(인)

2. 취급 사업장 안전

1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 개요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물질별 취급기준을 지켜야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1과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름

- 이는 유해화학물질의 부적절한 관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및 폭발 등 화학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는 개별물질의 특성에 맞게 아래의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의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정한 유지·관리 •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 강구 •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 및 약품을 비치 •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 보관·저장 금지 •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 또는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겨 실을 때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참여 • 유해화학물질 운반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로 규정

○ 법령내용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관리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防災裝備)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3.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저장하지 말 것 4.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일 것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법 제13조제6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조문해설

○ **관련고시: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제2014-1호, '14.12.31)

○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제시하는 공통기준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 물질별 구체적인 기준을 준수해야함

○ **경과규정**

- 별표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중 시설・장비・설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급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함(시행규칙 부칙 제11조)

벌 칙

○ **벌칙**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제1호)

○ **행정처분**

-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제2항제3호, 시행규칙 별표 7)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13조제2호의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3호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그 밖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3호	경고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별표 1 31호에 따르면 "차량의 운전석이나 승객이 타는 자리 옆에 유해화학물질을 두지 말고 반드시 지정된 화물칸으로 이송하고 화물칸은 덮개를 덮을 것"에서 차량에 개인 소유 차량도 포함되는 건가요?**

⇒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은 운반업에 등록된 차량을 말하여, 개인차량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별표 1호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보관·저장 및 사용 장소 주변에서 흡연하지 말 것"에서 주변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흡연으로 인해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범위로 판단하면 됩니다.

○ **염산 10% 함유인 경우 실내저장보관시설의 경우 국소배기를 설치가동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염산 35%를 탱크(10m^3)에 저장하여 폐수 중화용으로 정량 펌프와 배관을 통해 폐수처리장에 사용합니다. 이런 곳에도 탱크 쪽에 국소배기를 설치해야 합니까?**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1 비고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에 근거, 염산 10%이상을 함유한 시설인 경우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합니다.

○ 시행규칙 별표1의 공통기준 제15조에 “종류가 다른 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상호간에 필요한 간격을 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바닥의 구획선에 대한 기준 및 정의가 되어 있나요?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2호 다항 39)에 따라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구분하여 보관해야합니다. 보관시설 및 바닥구획은 시행규칙 별표5 2호 가항 9) 또는 13)에 따라 필요 간격을 유지해서 설치해야합니다.

○ 시행규칙[별표1] 공통기준 18)고체유해화학물질은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액체, 기체인 경우에는 완전히 밀폐상태로 보관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장에서 생각하는 개념의 완전밀폐는 뚜껑을 덮는 것을 넘어서 실링처리하는 것을 완전밀폐로 봄(작업상의 불편함이 따르는데 완전밀폐의 기준 제시가 필요), 24)용기는 취급자가 사용 후 다시 잠글 수 있는 밀봉뚜껑을 갖출 것. 밀폐 : 샐틈이 없이 꼭 막거나 닫음, 밀봉 : 단단히 붙여 꼭 봉함

Q.밀봉과 밀폐에 대한 기준(정의)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 완전밀폐의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5 2호 다항46)에 따라 용기의 뚜껑을 덮는 것을 포함하여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의 의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밀봉기준은 시행규칙 별표1 41호에 따라 저장용기에서 증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히 붙여 꼭 봉한다는 의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시행규칙[별표1] 공통기준 30)유해화학물질을 일반 우편으로 보내지 말 것에 대해, 신고용, 검사용 샘플은 우편으로 보내고 있는데 예외조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실제 물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우편으로 시약(샘플)을 보내고 있습니다)

⇒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입니다. 따라서 신고용, 검사용 샘플일지라도 상기물질에 해당될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공통기준 30)에 따라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 회사는 가성소다후레이크(98%와 7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중 유해화학물질 개별기준 중에서 수산화나트륨(1310-73-2)의 취급기준에 내용 변경 의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 내용: 철,구리,주석, 알루미늄 또는 이와 관련된 합금물(alloy)로 제조 된 저장용기는 사용금지(부식 위험성), 변경요청내용: 구리,주석,알루미늄 또는 이와 관련된 합금물(alloy)로 제조 된 저장용기는 사용금지(부식 위험성))

⇒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1의 공통취급기준 외에 개별취급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하는「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고시에서는 “철, 구리, 주석, 알루미늄 또는 이와 관련된 합금물로 제조된 저장용기는 부식위험성이 있어서 사용을 금지합니다. 단, 수산화나트륨의 농도와 해당운전조건에 적합한 내식성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보호장구 착용

○ 개요

- 본 조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자에 대해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유해화학물질별로 적합한 개인보호장구의 종류 및 착용기준 등을 규정

- 화학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사고 당시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미착용이 원인이었으며, 개인보호장구 착용 의무화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종사자 및 운송자들의 인명피해 최소화 및 초기 대응시간 단축에 따른 2차 피해 방지에 기여하기 위함

○ 규정 이행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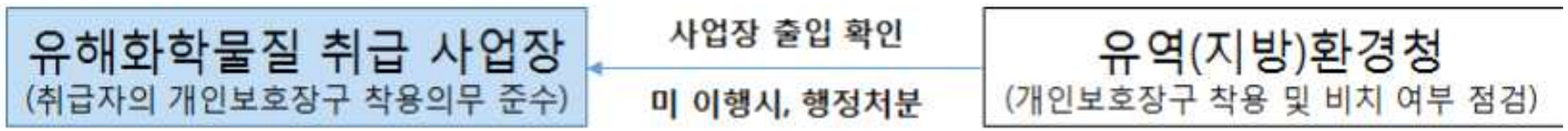

○ 법령 내용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 기체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액체 유해화학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		**제9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법 제14조 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험실 등 실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려가 있는 경우 3. 고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에서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체류하거나 비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2. 유해화학물질을 다른 취급시설로 이송 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흡입독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4. 유해화학물질을 하역(荷役)하거나 적재(積載)하는 경우 5.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비·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조문해설

○ 관련고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4-259호, 2014.12.31)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보호장구의 종류 및 성능기준

- 물질별 개인보호장구(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장갑)의 종류를 관련 고시 별표 1에 규정하였으며, 이외의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및 성능기준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의「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준용

○ 벌칙

-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제2호)

○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4호				
-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아 작업자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 사업주가 지급하였으나 작업자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의무 규정이란?**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운송자 포함)가 기체, 액체 증기, 고체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여, 화학사고로 인한 취급자의 생명 보호 및 부상을 사전에 방어하고, 사고초기 대응(밸브 차단,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더 큰 피해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누가 착용해야 합니까?**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근로자, 감독자, 운송자, 실험자 등입니다.

○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해야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 기본적으로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입니다. 다만, 본 규정에서는 우선적으로 환경부에서 지정한 사고대비물질(사용량에 상관없음)에 대한 개인보호장구의 종류를 규정하였으며, 그 외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의「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와 환경부의「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보호구 착용에 관한 규정」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고용노동부 고시의 목적은 근로자가 평상시 작업 중에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근로자 본인의 건강 및 안전상의 문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환경부 고시의 목적은 만일에 발생될 수 있는 화학사고로 인해 순간적으로 매우 높은 농도(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작업장 농도 수준보다 수천에서 수만 배)에 노출됨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본인의 생명 및

부상의 보호뿐만 아니라, 화학사고 여파로 발생되는 재산피해, 환경피해, 동식물 등의 생태계피해, 농작물 피해 등 복합적인 피해를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개인보호장구를 착용을 하지 않은 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아 착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1차 개선명령, 2차 경고, 3차 영업정지 15일, 4차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사업주가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취급자가 착용하지 않고 작업했을 경우에는 3차까지는 사업자에게 경고조치를 취하고, 4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전면형 호흡보호구란 어떤 보호구입니까?

⇒ 호흡보호구의 형태에 따라 반면형과 전면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반면형은 호흡경로를 보호하기 위해 입 주위를 보호하는 형태이고, 전면형은 호흡경로 보호뿐만 아니라, 안구 및 얼굴 전면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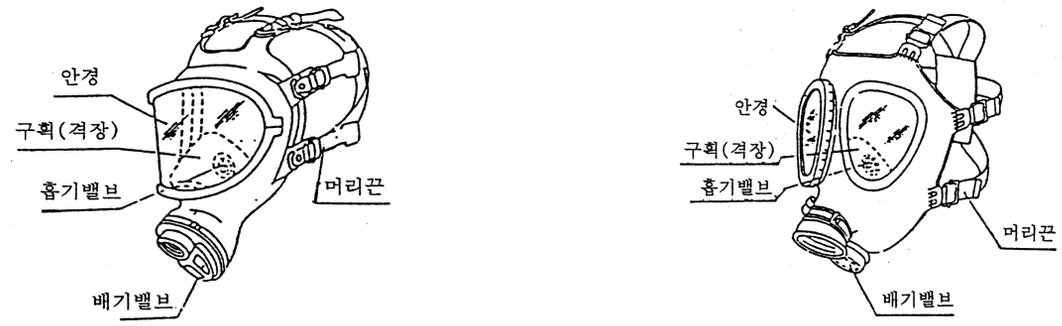

< 전면형 방독마스크의 예 >

○ **왜 전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합니까?**

⇒ 만일에 있을 화학사고(극 고농도, 급성노출) 시 취급자 본인의 생명보호 및 부상방지(호흡기, 안구, 얼굴피부 등)를 위해서는 전면형 호흡보호구가 필요하며, 특히 신속한 초기대응(밸브 차단, 신고 등)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안구피해 뿐만 아니라 안면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전면형 보호장구가 필수입니다. 반면 반면형과 보안경으로는 사고시 안면피해에 따른 2차 대응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개인보호장구를 따로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장마다 몇 개를 비치해야 합니까?**

⇒ 비치 수량은 현재 사고대비물질 취급장 및 취급자 수의 정확한 통계치 산정이 불가능하여 개량적인 비치 수량을 산정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비치 수량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고 시 대응을 할 수 있고 외부 방문객의 노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화관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취급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에서 화학공정은 하루 24시간 가동 중이므로 교대근무를 1일 8시간씩 4명이 근무를 하며 4조 3교대일 경우 총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경우 예를 들어 전면형방독면을 총 16개를 구입하여 1인당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하는지? 아님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작업할 때만 착용함으로 공용으로 4개를 비치 및 비사용으로 2개정도를 비치하여도 되는지? 아님 개인장구류란 말처럼 1인당 1개씩 가지고 있어야하는지요?**

⇒ 화관법 제14조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개인보호장구는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를 기준으로 구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귀사와 같이 4조 3교대를 하신다면 교대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 시 유해화학물질의 노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시어 취급자 4인과 교대자 4인은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화관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고시될 예정이니 추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메탄올(사고대비물질 해당)을 특정 솜에 묻혀 장비 등을 닦고 있으며 해당 룸 내에는 공조가 있어 밀폐 공간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면형 송기마스크 이상의 호흡기를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거리에 비치만 하면 되는지요?

⇒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별표 1 '사고대비물질별 개인보호장구의 종류' 중 사고대비물질인 메탄올 취급 시 취급자는 전면형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단, 동 규정 제6조 '보호장구의 착용 및 착용의 예외'에 따라 클린룸 내 공조설비가 국소배기장치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경우에는 호흡보호구(전면형 송기마스크)와 보호복은 착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동 규정 제7조에 보호장구의 비치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화학사고 발생 시 누출 차단 등 신속한 초기 대응조치를 위하여 전면형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 옥외 저장시설(Tank) 에 외부 납품차량(탱크로리)이 사고대비물질(유해화학물질) 주입 시 참여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도 규정된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치하면 되는지요? 납품차량 운전자의 경우도 동일한가요?

⇒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취급현장에서 관리·감독 하는 경우 실제 취급하는 과정에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대 시를 대비하여 추가로 개인보호장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환경부고시「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제6조 '보호장구의 착용 및 착용의 예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운전 중인 경우 개인보호장구를 비치 또는 소지하는 것으로 직접 착용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3 진열·보관량 제한

○ 개요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판매를 위하여 유독물질 500 kg,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을 100 kg 초과하여 진열・보관하려는 경우 진열・보관계획서를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고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진열・보관하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1회에 유독물질 5,000 kg,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을 3,000 kg 초과하여 사업장 밖에서 운반하려고 할 경우 운반계획서를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도록 함

○ 제도에 대한 이해

- 개정법 이전에는 유독물, 취급제한금지물질의 경우 일정량 이상의 진열・보관 자체를 금지하였으나,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진열・보관계획서를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한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함

- 즉,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외에 허가물질, 사고대비물질에 대해서도 진열・보관 규정을 마련한 것임. 개정법 이전 진열・보관 제한 양을 기준으로 진열・보관계획서 제출대상을 정하였는데, 사고대비물질과 허가물질의 경우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과 사고위험이 유사한 수준임을 고려하여 동일한 진열・보관 제한량을 적용하도록 함

- 운반계획서의 경우 개정법 이전 운반계획서 작성량을 기준으로 제출대상을 정함. 또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독물질뿐만 아니라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허가물질에 대해서도 운반계획서 작성기준량을 정함

○ 업무 흐름도

진열·보관계획서 작성·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	접수 (유역(지방)환경청)	⇒	현장확인 (유역(지방)환경청)	⇒	확인증명서 발급 (유역(지방)환경청)

운반계획서, 통행도로 상세 내역 작성·제출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	접수 및 확인 (유역(지방)환경청)

○ 법령 내용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5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량 제한 등)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진열·보관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열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③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1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운반자, 운반시간, 운반경로·노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운반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제10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보관량 제한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1. 유독물질: 500킬로그램 2.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100킬로그램 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판매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진열·보관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진열·보관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장에 방문하여 외부인 접근 차단 여부,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 및 보관·저장시설의 위험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서의 작성방법, 확인통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성 등을 확인한 후 진열·보관에 따른 주의사항 등을 적어 별지 제8호서식의 확인증명서를 제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1조(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제출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1. 유독물질: 5,000킬로그램 2.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3,000킬로그램 ②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운반계획서에 운반자 및 운반시간·경로·노선을 포함한 통행도로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운반자, 운전기사 또는 호송자가 그 사본을 휴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운반계획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통행도로 주변의 하천 유무, 화학사고 발생 시 확산 위험성, 주거지역 통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문해설

○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보관량 제한

- 진열·보관계획서 제출기준(규칙 제10조제1항)

• 유독물질: 500 kg 초과 •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100 kg 초과

※ 진열이라 함은 여러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물건을 쭉 벌여 놓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 보관하는 업체는 진열·보관계획제 제출 대상이 아님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판매를 위하여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진열·보관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진열·보관계획서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현장을 방문하여 외부인 접근 차단 여부,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 및 보관·저장시설의 위험성 등을 확인한 후 진열·보관에 따른 주의사항 등을 적어 별지 제8호서식의 확인증명서를 제출자에게 발급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는 진열하거나 보관할 수 없음

○ 유해화학물질의 운반계획서 작성·제출

- 운반계획서 제출기준(규칙 제11조제1항)

• 유독물질: 5,000 kg 초과 •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3,000 kg 초과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운반계획서에 통행도로 상세내역(운반자, 운반시간, 경로, 노선 등 기재)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운반계획서 제출자는 운반자, 운전기사 또는 호송자가 사본을 휴대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운반계획서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통행도로 주변의 하천 유무, 화학사고 발생 시 확산 위험성, 주거지역 통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함

벌 칙

❍ 벌칙

-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9조제3호)

❍ 행정 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5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한 경우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6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조문해설

○ **화학물질 사용목적인 경우에는 진열 보관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까?**

⇒ 화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유독물질·허가물질을 일정량을 초과하여 판매를 위해 진열·보관하시는 경우 사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진열·보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경우에는 진열·보관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열 보관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 사용업도 제한량 초과시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합니까? 그렇다면 유예기간이 있습니까?**

⇒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판매'를 위하여 일정량(유독물질 : 500kg, 허가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 100kg)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진열·보관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판매 목적이 아닌 사용업의 경우 진열·보관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운반계획서는 법령에서 정한 양 초과 시 마다 매번 지방환경청에 제출하나요 혹은 일정 주기 마다 합산하여 일괄제출이 가능한가요?**

⇒ 유독물질을 5,000 킬로그램 이상 운반하는 경우, 운반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별지 9호 서식의 '운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운반계획서 사본을 운반자, 운전기사 또는 호송자가 휴대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운송에 대해서도 '운반계획서'를 매회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법 제48조에 따라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일환으로 웹기반으로 운반계획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준비 중입니다.

○ 유독물 운반시 현행 유해법에서는 유독물 5톤이상시 운반계획서를 제출하는데, 화관법에서는 유독물질 5톤, 그외 유해화학물질 3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유해화학물질은 무엇을 말합니까?

⇒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1회에 일정량을 초과(유독물질 : 5,000kg,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 3,000kg)하여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운반자, 운반시간, 운반경로·노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운반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4 화학물질 표시

○ 개요

- 유독물질 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의 분류·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물질에 UN 번호를 부여하고 분류·표시를 제공하여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제도에 대한 이해

- 본 조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 진열·보관장소와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을 포함)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용기·포장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함
- 이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이나 보관·저장하는 시설, 진열·보관하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운반하는 사람 뿐 아니라 사고 시 주위사람들에게 유해성 및 대응정보를 제공하여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응방법을 알려주기 위함임
- 아울러 유해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표시함으로써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유해성을 알리고 적정 취급하도록 하기 위함

○ 법령 내용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제12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명칭: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2. 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4. 유해·위험 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6. 공급자정보: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전화번호·주소 등에 관한 정보 7. 국제연합번호: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하여 국제연합이 지정한 물질분류번호 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취급현장,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물질별로		시를 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과 진열·보관 장소 2.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을 포함한다) 3. 유해화학물질의 용기·포장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유해성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적절한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조문해설

○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유해성항목에 대한 분류기준 및 표시에 대한 세부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

○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거의 동일하나 오존층 유해성물질 신설 및 UN 번호 부여

○ **경과규정**

-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의 표시를 한 자로서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함(시행규칙 부칙 제12조)

벌 칙

○ **벌칙**

-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제4호)

○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제2항 제7호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 장외영향평가 제도 개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착공일 30일 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 해당 취급시설의 위험도와 적합여부를 평가받게 함

○ 장외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

- (**배경**) '12.9월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사업장 내부의 잠재적인 위험이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하여 위험을 관리하는 제도 필요성 제기
-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사업장 밖의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계・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위험도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

○ 장외영향평가 업무 흐름도

신청서 (신청인)	⇒	접수 (화학물질 안전원)	⇒	검토 (화학물질 안전원)	⇒	결재 (화학물질 안전원)	⇒	검토결과서 통보 (신청인)	⇒	현장확인 (검사기관)	⇒	이행 점검 [유역(지방) 환경청]

- **(1단계)**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규칙 제19조제1항, 제3항)
- **(2단계)** 장외영향평가서 검토(안전원) (규칙 제19조제4항, 제5항)
- **(3단계)** 검토결과서(평가서 적합여부 및 위험도) 통보(안전원) (규칙 제19조제4항)
- **(4단계)** 평가서 현장 확인(검사기관의 가동 전 설치 검사) (규칙 제23조제1항)
- **(5단계)** 평가서 이행점검(안전원・지방환경관서) (규칙 제54조제1항제5호)

○ 법령 내용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		**제19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연구실은 제외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설치공사 착공일 30일 전에 별지 제31호서식의 검토신청서에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동일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2.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3.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는 경우 ②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정하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조정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장외영향평가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⑤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내용·방법과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여 고시하는 규모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검토신청서에 별표 4 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표 제3호의 내용만 작성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검토한 후 취급시설의 위험도(공정위험성 및 사고가능성에 따라 고위험도·중위험도 및 저위험도로 구분한다) 및 적합여부 등을 적어 별지 제32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조정 필요사항 및 제출기간을 적어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조정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검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환경ㆍ안전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로서 화학물질 안전·환경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ㆍ대응 관련 현장 경력 또는 경험이 5년 이상인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업무와 관련하여 배상액 5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업무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환경부장관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조문해설

○ 관련 고시 및 훈령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4-253호, '14.12.31)
-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4-260호, '14.12.31)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128호, '14.12.31)

○ 장외영향평가서 제출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다만,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은 제외

*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함(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

** '연구실'이란 대학・연구기관 등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장비・연구실험실・연구재료 등 연구시설을 말함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내용: 기본 평가정보, 장외 평가정보,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로 구성

작성항목	포함내용
① 기본평가 정보	-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 취급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취급량 및 유해성 정보 - 취급시설의 목록, 명세,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 취급시설 및 주변지역의 입지정보 - 기상정보
② 장외평가 정보	- 공정 위험성 분석 - 사고 시나리오 선정 -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 - 위험도 분석 - 안전성 확보방안
③ 다른 법률과의 관계정보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정보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요건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작성

-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16시간과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 16시간 이수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수준: 장외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간이 및 표준 장외영향평가서 구분

- 화학사고 발생 시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일정규모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간이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 간이 장외영향평가서는 유해화학물질 정보, 취급시설 목록 및 사양 등 일부 자료*만 첨부하여 제출

  * ① 기본 평가정보 중 ⅰ) 취급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취급량 및 유해성 정보, ⅱ) 취급시설의 목록, 명세,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② 타법과의 관계정보

-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은 환경부고시「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또는 (첨부1) 참조

  * 해당 제조・사용설비 또는 시설 및 그 취급시설에 연결된 배관 등에서 하루 동안 최대로 취급, 사용, 제조할 수 있는 양이 일일 취급기준 미만이고, 보관・저장 설비 또는 시설에서 최대로 보관・저장할 수 있는 양이 보관・취급기준을 미만인 경우에 간이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가능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방법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에 접속하여 「정보마당 - 장외영향평가서」에서 아래 내용을 다운받아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활용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안내서(안내서에는 관련 고시가 포함되어 있음)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예시(4종)

· 작성지원 범용프로그램 및 사용자 안내서

- '15년부터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개설하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신청(홈페이지 교육마당 참고)

- 영세사업장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컨설팅" 신청

< 장외영향평가 작성수준 결정 체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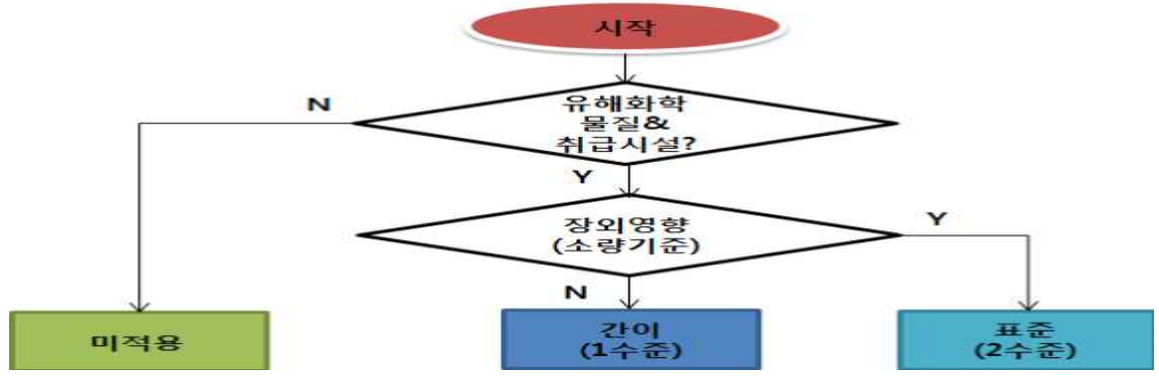

○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 신규시설 또는 기존시설, 변경제출 여부에 따라 다름

- 신규시설은 해당 시설의 설치 공사 착공일 30일 이전에 제출, 여기서 '공사 착공일' 이란 터파기 등 토목 공사 이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설비·장치를 실제로 설치·이전하는 공사를 시작하는 날을 의미

- 기존시설은 규칙 부칙 제6조 경과조치에 따라 제출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경과조치 >

① 2015년 제출
- 화관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자
- 규칙 시행 당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중인 자

② 2016년 제출
- 화관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③ 2017년 제출
- 화관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④ 2018년 제출
- 화관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 화관법 시행 당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자 중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⑤ 2019년 제출
- 화관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 화관법 시행 당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자 중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 변경제출은 영업 변경의 허가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치 공사 착공일 30일 이전에 제출하고, 단순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에 따른 제출은 기존시설의 경과조치에 맞추어 제출

○ 장외영향평가서 변경 제출

-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 허가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업종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 증가(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 변경 • 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변경,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변경 등의 사유로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 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이라 함은 단위설비 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가되는 경우 또는 취급시설의 증설로 일일 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이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량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 장외영향평가서 검토 신청

- 신청인이 화학물질안전원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검토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첨부서류: 장외영향평가서 3부

  * 변경제출의 경우도 동일

○ 장외영향평가서 검토결과서 통보

- 화학물질안전원이 신청인에게 통지
- 검토결과: 적합여부와 취급시설의 위험도로 구분
- 검토결과서: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 첨부서류: 적합여부 상세내용 1부, 위험도평가 상세내용 1부.

< 검토결과 구분 >

① 적합여부
· 적합: 장외영향평가서의 내용이 검토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조건부적합: 장외영향평가서의 내용이 검토기준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나, 그 사항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취급시설의 설치 이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
· 부적합: 장외영향평가서의 내용이 검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취급시설의 최대 위험도가 허용 불가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취급시설의 위험도
· 저 위험도: 화학사고로 인한 영향과 사고 발생 빈도를 고려한 위험도가 낮아 안전진단의 주기를 12년으로 할 수 있는 취급시설
· 중 위험도: 고 위험도와 저 위험도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진단의 주기를 8년으로 할 수 있는 취급시설
· 고 위험도: 화학사고로 인한 영향과 사고 발생 빈도를 고려한 위험도가 높아 안전진단의 주기를 4년마다 해야 하는 취급시설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지정계획 공고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 신청기관 중에서 자격요건을 평가하여 지정

< 전문기관 자격요건 >

① 환경·안전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로서 화학물질안전·환경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대응 관련 현장 경력·경험이 5년 이상 있는 전문인력 확보
②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업무와 관련하여 배상액 5억원 이상의 책임보험 가입
③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장비 등의 요건

- 전문기관 지정 절차

지정계획 공고 (화학물질안전원)	⇒	지정 신청 (신청기관)	⇒	접수 (화학물질안전원)	⇒	자격요건평가 (화학물질안전원)	⇒	현장 확인 (화학물질 안전원)	⇒	지정·고시 (환경부)

○ 누가 작성·제출해야 하나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은 제외됩니다.

*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ncis)에서 유해화학물질 목록 확인 가능

○ 직접 작성해야 하나요?

⇒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에 의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는 16시간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실시하는 16시간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직접 작성하기엔 생소하고 어려운데요?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의 "정보마당 ≫ 장외영향평가"에서 작성지원 범용 프로그램 및 사용자 안내서 등을 내려 받아 활용하시고,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장외영향 평가서 작성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교육신청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교육마당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사업장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컨설턴트 지원"을 신청하셔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1분기 중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므로 이후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 무엇을 작성해야 하나요?

⇒ 기본 평가정보, 장외 평가정보, 타 법과의 관계정보 등 3가지 작성항목을 작성해야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4와 환경부 고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평가정보**)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취급량, 유해성 정보와 취급시설 목록 및 명세 등 공정안전 기초자료로 구성
(**장외 평가정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설비의 잠재위험을 확인하고,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포함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 해당 취급시설·설비를 설치하는데 검토되어야 할 관계법령과 적용여부를 기재

○ 유해화학물질을 소량*만 취급하는 시설도 모든 항목을 작성해야 하나요?

* 대상 해당여부는 환경부 고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일정규모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취급물질 정보, 취급시설 목록 및 명세 등 장외영향평가서의 일부 자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① 기본 평가정보 중 ⅰ) 취급 화학물질의 목록, 취급량 및 유해성 정보, ⅱ) 취급시설의 목록, 명세,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② 타법과의 관계 정보

○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신규시설은 해당시설의 설치 공사 착공일 30일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공사 착공일”이란 터파기 등 토목공사 이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설비를 실제로 설치·이전하는 공사를 시작하는 날을 말합니다.

⇒ 기존시설은 다음에 해당하는 시기에 제출해야 합니다.

【 화관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

① 2015년 12월 31일까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제출 대상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② 2016년 12월 31일까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③ 2017년 12월 31일까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④ 2018년 12월 31일까지

- ①부터 ③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⑤ 2019년 12월 31일까지

- ①부터 ③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 화관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자 】

① 2018년 12월 31일까지

- 위 ①부터 ③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② 2019년 12월 31일까지

- 위 ①부터 ③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 화관법 시행당시 취급시설 설치 중인 자 】

- 2015년 이내 제출

○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없이 바로 제출해야 하나요?**

⇒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신청 전에 제출하여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의 증설은 기존시설과 같은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허가사항 중에서 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이라 함은 단위 설비 용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되는 경우 또는 취급시설의 증설로 일일 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이 환경부 고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량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말함

○ **신규시설의 경우 영업허가를 받기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 장외영향평가서 검토기간(최소 30일)부터 설치검사기간(최소 30일) 및 영업허가(변경허가)기간(최소 15일)까지 행정소요를 고려하면 최소 3~4개월이 소요됩니다.

○ **제출한 장외영향평가서를 변경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사항은 모두 해당합니다.

*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허가사항 중에서 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이라 함은 단위 설비 용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되는 경우 또는 취급시설의 증설로 일일 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이 환경부 고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량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말함

○ **제출은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장외영향평가서를 3부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0 화학물질안전원(한국선급건물 2층)/ (**연락처**) 042-605-7045~47

○ **제출할 때 수수료가 있나요?**

⇒ 수수료는 없습니다.

○ **화관법 시행 전에 착공하여 2015년에 완공할 예정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도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 예, 제출해야 합니다. 법 제28조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변경 허가 신청 시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시행규칙 부칙 제6조제3항에서 1년 이내 제출할 수 있도록 유예를 두고 있습니다.

○ **기존 시설에 인접하여 신규로 저장탱크를 하나 신설하는 경우,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예,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저장탱크의 설치가 영업의 변경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적합통보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에 영업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2014년에 기존시설의 증설 공사를 착공한 경우에도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제출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취급시설의 증설이 변경허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단순히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시설의 제출시기에 맞추어 제출하면 됩니다.

○ **건설현장 중에서도 콘크리트 폐수의 중화 등으로 가성소다와 같은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건설업체도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예, 법 제2조제11호 규정에 따라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취급시설에 해당하므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60일 이내 완료되는 공사로 일시적으로 이용하고 그 사용이 종료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건설업에서 수주 받은 플랜트 등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누가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주체가 되는 가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작성·제출의무가 있습니다.

○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취급량, 운전조건 등을 고려하여 위해우려영향범위를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위해우려영향범위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범용프로그램 또는 이와 동등수준이라고 간주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이 여러 개의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장외영향평가서의 제출은 어떻게 합니까?**

⇒ 사업장 단위로 제출할 수 있으며, 다만 작성은 단위공장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위공장의 구분은 사업장 형태 및 사업장의 운영체계 등을 고려하여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첨부1 소량 기준

□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No.	화학물질명(국문)	화학물질명(영문)	CAS_NO	소량기준	
				일일 취급기준 (kg)	보관·저장 기준(kg)
1	포르말린	Formalin	50-00-0	50	750
2	메클로르에타민	Mechlorethamine	51-75-2	200	3,000
3	브로노폴	Bronopol	52-51-7	400	6,000
4	트리클로르폰	Trichlorfon	52-68-6	400	6,000
5	니코틴	Nicotine	54-11-5	50	750
6	펜티온	Fenthion	55-38-9	400	6,000
7	사염화 탄소	Carbon tetrachloride	56-23-5	400	6,000
8	파라티온	Parathion	56-38-2	200	3,000
9*	스트리시닌	Strychnine	57-24-9	400	6,000
10	메틸 아폭시드	Methyl aphoxide	57-39-6	400	6,000
11	클로르단	Chlordane	57-74-9	400	6,000
12	메틸히드라진	Methylhydrazine	60-34-4	50	750
13	디메토에이트	Dimethoate	60-51-5	400	6,000
14	아미트롤	Amitrole	61-82-5	400	6,000
15	아닐린	Aniline	62-53-3	400	6,000
16	디클로르보스	Dichlorvos	62-73-7	400	6,000
17*	플루오르화아세트산나트륨	Sodium fluoroacetate	62-74-8	400	6,000
18	포름산	Formic acid	64-18-6	400	6,000
19	황산 디에틸	Diethyl sulfate	64-67-5	400	6,000
20*	시클로헥시미드	Cycloheximide	66-81-9	400	6,000
21	메틸 알코올	Methyl alcohol	67-56-1	400	6,000
22	클로로포름	Chloroform	67-66-3	400	6,000
23	메르캅토아세트산	Mercaptoacetic acid	68-11-1	200	3,000
24	벤젠	Benzene	71-43-2	400	6,000
25	브롬화 메틸	Methyl bromide	74-83-9	100	1,500
26	염화 메틸	Methyl chloride	74-87-3	200	3,000

No.	화학물질명(국문)	화학물질명(영문)	CAS_NO	소량기준	
				일일 취급기준 (kg)	보관저장 기준(kg)
27	요오드화 메틸	Methyl iodide	74-88-4	400	6,000
28	메틸아민	Methylamine	74-89-5	200	3,000
29	시안화수소	Hydrogen cyanide	74-90-8	5	75
30	디엠에이비	DMAB	74-94-2	400	6,000
31	염화 에틸	Ethyl chloride	75-00-3	200	3,000
32	염화비닐	Vinyl chloride	75-01-4	200	3,000
33	이황화 탄소	Carbon disulfide	75-15-0	200	3,000
34	산화에틸렌	Ethylene oxide	75-21-8	100	1,500
35	포스겐	Phosgene	75-44-5	5	75
36	트리메틸아민	Trimethylamine	75-50-3	200	3,000
37	니트로메탄	Nitromethane	75-52-5	400	6,000
38	산화프로필렌	Propylene oxide	75-56-9	100	1,500
39	염화테트라메틸암모늄	Tetramethylammonium chloride; N,N,N-Trimethyl methanaminium chloride	75-57-0	400	6,000
40	수산화 테트라메틸암모니윰	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75-59-2	400	6,000
41	테트라메틸납	Tetramethyl lead	75-74-1	400	6,000
42	아세톤 시아노히드린	Acetone cyanohydrin	75-86-5	200	3,000
43	클로로피크린	Chloropicrin	76-06-2	200	3,000
44	헥사클로로시클로펜타디엔	Hexachlorocyclopentadiene	77-47-4	200	3,000
45	황산 디메틸	Dimethyl sulfate	77-78-1	200	3,000
46	디옥사티온	Dioxathion	78-34-2	400	6,000
47	S,S,S-트리부틸 삼티오인산	S,S,S-Tributyl phos-phorotrithioate	78-48-8	400	6,000
48	이소부틸아민	Isobutylamine	78-81-9	400	6,000
49	2-메틸프로판니트릴	2-Methylpropanenitrile	78-82-0	400	6,000
50	메틸 에틸 케톤	Methyl ethyl ketone	78-93-3	400	6,000
51	메틸 비닐 케톤	Methyl vinyl ketone	78-94-4	50	750
52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79-01-6	400	6,000
53	아크릴아미드	Acrylamide	79-06-1	400	6,000
54	아크릴산	Acrylic acid	79-10-7	400	6,000
55	클로로아세트산	Chloroacetic acid	79-11-8	400	6,000
56	티오세미카르바지드	Thiosemicarbazide	79-19-6	400	6,000
57	1,1,2,2-테트라브로모에탄	1,1,2,2-Tetrabromoethane	79-27-6	400	6,000

No.	화학물질명(국문)	화학물질명(영문)	CAS_NO	소량기준	
				일일 취급기준 (kg)	보관저장 기준(kg)
58	디클로로아세트산	Dichloroacetic acid	79-43-6	400	6,000
59	왈파린	Warfarin	81-81-2, 5543-57-7, 5543-58-8	400	6,000
60*	디파시논	Diphacinone	82-66-6	400	6,000
61	로테논	Rotenone	83-79-4	400	6,000
62	디부틸 프탈레이트	Dibutyl phthalate	84-74-2	400	6,000
63	부틸벤질 프탈레이트	Butylbenzyl phthalate	85-68-7	400	6,000
64*	아진포스-메틸	Azinphos-methyl	86-50-0	400	6,000
65	안투	Antu	86-88-4	400	6,000
66	펜타클로로페놀	Pentachlorophenol	87-86-5	400	6,000
67	1-클로로-2-니트로벤젠	1-Chloro-2-nitro-benzene	88-73-3	400	6,000
68	디노셉	Dinoseb	88-85-7	400	6,000
69	피크릭 산	Picric acid	88-89-1	200	3,000
70	톨루엔 2,6-디이소시아네이트	Toluene 2,6-diisocyanate	91-08-7	400	6,000
71	N,N-디에틸아닐린	N,N-Diethylaniline	91-66-7	400	6,000
72	4-아미노비페닐	4-Aminobiphenyl	92-67-1	400	6,000
73	과산화 벤조일	Benzoyl peroxide	94-36-0	400	6,000
74	2,4-디	2,4-D	94-75-7	400	6,000
75	o-크실렌	O-Xylene	95-47-6	400	6,000
76	o-크레졸	O-Cresol	95-48-7	400	6,000
77	2-클로로벤젠아민	2-Chlorobenzenamine	95-51-2	400	6,000
78	o-톨루이딘	o-Toluidine	95-53-4	400	6,000
79	1,2-벤젠디아민	1,2-Benzenediamine	95-54-5	400	6,000
80	4-메틸-1,3-벤젠디아민	4-Methyl-1,3-benzenediamine	95-80-7	400	6,000
81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2-Dibromo-3-chloropropane	96-12-8	400	6,000
82	1,3-디클로로-2-프로판올	1,3-Dichloro-2-propanol	96-23-1	400	6,000
83	클로로히드린	Chlorohydrin	96-24-2	400	6,000
84	메틸 아크릴레이트	Methyl acrylate	96-33-3	400	6,000
85	메틸 클로로아세트산	Methyl chloroacetate	96-34-4	400	6,000
86	2,4-디니트로아닐린	2,4-Dinitroaniline	97-02-9	400	6,000
87	디클로펜티온	Dichlofenthion	97-17-6	400	6,000
88	2-푸란메탄올	2-Furanmethanol	98-00-0	400	6,000

No.	화학물질명(국문)	화학물질명(영문)	CAS_NO	소량기준	
				일일 취급기준 (kg)	보관·저장 기준(kg)
89	푸르푸랄	Furfural	98-01-1	400	6,000
90	니트로벤젠	Nitrobenzene	98-95-3	400	6,000
91	4-니트로톨루엔	4-Nitrotoluene	99-99-0	400	6,000
92	4-비닐피리딘	4-vinylpyridine	100-43-6	200	3,000
93	염화 벤질	Benzyl chloride	100-44-7	200	3,000
94	N-메틸아닐린	N-Methylaniline	100-61-8	400	6,000
95	페닐히드라진	Phenylhydrazine	100-63-0	400	6,000
96	2-비닐피리딘	2-Vinylpyridine	100-69-6	400	6,000
97	헥사민	Hexamine	100-97-0	400	6,000
98	4,4'-디이소시안산 디페닐메탄	Diphenylmethane 4,4'-diisocyanate	101-68-8	400	6,000
99	트리부틸아민	Tributylamine	102-82-9	400	6,000
100	N-에틸아닐린	N-Ethylaniline	103-69-5	400	6,000
101	4-노닐페놀	4-Nonylphenol	104-40-5	400	6,000
102	2,4-크실레놀	2,4-Xylenol	105-67-9	400	6,000
103	비스(2-에틸헥실)아민	Bis(2-ethylhexyl)amine	106-20-7	400	6,000
104	p-크실렌	p-Xylene	106-42-3	400	6,000
105	p-크레졸	p-Cresol	106-44-5	400	6,000
106	p-톨루이딘	p-Toluidine	106-49-0	400	6,000
107	1,4-벤조퀴논	1,4-benzoquinone	106-51-4	400	6,000
108	에피클로로히드린	Epichlorohydrin	106-89-8	400	6,000
109	글리시딜 아크릴산	Glycidyl acrylate	106-90-1	400	6,000
110	1,2-디브로모에탄	1,2-Dibromoethane	106-93-4	400	6,000
111	아크롤레인	Acrolein	107-02-8	50	750
112	알릴 클로라이드	Allyl chloride	107-05-1	400	6,000
113	1,2-이염화에탄	1,2-Dichloroethane	107-06-2	400	6,000
114	2-클로로에탄올	2-Chloroethanol	107-07-3	200	3,000
115	프로피오노니트릴	Propiononitrile	107-12-0	200	3,000
116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107-13-1	200	3,000
117	에틸렌디아민	Ethylenediamine	107-15-3	400	6,000
118	알릴 알콜	Allyl alcohol	107-18-6	200	3,000
119	2-프로핀-1-올	2-Propyn-1-ol	107-19-7	200	3,000
120	클로로메틸 메틸 에테르	Chloromethyl methyl ether	107-30-2	400	6,000

No.	화학물질명(국문)	화학물질명(영문)	CAS_NO	소량기준	
				일일 취급기준 (kg)	보관·저장 기준(kg)
121	사린	O-Isopropyl methyl phosphonofiuoridate(sarin)	107-44-8	5	75
122	피로인산 테트라에틸	Tetraethyl pyro-phosphate(TEPP)	107-49-3	200	3,000
123	m-크실렌	m-Xylene	108-38-3	400	6,000
124	크레졸	Cresol	108-39-4	400	6,000
125	m-아미노클로로벤젠	m-Aminochlorobenzene	108-42-9	400	6,000
126	m-톨루이딘	m-Toluidine	108-44-1	400	6,000
127	메타알데히드	Metaldehyde	108-62-3	400	6,000
128	3,5-크실레놀	3,5-Xylenol	108-68-9	400	6,000
129	톨루엔	Toluene	108-88-3	400	6,000
130	시클로헥실아민	Cyclohexylamine	108-91-8	400	6,000
131	페놀	Phenol	108-95-2	200	3,000
132	2-클로로피리딘	2-Chloropyridine	109-09-1	400	6,000
133	n-프로필 클로로포름산	n-Propyl chloroformate	109-61-5	400	6,000
134	노말-부틸아민	n-Butylamine	109-73-9	400	6,000
135	부탄니트릴	Butanenitrile	109-74-0	400	6,000
136	말로노니트릴	Malononitrile	109-77-3	400	6,000
137	2-부틴-1,4-디올	2-Butyne-1,4-diol	110-65-6	400	6,000
138	글루타르알데히드	Glutaraldehyde	111-30-8	400	6,000
139	비스(2-클로로에틸)에테르	Bis(2-chloroethyl)ether	111-44-4	400	6,000
140	디-n-부틸아민	Di-n-butylamine	111-92-2	200	3,000
141	디메폭스	Dimefox	115-26-4	200	3,000
142	트리페닐인산	Triphenylphosphate	115-86-6	400	6,000
143	펜술포티온	Fensulfothion	115-90-2	200	3,000
144*	알디캅	Aldicarb	116-06-3	400	6,000
145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Bis(2-ethylhexyl) phthalate	117-81-7	400	6,000
146	이솔란	Isolan	119-38-0	200	3,000
147	3,3'-디메톡시-[1,1-비페닐]-4,4'-디아민	3,3'-Dimethoxy-[1,1'-biphenyl]-4,4'-diamine	119-90-4	400	6,000
148	트리에틸아민	Triethylamine	121-44-8	400	6,000
149	N,N-디메틸아닐린	N,N-Dimethylaniline	121-69-7	400	6,000
150	말라티온	Malathion	121-75-5	400	6,000
151	보밀	Bomyl	122-10-1	200	3,000

No.	화학물질명(국문)	화학물질명(영문)	CAS_NO	소량기준	
				일일 취급기준 (kg)	보관·저장 기준(kg)
152	페니트로티온	Fenitrothion	122-14-5	400	6,000
153	하이드로퀴논	Hydroquinone	123-31-9	400	6,000
154	trans-크로톤알데히드	trans-Crotonaldehyde	123-73-9	200	3,000
155	N-2-프로펜일-2-프로펜-1-아민	N-2-Propenyl-2-pro-pen-1-amin e	124-02-7	400	6,000
156	염화 메탄술포닐	Methanesulfonyl chloride	124-63-0	400	6,000
157	트리스(2,3-디브로모 프로필)포스페이트	Tris(2,3-dibromopropyl)phosphate	126-72-7	400	6,000
158	메타아크릴로니트릴	Methacrylonitrile	126-98-7	400	6,000
15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Tetrachloroethylene	127-18-4	400	6,000
160	염화 o-톨루엔술폰산	o-Toluenesulfonyl chloride	133-59-5	400	6,000
161	O-노닐페놀	O-Nonylphenol	136-83-4	400	6,000
162	티람	Thiram	137-26-8	400	6,000
163	m-노닐페놀	m-Nonylphenol	139-84-4	400	6,000
164	벤젠아세토니트릴	Benzeneacetonitrile	140-29-4	400	6,000
165	디크로토포스	Dicrotophos	141-66-2	200	3,000
166	아세트산 에틸	Ethyl acetate	141-78-6	400	6,000
167	시안화나트륨	Sodium cyanide	143-33-9	200	3,000
168	플루오로아세트산 및 염류	Fluoroacetic acid	144-49-0	400	6,000
169	에틸렌이민	Ethylenimine	151-56-4	50	750
170	쉬라단	Schradan(Diphosphoramide, Octamethyl-)	152-16-9	200	3,000
171*	이소벤잔	Isobenzan	297-78-9	400	6,000
172	티오나진	Thionazin	297-97-2	200	3,000
173	파라티온-메틸	Parathion-methyl	298-00-0	400	6,000
174	포레이트	Phorate	298-02-2	200	3,000
175	디술포톤	Disulfoton	298-04-4	200	3,000
176	날레드	Naled	300-76-5	400	6,000
177	옥시디메톤-메틸	Oxydemeton-methyl	301-12-2	400	6,000
178	히드라진	Hydrazine	302-01-2	400	6,000
179	멕사카베이트	Mexacarbate	315-18-4	400	6,000
180	트리클로로나트	Trichloronat	327-98-0	400	6,000
181	다이아지논	Diazinon	333-41-5	400	6,000
182	시안아미드	Cyanamide	420-04-2	400	6,000

No.	화학물질명(국문)	화학물질명(영문)	CAS_NO	소량기준	
				일일 취급기준 (kg)	보관·저장 기준(kg)
183	클로르펜빈포스	Chlorfenvinphos	470-90-6	400	6,000
184	4-아미노피리딘	4-Aminopyridine	504-24-5	400	6,000
185	머스타드 가스	Mustard gas	505-60-2	5	75
186	염화 시안	Cyanogen chloride	506-77-4	5	75
187	클로로벤질레이트	Chlorobenzilate	510-15-6	400	6,000
188	2,3-크실레놀	2,3-Xylenol	526-75-0	400	6,000
189*	디엔오시	DNOC	534-52-1	400	6,000
190	1,3-디클로로프로펜	1,3-Dichloropropene	542-75-6	400	6,000
191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Bis(chloromethyl)ether	542-88-1	50	750
192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Trichloroacetonitrile	545-06-2	400	6,000
193	이소티오시안산 메틸	Methyl isothiocyanate	556-61-6	200	3,000
194	퍼플루오로시클로펜텐	Perfluorocyclopentene	559-40-0	400	6,000
195	에티온	Ethion	563-12-2	400	6,000
196	2,6-크실레놀	2,6-Xylenol	576-26-1	400	6,000
197	톨루엔 2,4-디이소시아네이트	Toluene 2,4-diisocyanate	584-84-9	200	3,000
198	시안화칼슘	Calcium cyanide	592-01-8	400	6,000
199	1,1-디클로로-1-니트로에탄	1,1-Dichloro-1-nitroethane	594-72-9	400	6,000
200	브로모-2-프로판온	Bromo-2-propanone	598-31-2	200	3,000
201	트리페닐포스핀	Triphenylphosphine	603-35-0	400	6,000
202	1,2-벤젠디아민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1,2-Benzenediamine dihydrochloride	615-28-1	400	6,000
203	톨루엔-2,5-디아민 설페이트	Toluene-2,5-diamine sulfate	615-50-9	400	6,000
204	1,4-벤젠디아민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1,4-Benzenediamine dihydrochloride	624-18-0	400	6,000
205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630-08-0	100	1,500
206	티오메톤	Thiometon	640-15-3	400	6,000
207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	Fluoroacetamide	640-19-7	400	6,000
208	디메틸란	Dimetilan	644-64-4	400	6,000
209	헥사플루오로-1,3-부타디엔	Hexafluoro-1,3-butadiene	685-63-2	100	1,500
210	포스멧	Phosmet	732-11-6	400	6,000
211	N-부틸피롤리딘	N-Butylpyrrolidine	767-10-2	400	6,000
212	카보페노티온	Carbophenothion	786-19-6	400	6,000
213	디에틸에스테르 클로로인산	Phosphorochloridic acid diethyl ester	814-49-3	200	3,000

No.	화학물질명(국문)	화학물질명(영문)	CAS_NO	소량기준	
				일일 취급기준 (kg)	보관·저장 기준(kg)
214	아크릴일 클로라이드	Acrylyl chloride	814-68-6	50	750
215	디이소시안산 헥사메틸렌	Hexamethylene diisocyanate	822-06-0	200	3,000
216	염화 2-클로로에틸디 에틸암모늄	2-Chloroethyldiethyl ammonium chloride	869-24-9	400	6,000
217	3,3-디아세톡시-1-프로펜	3,3-Diacetoxy-1-pro-pene	869-29-4	200	3,000
218	트리페닐틴 아세테이트	Triphenyltin acetate	900-95-8	400	6,000
219	염화 2-메틸-2-프로페노일	2-Methyl-2-propenoyl chloride	920-46-7	50	750
220	포노포스	Fonofos	944-22-9	400	6,000
221*	포스폴란	Phosfolan	947-02-4	400	6,000
222	메포스폴란	Mephosfolan	950-10-7	200	3,000
223	메티다티온	Methidathion	950-37-8	400	6,000
224	메틸 트리티온	Methyl trithion	953-17-3	400	6,000
225	트리아미포스	Triamiphos	1031-47-6	400	6,000
226	오메토에이트	Omethoate	1113-02-6	400	6,000
227	크실레놀	Xylenol	1300-71-6	400	6,000
228	카드뮴 옥사이드	Cadmium oxide	1306-19-0	400	6,000
229	황화 카드뮴	Cadmium sulphide	1306-23-6	400	6,000
230	안티모니 트리옥사이드	Antimony trioxide	1309-64-4	400	6,000
231	수산화나트륨	Sodium hydroxide	1310-73-2	400	6,000
232	산화니켈	Nickel monoxide, Nickel oxide	1313-99-1	400	6,000
233	오산화 인	Phosphorus pentoxide	1314-56-3	400	6,000
234	오황화 인	Phosphorus pentasulfide	1314-80-3	400	6,000
235	인화 아연	Zinc phosphide	1314-84-7	200	3,000
236	m-크레졸	m-Cresol	1319-77-3	400	6,000
237	크실렌	Xylene	1330-20-7	400	6,000
238	무수 크롬산	Chromic anhydride	1333-82-0	400	6,000
239	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	Methyl ethyl ketone peroxide	1338-23-4	200	3,000
240	디노텁	Dinoterb	1420-07-1	400	6,000
241	카보푸란	Carbofuran	1563-66-2	400	6,000
242*	아세톤 티오쎄미카르바존	Acetone thiosemicarbazone	1752-30-3	400	6,000
243	(에폭시에틸)벤젠	(Epoxyethyl)benzene	1996-09-3	400	6,000
244	메티오캅	Methiocarb	2032-65-7	400	6,000
245	파라콰트 디메틸설페이트	Paraquat dimethylsulfate	2074-50-2	400	6,000

No.	화학물질명(국문)	화학물질명(영문)	CAS_NO	소량기준	
				일일 취급기준 (kg)	보관·저장 기준(kg)
246	3-[(프롭-1-엔-2-일)페닐]프롭-2-일 이소시안산	3-[(Prop-1-en-2-yl) phenyl]prop-2-yl isocyanate	2094-99-7	200	3,000
247	이피엔	EPN	2104-64-5	50	750
248	몰리네이트	Molinate	2212-67-1	400	6,000
249	펜캅톤	Phencapton	2275-14-1	400	6,000
250*	프로토에이트	Prothoate	2275-18-5	400	6,000
251	프로파르지트	Propargite	2312-35-8	200	3,000
252	1-클로로-2-니트로프로판	1-Chloro-2-nitropropane	2425-66-3	400	6,000
253	포르모티온	Formothion	2540-82-1	400	6,000
254	메카밤	Mecarbam	2595-54-2	400	6,000
255	펜토에이트	Phenthoate	2597-03-7	400	6,000
256*	프로메캅	Promecarb	2631-37-0	400	6,000
257	옥시디프로포스	Oxydeprofos	2674-91-1	400	6,000
258	플루오르화 술퍼릴	Sulfuryl fluoride	2699-79-8	100	1,500
259	엔도티온	Endothion	2778-04-3	400	6,000
260	아세트산 디노셉	Dinoseb acetate	2813-95-8	400	6,000
261	2-메틸-4,6-니트로페놀 암모니움 염	2-Methyl-4,6-nitrophenol ammonium salt	2980-64-5	400	6,000
262	염화 2,3-에폭시프로필트리메틸암모늄	2,3-Epoxypropyltrimethylammonium chloride	3033-77-0	400	6,000
263	푸지티온	Fujithion	3309-87-3	400	6,000
264	테트라이소시아나토실란	Tetraisocyanatosilane	3410-77-3	200	3,000
265	2,2'-티오디에탄티올	2,2'-Thiodiethanethiol	3570-55-6	400	6,000
266	4-(2-클로로에틸)몰포린 염산	4-(2-Chloroethyl)morpholine hydrochloride	3647-69-6	400	6,000
267	술포텝	Sulfotep	3689-24-5	200	3,000
268*	클로로파시논	Chlorophacinone	3691-35-8	400	6,000
269	염소산칼륨	Potassium chlorate	3811-04-9	400	6,000
270	디이소시안산 이소포론	Isophorone diisocyanate	4098-71-9	400	6,000
271*	포스아세팀	Phosacetim	4104-14-7	400	6,000
272	크로톤알데히드	Crotonaldehyde	4170-30-3	200	3,000
273	13-cis-레틴산	13-cis-Retinoic acid	4759-48-2	400	6,000
274	브로모포스-에틸	Bromophos-ethyl	4824-78-6	400	6,000
275	하이드록실아민 하이드로클로라이드	Hydroxylamine hydrochloride	5470-11-1	400	6,000

No.	화학물질명(국문)	화학물질명(영문)	CAS_NO	소량기준	
				일일 취급기준 (kg)	보관·저장 기준(kg)
276*	쿠마테트라릴	Coumatetralyl	5836-29-3	400	6,000
277	3-에톡시프로필아민	3-Ethoxypropylamine	6291-85-6	400	6,000
278	질산암모늄	Ammonium nitrate	6484-52-2	400	6,000
279	N'-[3-(디메틸아미노)프로필]-N,N-디메틸프로판-1,3-디아민	3-(Dimethyl amino)propyl	6711-48-4	400	6,000
280	모노크로토포스	Monocrotophos	6923-22-4	400	6,000
281	디옥사캅	Dioxacarb	6988-21-2	400	6,000
282	프로파포스	Propaphos	7292-16-2	400	6,000
283	수은	Mercury	7439-97-6	400	6,000
284	나트륨	Sodium	7440-23-5	200	3,000
285	비소 및 비소화합물	Arsenic	7440-38-2	400	6,000
286	황산 탈륨	Thallium sulfate	7446-18-6	400	6,000
287*	머큐리 디클로라이드	Mercury dichloride	7487-94-7	400	6,000
288	질산나트륨	Sodium nitrate	7631-99-4	400	6,000
289	트리플루오로보란	Trifluoroborane	7637-07-2	50	750
290	염화수소(무수염산)	Hydrogen chloride	7647-01-0	100	1,500
	염화수소산(염산)	Hydrochloric acid		200	3,000
291	안티모니 펜타클로라이드	Antimony pentachloride	7647-18-9	400	6,000
292	플루오르화수소(무수불산)	Hydrogen fluoride	7664-39-3	50	750
	불화수소산(불산)	Hydrofluoric acid		200	3,000
293	암모니아	Ammonia	7664-41-7	100	1,500
294	황산	Sulfuric acid	7664-93-9	200	3,000
295	질산	Nitric acid	7697-37-2	200	3,000
296	크로톡시포스	Crotoxyphos	7700-17-6	400	6,000
297	염화 티오닐	Thionyl chloride	7719-09-7	400	6,000
298	삼염화 인	Phosphorus trichloride	7719-12-2	400	6,000
299	과망간산칼륨	Potassium permanganate	7722-64-7	400	6,000
300	과산화 수소	Hydrogen peroxide	7722-84-1	200	3,000
301	브롬	Bromine	7726-95-6	400	6,000
302	질산칼륨	Potassium nitrate	7757-79-1	400	6,000
303	아염소산 나트륨	Sodium chlorite	7758-19-2	400	6,000
304	크롬산납	Lead chromate	7758-97-6	400	6,000
305	질산은	Silver nitrate	7761-88-8	400	6,000

No.	화학물질명(국문)	화학물질명(영문)	CAS_NO	소량기준	
				일일 취급기준 (kg)	보관저장 기준(kg)
306	염소산나트륨	Sodium chlorate	7775-09-9	400	6,000
307	중크롬산 칼륨	Potassium dichromate	7778-50-9	400	6,000
308	과염소산칼륨	Potassium perchlorate	7778-74-7	400	6,000
309	플루오린	Fluorine	7782-41-4	5	75
310	셀레늄 및 화합물질	Selenium	7782-49-2	400	6,000
311	염소	Chlorine	7782-50-5	50	750
312	황화수소	Hydrogen sulfide	7783-06-4	50	750
313	안티모니 트리플루라이드	Antimony trifluoride	7783-56-4	400	6,000
314	트리실버 오르소포스페이트	Trisilver orthophosphate	7784-09-0	400	6,000
315	아르신	Arsine	7784-42-1	5	75
316	황산니켈	Nickel sulfate	7786-81-4	400	6,000
317	크롬산 칼륨	Potassium chromate	7789-00-6	400	6,000
318	이크롬산암모늄	Ammonium dichromate	7789-09-5	400	6,000
319	플루오르화 리튬	Lithium fluoride	7789-24-4	400	6,000
320	클로로술폰산	Chlorosulfonic acid	7790-94-5	50	750
321	히드록실아민	Hydroxylamine	7803-49-8	200	3,000
322	포스핀	Phosphine	7803-51-2	5	75
323	히드라진수화물	Hydrazine hydrate	7803-57-8	400	6,000
324	캄페클로르	Camphechlor	8001-35-2	400	6,000
325	염화 N-알킬디메틸 벤질 암모늄	N-Alkyldimethylbenzylammonium chloride	8001-54-5	400	6,000
326	발연황산	Fuming sulfuric acid	8014-95-7	50	750
327	디메톤-메틸	Demeton-methyl	8022-00-2	200	3,000
328	디메톤	Demeton	8065-48-3	200	3,000
329	염화 황	Sulfur chloride	10025-67-9	400	6,000
330	옥시염화 인	Phosphorus oxychloride	10025-87-3	400	6,000
331	안티모니 트리클로라이드	Antimony trichloride	10025-91-9	400	6,000
332	오염화 인	Phosphorus pentachloride	10026-13-8	400	6,000
333	브롬화 수소	Hydrogen bromide	10035-10-6	100	1,500
334	하이드록실아민 설페이트	Hydroxylamine sulfate	10039-54-0	400	6,000
335	이산화 염소	Chlorine dioxide	10049-04-4	5	75
336	산화질소	Nitric oxide	10102-43-9	100	1,500
337	질산 탈륨	Thallium nitrate	10102-45-1	400	6,000

No.	화학물질명(국문)	화학물질명(영문)	CAS_NO	소량기준	
				일일 취급기준 (kg)	보관·저장 기준(kg)
338	염화카드뮴	Cadmium chloride	10108-64-2	400	6,000
339	황산 카드뮴	Cadmium sulphate	10124-36-4	400	6,000
340	메타아미도포스	Methamidophos	10265-92-6	400	6,000
341*	다이알리포스	Dialifos	10311-84-9	400	6,000
342	N,N'-비스(3-아미노프로필)-1,2-에탄디아민	N,N'-Bis(3-aminopropyl)-1,2-ethanediamine	10563-26-5	400	6,000
343	이크롬산나트륨	Sodium dichromate	10588-01-9	400	6,000
344	인	White phosphorus	12185-10-3	50	750
345	터브포스	Terbufos	13071-79-9	200	3,000
346	포스파미돈	Phosphamidon	13171-21-6	400	6,000
347	에토프로포스	Ethoprophos	13194-48-4	200	3,000
348	염화 디메틸술파모일	Dimethylsulfamoyl chloride	13360-57-1	400	6,000
349	아지드화납	Lead azide	13424-46-9	200	3,000
350	니켈 카르보닐	Nickel carbonyl	13463-39-3	50	750
351	N-(2-아미노에틸)-1,3-프로판디아민	N-(2-Aminoethyl)-1,3-propanediamine	13531-52-7	400	6,000
352	퀴날포스	Quinalphos	13593-03-8	400	6,000
353	1-메틸프로필아민	1-Methylpropylamine	13952-84-6	400	6,000
354	칼탑하이드로클로라이드	Cartap hydrochloride	15263-52-2	400	6,000
355	메토밀	Methomyl	16752-77-5	400	6,000
356	디메톤-S-메틸술폰	Demeton-S-methylsulfone	17040-19-6	400	6,000
357	에디펜포스	Edifenphos	17109-49-8	400	6,000
358	이속사티온	Isoxathion	18854-01-8	400	6,000
359	디보란	Diborane	19287-45-7	5	75
360*	사산화 오스뮴	Osmium tetroxide	20816-12-0	400	6,000
361	인화 알루미늄	Aluminum phosphide	20859-73-8	200	3,000
362	포스티에탄	Fosthiethan	21548-32-3	200	3,000
363	렙토포스	Leptophos	21609-90-5	400	6,000
364	클로르티오포스	Chlorthiophos	21923-23-9	400	6,000
365	페나미포스	Fenamiphos	22224-92-6	400	6,000
366	피리미캅	Pirimicarb	23103-98-2	400	6,000
367	옥사밀	Oxamyl	23135-22-0	400	6,000
368	피리미포스-에틸	Pirimiphos-ethyl	23505-41-1	400	6,000
369	헵테노포스	Heptenophos	23560-59-0	400	6,000

No.	화학물질명(국문)	화학물질명(영문)	CAS_NO	소량기준	
				일일 취급기준 (kg)	보관·저장 기준(kg)
370	트리아조포스	Triazophos	24017-47-8	400	6,000
371	클로르메포스	Chlormephos	24934-91-6	200	3,000
372	p-노닐페놀류	p-Nonylphenols	25154-52-3	400	6,000
373	이소펜 포스	Isofenphos	25311-71-1	400	6,000
374	실버(I) 헥사플루오로포스페이트	Silver(I) hexafluorophosphate	26042-63-7	400	6,000
375	이프로벤포스	Iprobenfos	26087-47-8	400	6,000
376	톨루엔 1,3-디이소시아네이트	Toluene 1,3-diisocyanate	26471-62-5	400	6,000
377*	아지드화 나트륨	Sodium azide	26628-22-8	400	6,000
378*	브로마디올론	Bromadiolone	28772-56-7	400	6,000
379	벤족시메이트	Benzoximate	29104-30-1	400	6,000
380	에티오펜캅	Ethiofencarb	29973-13-5	400	6,000
381	프로페탐포스	Propetamphos	31218-83-4	400	6,000
382	브토카르복심	Butocarboxim	34681-10-2	400	6,000
383	술프로포스	Sulprofos	35400-43-2	400	6,000
384	이소티오에이트	Isothioate	36614-38-7	400	6,000
385*	티오파녹스	Thiofanox	39196-18-4	400	6,000
386	디노캅	Dinocap	39300-45-3	400	6,000
387	프로페노포스	Profenofos	41198-08-7	400	6,000
388	이사조포스	Isazofos	42509-80-8	200	3,000
389	펜발러레이트	Fenvalerate	51630-58-1	400	6,000
390	퍼메트린	Permethrin	52645-53-1	400	6,000
391	카보술판	Carbosulfan	55285-14-8	400	6,000
392	푸라티오캅	Furathiocarb	65907-30-4	400	6,000
393	에스펜발러레이트	Esfenvalerate	66230-04-4	400	6,000
394	싸이할로쓰린	Cyhalothrin	68085-85-8	200	3,000
395	플루발린에이트	Fluvalinate	69409-94-5	400	6,000
396	싸이프로푸람	Cyprofuram	69581-33-5	400	6,000
397	플루싸이트린에이트	Flucythrinate	70124-77-5	400	6,000
398	벤프라캅	Benfuracarb	82560-54-1	400	6,000
399	p-n-노닐페놀류	p-n-Nonylphenols	84852-15-3	400	6,000
400	피라클로포스	Pyraclofos	89784-60-1	400	6,000
401	카두사포스	Cadusafos	95465-99-9	200	3,000
402	테부피림포스	Tebupirimfos	96182-53-5	200	3,000

No.	화학물질명(국문)	화학물질명(영문)	CAS_NO	소량기준	
				일일 취급기준 (kg)	보관·저장 기준(kg)
403	피리다벤	Pyridaben	96489-71-3	400	6,000
404	포스티아제이트	Fosthiazate	98886-44-3	400	6,000
405	할펜프록스	Halfenprox	111872-58-3	400	6,000
406	피프로닐	Fipronil	120068-37-3	400	6,000
408	싸이프로디닐	Cyprodinil	121552-61-2	400	6,000
409	1,3-디히드로-1,3-디옥소-2H-이소인돌-2-헥산퍼옥소산	1,3-Dihydro-1,3-dioxo-2H-isoindole-2-hexaneperoxoic acid	128275-31-0	400	6,000

* 수용액 상태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소량기준을 1/2로 한다.

비고

1. 일일취급량이란 해당 제조·사용 설비 또는 시설 및 그 취급시설에 연결된 배관 등에서 하루동안 최대로 취급, 사용, 제조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2. 보관·저장량이란 보관·저장 설비 또는 시설에서 최대로 보관·저장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다만, 배관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정으로 간주한다.
3. 일일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을 산정할 경우에는 규제대상 함량(농도)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모두 포함한다.
4. 해당 제조·사용 설비 또는 시설 및 그 취급시설에 연결된 배관 등에서 두 종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사용,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각각의 1일취급량을 구한 다음, 아래 공식에 따라 산출한 값이 1미만인 경우에는 소량기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R = \frac{C_1}{T_1} + \frac{C_2}{T_2} + \cdots + \frac{Cn}{Tn}$$

주) Cn : 유해화학물질 각각의 일일 취급량
Tn : 유해화학물질 각각의 일일 취급기준

□ 유해화학물질별 소량 산정방법

○ 앞의 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의 소량기준은 유해성 분류기준에 따라 아래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산정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가. 유해성 분류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해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화학물질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나. 유해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 건강 및 환경유해성 분류기준을 확인하여 가로축과 세로축이 만나는 지점의 수치를 일일 취급기준으로 한다. 보관·저장기준은 일일 취급기준량에 15를 곱한 수치로 산정한다. 이때 2가지 이상의 분류기준을 가진 경우에는 가장 작은 수량을 적용한다.

<단위 : Kg>

구 분		급성독성[1]				기타 건강유해성 및 환경유해성	비고
		구분1	구분2	구분3	구분4		
폭발성물질	구분1~구분2	200	200	200	200	200	
	구분3이상	400	400	400	400	400	
인화성가스	구분1	5	50	100	200	200	
	구분2	50	100	200	400	400	
인화성액체	구분1	5	50	100	200	200	
	구분2	50	200	400	400	400	
	구분3	200	200	400	400	400	
인화성 에어로졸	구분1	5	50	100	200	200	
	구분2	50	200	400	400	400	
인화성고체	구분1	200	400	400	400	400	
	구분2	400	400	400	400	400	
산화성가스	구분1	5	50	100	200	200	
산화성액체	구분1	50	200	400	400	400	
	구분2이하	200	400	400	400	400	
산화성고체	구분1	200	400	400	400	400	
	구분2이하	400	400	400	400	400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colspan="4">급성독성[1]</th><th rowspan="2">기타 건강유해성 및 환경유해성</th><th rowspan="2">비고</th></tr>
<tr><th>구분1</th><th>구분2</th><th>구분3</th><th>구분4</th></tr>
<tr><td>고압가스</td><td>압축·액화·냉장 액화·용해</td><td>5</td><td>50</td><td>100</td><td>200</td><td>200</td><td></td></tr>
<tr><td>자기반응성</td><td>구분1~구분7</td><td rowspan="5">50</td><td rowspan="5">200</td><td rowspan="5">400</td><td rowspan="5">400</td><td rowspan="5">400</td><td rowspan="5"></td></tr>
<tr><td>자연발화성 액체</td><td>구분1</td></tr>
<tr><td>자연발화성 고체</td><td>구분1</td></tr>
<tr><td>자기발열성 물질</td><td>구분1~구분2</td></tr>
<tr><td>물반응성</td><td>구분1~구분3</td></tr>
<tr><td rowspan="2">유기과산화물</td><td>구분1~구분2</td><td>200</td><td>200</td><td>200</td><td>200</td><td>200</td><td></td></tr>
<tr><td>구분3 이상</td><td>400</td><td>400</td><td>400</td><td>400</td><td>400</td><td></td></tr>
<tr><td colspan="2">금속부식성 물질</td><td>50</td><td>200</td><td>400</td><td>400</td><td>400</td><td></td></tr>
<tr><td colspan="2">물리적 위험성 구분없음
(기체/액체/고체)[2]</td><td>5/200/400</td><td>50/400/400</td><td>100/400/400</td><td>200/400/400</td><td>200/400/400</td><td></td></tr>
</table>

비고

1. 급성 독성은 경구, 경피, 흡입노출 분류기준을 사용하며, 값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독성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2. 물리적 위험성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20℃, 1기압에서의 물질의 상태와 급성독성 구분에 따라 기준량을 선정한다.

6 취급시설 배치·설치·관리 기준 및 공동활용

○ 개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유형별로 취급시설의 배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운영되도록 하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취급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검사기관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검사기관에 주기적으로 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함
- 같은 부지나 건축물에 있어 사용공간이 같은 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 아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공동으로 활용 할 수 있게 함

○ 제도에 대한 이해

- 환경부에 집계된 화학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미흡으로 인한 화학사고가 증가('12년 3건 → '13년 31건)하여 안전성확보를 위해서는 강화된 취급시설 기준이 요구됨. 또한, 정기적인 검사・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맡겨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검사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형식적인 점검을 막고 환경오염, 화재・폭발, 누출사고 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설치・정기・수시 검사 및 안전진단을 운영할 수 있음
- 부지나 건축물을 공유하는 영업장의 경우 취급시설관리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업무가 중복되므로, 투자의 중복을 막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승인을 받고 공동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함

○ 업무 흐름도

취급시설 개선명령 [유역(지방)환경청] ⇒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사업장) ⇒ 계획서 수정·변경요구 (필요시) [유역(지방)환경청] ⇒ 계획서 이행 (대상사업장) ⇒ 이행기간 연장요청(필요시) (대상사업장) ⇒ 이행결과보고서 제출 (대상사업장) ⇓ 이행상태 확인 [유역(지방)환경청]

가동중지 명령 [유역(지방)환경청] ⇒ 가동중지 (대상사업장)

공동 활용 승인요청 (신청인) ⇒ 현지확인(필요시) [유역(지방)환경청] ⇒ 결과 통보 [유역(지방)환경청]

○ 법령 내용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제21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그 외벽부터「건축법」 제2조제2호의 건축물의 경계 또는「자연환경보전법」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균열·부식(腐蝕)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후 취급		제2조제12호의 생태·경관보호지역의 경계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2조(검사기관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와 안전진단에 관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기관 ②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및 안전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기준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받은 검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와 안전진단에 대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수시 검사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별지 제34호서식의 검사결과신고서에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을 말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⑥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은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결과신고서에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과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안전진단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 법 제24조제4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9조제4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취급시설의 위험도에 대한 검토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매 4년으로 한다. 1.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제19조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4년 2. 중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제19조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8년 3. 저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제19조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12년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신고서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진단의 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취급시설 개선명령서에 개선사항 상세내역을 첨부하고 이행기간을 적어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간은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 시급성 및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12개월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9호서식의 이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취급시설의 개선명세서 2. 이행계획 및 공사비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3. 이행기간 동안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이행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등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서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수정·변경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 10일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그 이행계획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0호서식의 이행결과보고서에 개선명령 이행결과 상세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명령의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취급시설 가동중지 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명령서를 받은 자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시설의 가동을 중지하여야 하고 가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해당 시설을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① 같은 부지나 건축물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별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①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공동 활용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활용계획서 2. 개별업소의 명세 및 위치도 3.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설 및 장비의 내역서 4. 개별업소 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 등의 협약서 5.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 명세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방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법은 별표 8과 같다. **제43조(공동 활용의 변경신고)**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업소 및 공동 활용 업소 2. 공동 활용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용량(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공동 활용하는 업무대행자의 대행 범위 4.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 등의 협약서 중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의 공동대처방안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공동 활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동 활용자의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 관련고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4-251호, '14.12.31)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14-2호, '14.12.31)
- **배관 등의 구조 및 두께 등에 관한 세부기준**(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14-3호, '14.12.31)
- **개스킷 선정·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지침**(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14-4호, '14.12.31)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감독 기관 :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결과 신고서류**

- 검사결과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첨부서류: 취급시설 검사결과서(검사기관 발행) 1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결과 신고서류**

- 결과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
- 첨부서류: 취급시설 검사결과서(검사기관 발행) 1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결과 신고서류

- 안전진단결과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
- 첨부서류: 취급시설 안전진단결과보고서(검사기관 발행) 1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명령 이행계획서 제출서류

- 이행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 첨부서류

(ⅰ) 취급시설의 개선명세서 1부 (ⅱ) 이행계획 및 공사비 1부 (ⅲ) 이행기간 동안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3조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시행규칙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존시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별표4 및 별표8을 준수해야 하며, 즉 검사 및 안전진단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나, 그 기준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기준, 유독물 관리기준, 검사·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함

  * 2014년12월31일 이전에 시설이 설치된 증빙자료(착공계 등)를 제출하는 경우 기존시설로 간주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 공동활용 관리·감독 기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 승인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57호 서식

- 첨부서류

(ⅰ) 공동활용계획서 (ⅱ) 개별업소의 명세 및 위치도 (ⅲ)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설 및 장비의 내역서 (ⅳ) 개별업소 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 등의 협약서 (ⅴ)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 명세서

- 변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

- 변경신고 대상

(ⅰ) 대표업소 및 공동활용업소 (ⅱ) 공동활용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용량(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ⅲ) 공동활용하는 업무대행자의 대행범위 (ⅳ)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 등의 협약서 중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의 공동대처방안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유해화학물질의 화재・폭발, 유출・누출사고에 따른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

-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른 소량을 초과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에 적용
- 물질별, 보호대상별 안전거리는 환경부고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또는 (첨부) 참조

벌 칙

❍ 벌칙 및 과태료

-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검사·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제8호)
-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제7호)
- 법 제25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가동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제9호)
- 공동활용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법 제38조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1차 위반 : 600만원, 2차 위반 : 800만원, 3차 이상 위반 :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법 제64조제1항제10호, 시행령 별표 1)

○ 행정처분

- 안전진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수시검사를 검사기관에 받은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균열·부식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결과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함(법 제24조제4항제1호)

- 개선명령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 시급성,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12개월의 범위내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개선사항, 이행기간 등을 명시한 취급시설 개선명령서(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를 발부(법 제25조제1항)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맞지 아니한 경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제3항에 따른 정기·수시검사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가동중지 명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명한 개선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음(법 제25조제2항)

- 영업정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카. 법 제25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1호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개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실내·지하 저장 및 보관 시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 일반적으로 지하에 설치된 피트 등을 이용하여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용기 등을 매립하는 경우는 지하 보관 및 저장 시설로 볼 수 있고, 건축물을 제조하여 지상 저장시설과 유사한 형태로 저장탱크를 저장 및 보관하는 경우는 실내 보관 및 저장 시설로 볼 수 있음

첨부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 인화성가스 및 인화성액체 저장시설

구분	저장시설	갑종 보호대상	을종 보호대상
인화성가스[1]	1만㎥ 이하	17m	12m
	1만㎥ 초과~2만㎥ 이하	21m	14m
	2만㎥ 초과~3만㎥ 이하	24m	16m
	3만㎥ 초과~4만㎥ 이하	27m	18m
	4만㎥ 초과~5만㎥ 이하	30m	20m
	5만㎥ 초과~99만㎥ 이하	30m 〔저온저장탱크는 $3/25\sqrt{(X^2+10,000)}$〕	20m 〔저온저장탱크는 $2/25\sqrt{(X+10,000)}$〕
	99만㎥ 초과	30m (인화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120m)	20m 〔인화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0m〕
인화성액체[3]	-	30m	10m

비고

1. 인화성가스란 섭씨 20도, 표준압력(101.3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범위에 있는 가스로써 규칙 별표 3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에서 인화성가스 구분1, 구분2로 분류된 것에 한정한다.
2. X는 해당 취급시설의 최대 취급량을 말하며,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으로 한다.
3. 인화성 액체란 인화점이 60℃ 이하인 액체를 말하며, 규칙 별표 3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에서 인화성액체 구분1, 구분2, 구분3으로 분류된 것에 한정한다.

□ 급성 흡입 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설비

구분	저장능력	갑종 보호대상	을종 보호대상
가스[2]	1만㎥ 이하	17m	12m
	1만㎥ 초과~2만㎥ 이하	21m	14m
	2만㎥ 초과~3만㎥ 이하	24m	16m
	3만㎥ 초과~4만㎥ 이하	27m	18m
	4만㎥ 초과	30m	20m
휘발성 액체[3]	-	17m	12m

비고

1. 급성 흡입 독성 물질이란 흡입 노출되어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규칙 별표 3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에서 구분 1, 구분2, 구분3으로 분류된 것에 한한다.
2. 가스란 끓는점이 20℃이하인 물질을 말한다.
3. 휘발성 액체란 20℃에서 증기압이 26.7kPa 이상인 물질을 말한다.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을 동시에 가진 경우에는 물리적 위험성을 우선 적용한다.

□ 갑종 보호대상

구 분	보호대상의 종류
문화·집회시설	영화상영관, 공연장, 예식장·장례식장,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관람장, 동·식물원, 운동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00명이상 수용할 수 있거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종교시설	교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종교시설로서 300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판매시설	도매시장(「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백화점, 쇼핑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간으로 300명이상 수용할 수 있거나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공항터미널, 항만터미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간으로 일일 300명이상이 이용하는 시설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과 의원을 포함한다.)

교육·연구시설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도서관, 연구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노유자 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0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숙박시설	관광호텔, 여관, 휴양시설, 공중목욕탕, 고시원, 기숙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300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주택 등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서 300명이상 수용할 수 있거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을종 보호대상

구 분		보호대상의 종류
건축물	주택·업무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300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기타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서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백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생태·경관보호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경관보호지역

7 취급시설 검사(설치·정기·수시) 및 안전진단

❍ 개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후 검사기관에서 시설가동 전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운영할 경우 영업허가 대상은 매 1년마다, 영업허가 비대상은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수시검사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후 7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며, 또한 화학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명한 경우는 지체 없이 검사를 받아야 함
- 안전진단은 설치・정기・수시검사 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검사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하고, 장외영향평가 결과 위험도 등급에 따라 고 위험도는 4년, 중 위험도는 8년, 저 위험도는 12년마다 안전진단을 받아야함. 단, 위험도 검토 결과가 없는 경우는 4년마다 받아야 함
-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는 1년간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음

❍ 제도에 대한 이해

-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독물을 대량(연간 5,000천톤 이상 제조・사용, 200톤 이상 보관・저장)으로 취급하는 시설만 정기검사(정기・수시 검사)를 받고, 안전진단의 경우에도 시・도지사의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실시하였음

-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정기·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진단의 경우에도 검사결과 위해가 우려될 경우 및 장외영향평가 위험도 판정등급에 따라 주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는 것으로 강화함

○ 업무 흐름도

취급시설 설치 (신청인)	⇒	설치검사 신청 (신청인)	⇒	설치검사 및 결과서 발급 (검사기관)	⇒	검사결과서 제출 (신청인)	⇒	검토 및 결재 [유역(지방)환경청]	⇒	취급시설 설치·운영 (신청인)

정기·수시검사 신청 (신청인)	⇒	정기·수기 검사 및 결과서 발급 (검사기관)	⇒	검사결과서 제출 (신청인)	⇒	검토 및 신고증 발급 [유역(지방)환경청]

안전진단 신청 (신청인)	⇒	안전진단 및 진단 결과서 발급 (검사기관)	⇒	진단결과서 제출 (신청인)	⇒	검토 및 결재 [유역(지방)환경청]

* 단, 검사·안전진단 결과 부적합한 시설은 개선명령을 받거나 취급시설 가동중지 명령을 받음

○ 법령 내용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제21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그 외벽부터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건축물의 경계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균열·부식(腐蝕)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조제12호의 생태·경관보호지역의 경계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2조(검사기관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와 안전진단에 관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기관 ②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및 안전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관련 자료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후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기준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와 안전진단에 대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수시 검사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별지 제34호서식의 검사결과신고서에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을 말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발생한 경우에는 그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⑥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은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결과신고서에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과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안전진단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4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9조제4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취급시설의 위험도에 대한 검토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매 4년으로 한다. 1.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제19조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4년 2. 중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제19조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8년 3. 저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제19조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12년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신고서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진단의 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부적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취급시설 개선명령서에 개선사항 상세내역을 첨부하고 이행기간을 적어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간은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 시급성 및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12개월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9호서식의 이행계획서에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취급시설의 개선명세서 2. 이행계획 및 공사비 3. 이행기간 동안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이행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등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서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수정·변경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 10일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그 이행계획을 모두 이행한 경우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0호서식의 이행결과 보고서에 개선명령 이행결과 상세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명령의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취급시설 가동중지 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명령서를 받은 자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시설의 가동을 중지하여야 하고 가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해당 시설을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해설

○ 관련고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4-258호, '14.12.31)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4-242호, '14.12.31)

○ 검사·진단 단위의 구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단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방식에 따라 제조·사용시설, 실내저장·보관시설, 실외저장·보관시설, 지하저장·보관시설, 지상저장·보관시설, 차량 운반시설, 배관이송시설(장외배관)로 구분함

- 다만,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조·사용시설 중 안전구역으로 구획된 하나의 설비군은 하나의 제조·사용시설 단위로 볼 수 있으며, 검사기관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 범위를 축소·확대 할 수 있음. 이 경우 검사 및 진단의 신청과 처리는 검사단위별로 하여야 함

○ 변경시설의 검사대상

-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설치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대상의 범위는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제1호 가, 나, 다, 라목에 따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사항이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하는 경우 변경된 부분은 해당시설의 설치검사표에 따라 검사를 수행함. 이 경우 변경내역은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함

○ 검사의 신청방법

- 설치·정기·수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 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지1호 서식의 검사신청서에 사전서면검사자료(시설의 설치계획서, 시설에 관한 도면, 시설 설계 시에 적용한 기준의 근거 및 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설치 후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이 검사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체검사성적서 및 사진 등)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고, 안전진단은 동 규정 별지 제17호 서식의 안전진단 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검사 및 진단 신청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지정고시 한 자 중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선택하여 신청함

○ **검사항목 및 방법**

- 검사항목은 시행규칙 별표5에 규정된 사항으로 하며, 검사내용 및 방법은 환경부고시「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벌 칙

○ **벌칙**

-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검사·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제8호)

-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제7호)

- 법 제25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가동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제9호)

○ 행정처분

- 개선명령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 시급성,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12개월의 범위내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개선사항, 이행기간 등을 명시한 취급시설 개선명령서(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를 발부(법 제25조제1항)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맞지 아니한 경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제3항에 따른 정기·수시검사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가동중지 명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명한 개선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음(법 제25조제2항)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자.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9호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개월	
차.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0호				
1)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6개월		

FAQ

❍ 정기・수시검사의 항목은 어떻게 구성되나?

⇒ 정기·수시검사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함. 단, 2015년 이전에 설치된 기존시설의 경우는 유해법의 취급시설 기준 및 관리기준 등 유해법의 위반사항에 한해 부적합으로 처리하고, 신규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의 위반사항은 유예기간(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시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권고사항으로 처리함

○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검사 체계와 달라진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 설계도면, 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사전 서면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지정된 날짜에 현장 확인검사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게 되며, 세부사항은 검사기관에 문의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 ·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지13호의 지하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은 무엇인지?**

⇒ 규정 별지13호의 지하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는 지하에 매설된 취급시설이 그 기준이 되며, 지하실에 설치된 취급시설은 실내 저장·보관시설 및 설비를 기준으로 검사·진단을 수행함

○ **유해화학물질 적재·하역 장소의 트렌치 용량이 탱크로리 등 운반차량의 용량보다 적게 설치되는 경우 트렌치 적정용량의 산정기준은?**

⇒ 운반차량의 유출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최초 유출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 및 초기·응급대응 등에 따라 사업장 자체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른 유출시간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용량을 고려하여 설치. 단,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른 훈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등 현장 적용이 가능토록 운영되어야 인정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필요한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적정수량의 판정기준은?**

⇒ 사업장의 예상 방문자수,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취급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장에서 마련한 비상사태 매뉴얼, 사업계획서 등에 명시된 방문인원에 따라 개인보호장구 적정수량의 적합성과 실제 현장비치 여부로 판단함

8 취급시설 자체점검

○ 개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 포함)는 주 1회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설비 및 장비를 자체적으로 정기점검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여야 함

- 점검 시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항목에 대해 안전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주요 점검항목은 아래와 같음

• 유해화학물질 관련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여부 • 용기의 밀폐 상태로의 보관여부 • 보관용기의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발생여부 • 운반장비의 부식·손상, 노후화 여부 • 기타 취급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 여부 등이 해당됨

○ 제도에 대한 이해

-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유독물 관련 시설·설비 및 장비에 대한 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손상된 경우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었음

-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에 대해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관하게 하였으며, 점검항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취급시설 설치・운영자의 관리를 강화함

○ 업무 흐름도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사업장)	⇒	주 1회 이상 자체점검 실시 (사업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사업장)	⇒	조치완료 사항 및 재점검 내용 기록 (사업장)	⇒	5년간 점검기록 보관 (사업장)

○ 법령 내용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주 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 여부 2.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3. 액체·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4.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5.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장비의 부식·손상·노후화 여부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점검)**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점검대장에 기록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물 반응성 물질이나 인화성 고체의 물 접촉으로 인한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공기 중에 존재하여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이 취급시설 및 장비 주변에 존재함에 따라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4. 누출감지장치, 안전밸브, 경보기 및 온도·압력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가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 6.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설비의 부식·손상·균열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이 있는 지 여부

○ 자체점검 항목(시행규칙 별지 제42호)

-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여부
  : 연결부 및 개스킷 설비부분 누출여부 확인, 부식 또는 결함상태 확인, 유출·누출 여부확인 등
- 고체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저장중인 고체의 종류 확인, 용기의 이상 유무확인, 용기의 밀폐여부 확인 등
- 액체·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저장중인 물질의 상태확인, 용기의 이상 유무 확인, 용기의 완전밀폐 여부 확인 등
-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 장비의 부식·손상·노후화 여부
- 물 반응성 물질, 인화성 고체의 물 접촉으로 인한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저장·보관설비에 방수성 불연재료 피복상태 확인, 방폭설비 설치 및 관리상태 확인 등
-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가 공기 중에 존재하여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가스검지 경보장치 정상작동여부, 통풍·환기 및 분진제거조치 상태 확인 등
-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이 취급시설 및 장비주변에 있어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건축물의 불연재료 상태확인, 자연발화성 물질을 쌓아두었는지 여부 등

- 누출감지장치, 안전밸브, 경보기, 온도·압력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 누출감지장치 작동상태 확인, 그 밖의 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 등

-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설비의 부식·손상·균열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 여부
  : 긴급차단장치 관리상태, 가스검지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안전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여부 등

-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개인 보호장구가 원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

벌 칙

❍ 벌칙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9조제10호)

❍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타.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2호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직무범위 중 제6호 "법 제2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자체점검에 필요한 조치"와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반드시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는지?**

⇒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취급시설 자체점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직접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또는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선정하여 주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 후 확인 및 기록, 비치(5년) 등의 책무를 이행할 수 있음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은 저장시설별로 작성을 하여 보관하는 팀에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취급물질이 다른 저장시설이(3개일 경우)있을 경우 저장시설별로 자체점검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취급물질이 다른 저장시설(3개일 경우)일지라도 한 장의 점검대장을 작성하면 되나요?**

⇒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주 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여야 함. 이에 따른 점검 결과는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지 제42호 서식의 '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각 취급시설별로 '자체점검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 **시행규칙 제26조와 관련하여 자체점검대장(별지 제42호 서식)이 규정되어 있는데, 자체점검대장 양식을 별지 제42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점검항목 10개 및 이상 유무 3개 항목의 의미가 유사하다면, 양식을 변경하여도 되는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는 별지 제42호 서식의 점검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 서식을 준수하여야 함

3. 영업 관리

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면제

○ 개요

- 허가물질과 금지물질을 제외한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제조업), 상업적으로 판매(판매업), 제조·사용·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보관·저장업), 항공기·선박·철도의 이용을 제외한 운반(운반업) 및 제품 제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사용(사용업)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제도에 대한 이해

- 개정법 이전에는 유독물 영업을 하려는 경우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하고,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을 하려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독물질(유독물), 제한물질(취급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 영업을 하려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업무 흐름도

신청서 (신청인)	⇒	접수 [유역(지방)환경청]	⇒	확인 [유역(지방)환경청]	⇒	허가증(신고증) 발급 [유역(지방)환경청]	⇒	허가증(신고증) 사본 소방서장 송부 [유역(지방)환경청]

○ 법령 내용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3.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①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제23조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제24조제5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3.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제41조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과 제2항에 따른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4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은 자료를 말한다) 4. 유해화학물질 장비·기술인력 명세서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그 사본(법 제27조제4호의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다.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나 변경신고의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변경신고가 있으면 그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후견등기부 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④ 법 제28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⑤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4 제2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항목 중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정위험성 분석자료와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유출·누출 시나리오가 변경된 경우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8조(허가증의 발급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정정(訂正)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허가증의 훼손 또는 분실 등으로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허가증과 정정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증에 적힌 사항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업종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 다.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라.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 변경,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변경 등의 사유로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마.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변경신고 대상: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및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변경허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지 제45서식의 변경허가증 또는 별지 제47호 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정보제공)**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법 제2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증 사본 또는 신고증 사본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를 1월 3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관할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2.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법 제29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다만, 사업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자 3. 항만, 역구내(驛區內)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60톤 이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240톤 이하로 한다. 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하의 제한물질(제한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4. 사고대비물질(유독물질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을 사용하는 자 중 장외영향평가서(제19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대상이 아닌 자.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이 아닌 자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6.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취소된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경우에 한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5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3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		**제4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 허가·등록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을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하여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2. 권리·의무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후견등기부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조문해설

○ **관련고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4-261호, '14.12.31)

○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 단,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을 지점 등을 통해 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은 별도의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함

  * 유해화학물질을 원료로 하여 유해화학물질인 제품생산 → 제조업 허가 대상
    유해화학물질을 원료로 하여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제품생산 → 사용업 허가 대상

* 유해화학물질을 희석하거나(고체를 액체로 만드는 행위 포함), 농축하여 판매하는 행위 → 제조업 허가 대상
  유해화학물질을 소분하거나, 단순히 용기만 교환하여 판매하는 행위 → 판매업 허가 대상

-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대량거래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시제품(샘플)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행위는 판매행위에 해당

-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기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 제조업: 유해화학물질 제조시설 소재지

-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 시설 소재지(별도의 저장·보관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주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판매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 시설 소재지

-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차고지 또는 차량 등록지

-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사용시설 소재지

* 하나의 사업자가 2 이상의 유역청 관할 구역에서 허가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허가를 득하여야 함

- 예1) 서울에 본사가 있으며 대전, 전주, 부산 등에 지점을 두고 판매업을 하는 경우: 본사를 비롯한 각 판매 지점은 각 지역별 관할기관(금강청, 새만금청, 낙동강청)에서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함
- 예2) 서울에서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제1공장과 제2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제1공장과 제2공장 각각에 대한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함.

< 참고 >

ㅇ 환경청 별 관할구역

기관명	위 치	관 할 구 역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하남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낙동강유역환경청	경상남도 창원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하동군 및 남해군은 제외)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 제외),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경상남도 하동군.남해군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괴산군・ 음성군・단양군
대구지방환경청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새만금지방환경청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 영업 면제 대상

-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 항만, 역구내(驛區內)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다만, 사업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60톤 이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240톤 이하로 한다.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하의 제한물질(제한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 사고대비물질(유독물질이 아닌 것에 한정 한다)을 사용하는 자 중 장외영향평가서(제19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대상이 아닌 자.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이 아닌 자

-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 환경부장관 고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별표2 06-5-8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어린이용제품(장난감, 학용품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용도로 제조, 사용, 판매, 보관·저장, 운반 등을 하려는 자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특례**

- 제조업자: 직접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 별도의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판매업자: 판매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운반 → 별도의 보관・저장업, 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사용업자: 자가 사용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운반 → 별도의 보관・저장업, 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참고 >

○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대상 판단기준

-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타인의 유해화학물질을 유상으로 운반하는 영업으로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영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득하여야 함

예1) 제조업, 판매업자가 자기가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거나, 사용업자가 자기가 사용할 유해화학물질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경우: 허가대상 아님

예2) 제조업, 판매업 또는 사용업자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자기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면서 타인의 유해화학물질도 같이 운반하는 경우: 별도의 운반업 허가 대상

예3) 제조업, 판매업, 사용업자가 자기 유해화학물질의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예4)의 사례를 제외하고 반드시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영업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

예4)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자 중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타인의 유해화학물질을 1회에 1톤 이하로 운반하는 경우: 허가면제

- 보관저장업자의 운반 행위: 보관저장업자는 타인의 물품을 보관저장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자기의 차량을 이용하여 타인의 유해화학물질을 운송할 수 없음. 다만, 보관저장업자가 ① 운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② 운반비용을 별도로 받지 아니한다면, 자기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행위가 일부 가능함(국토교통부 유권해석)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서류

- 허가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 첨부서류

(ⅰ)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1부
(ⅱ) 적합판정을 받은 취급시설 검사결과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1부
(ⅲ)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1부

(ⅳ)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및 물질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1부
(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기재) 1부
(ⅵ) 유해화학물질 장비·기술인력 명세서 1부
(ⅶ)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또는 그 사본(유해화학물질 운반업만 첨부) 1부
(ⅷ)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다.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 권리·의무 승계

- 신청자: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

- 권리·의무 승계의 기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을 인수한 자

* 취급시설 인수자와 토지의 소유권자가 분리된 경우 취급시설 인수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영업자 승계 가능

벌 칙

○ 벌칙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58조제4호)

○ 행정처분

- **영업의 취소**(제35조제1항)

  • 다른 법령에 따라 영업과 관계되는 인가·허가 등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 영업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ⅱ)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ⅲ)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ⅳ) 영업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ⅴ) 임원 중에 ⅰ), ⅱ), ⅲ)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법인이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

  •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업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제35조제2항)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호	영업정지 15일	허가취소		

파. 법 제27조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3호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하.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4호	허가취소			

FAQ

○ 저희 공장의 유독물 사용업 등록증이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로 전환이 됩니까?

⇒ 화관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으신 경우 화관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화관법에서 기존 등록증의 허가증으로의 갱신과 같은 행정적인 절차를 특별히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 2015년도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추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업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합니까?

⇒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허가받은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의 변경, 허가받은 물질의 예정물량 변경, 보관·저장시설의 총용량 변경, 용도 변경, 사업장 소재지 변경, 장외영향 정보 변경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 **화관법 상 영업허가 면제대상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전용공업구역인 경우 유독물질 사용량이 240톤 이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용량이라 함은 전년도 사용량입니까 아니면 그해 예상 사용량입니까?**

⇒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240톤 이하의 유독물질(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허가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유독물질의 사용량은 전년도 사용량을 바탕으로 집계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급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및 물질별 연간 취급예정량(2015.1.1.~12.31)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원피를 가공하여 가죽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생산과정에서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유독물 사용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5년 화관법에서도 당사가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상 시 화관법 상 사용업 허가증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화관법 제27조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은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및 사용업으로 구분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은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귀사와 같이 원피를 가공하여 가죽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할 경우 '사용업'에 해당됩니다.
또한, 화관법 부칙 제5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전 종전의「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며 기존 등록증의 허가증으로의 갱신과 같은 행정적인 절차를 특별히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 저희 사업장은 불산이 저장량 1,000kg을 초과하여 사고대비물질별 지정수량을 초과하여 내년 화관법에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 유역청에 언제까지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 귀 사의 경우 화관법 부칙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영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1~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이내에 화관법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A사는 유독물 사용량 120톤 이하로 화관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인허가 면제 대상인데, '15년도에 A사가 기존에 사용하던 유독물 취급시설(10, 20톤 탱크)을 화관법 시행규칙 41조(권리, 의무의 승계)에 따라 B사에 양도할 경우 인허가 대상입니까? 인허가 면제 대상입니까?

⇒ 법 제37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만약 A사가 '15년도에 B사에게 유독물 취급시설 중 일부를 양도하여 시행규칙 제31조 제2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A사가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A사는 영업허가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A사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독물 취급시설을 양도받은 B사도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유독물인 사고대비물질이 화학물질관리법상 영업허가 대상일 경우에는 B사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 법령 내용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제23조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제24조제5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3.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제41조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①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은 자료를 말한다) 4. 유해화학물질 장비·기술인력 명세서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그 사본(법 제27조제4호의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과 제2항에 따른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나 변경신고의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변경신고가 있으면 그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하고「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다.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후견등기부 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④ 법 제28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⑤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항목 중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정 위험성 분석자료와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유출·누출 시나리오가 변경된 경우 **제28조(허가증의 발급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정정(訂正)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허가증의 훼손 또는 분실 등으로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허가증과 정정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 증에 적힌 사항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업종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 다.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 라.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 변경,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변경 등의 사유로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마.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변경신고 대상: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및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변경허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5서식의 변경허가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정보제공)**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법 제2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증 사본 또는 신고증 사본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를 1월 3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관할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조문해설

❍ 변경허가 대상

- 업종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

*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취급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의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의 총 용량

* 100분의 50 이상 증가: 최종허가 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가

- 예) 총 보관저장 용량이 300톤인 경우 450톤 이상이 되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
  단, 100분의 50미만 증가라도 장외영향평가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

-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

  * 전년도 제조량 또는 사용량에 대비하여 금년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100분의 50이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이전에 변경허가 신청

• 예) 전년도 취급량(허가받은 양)이 100톤이고, 금년도 6월까지 취급량이 100톤이고 연간 200톤의 취급이 예상되는 경우, 100분의 50이상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는 9월 이전에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함

-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변경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의 변경을 의미하며, 동일 품목의 함량 변화는 품목변경으로 보지 않음

• 예) 가성소다 70% → 가성소다 45%의 경우 변경이 아님

  • 함량의 변화로 유해화학물질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임

• 예) 니트로벤젠, 메틸에틸케톤, 에틸아세테이트는 유기용제로 85%이상 일 경우 유독물질에 해당하며, 각각 함량이 25%이상인 경우 사고대비물질임. 함량이 25%인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사고대비물질 영업에 해당되나 함량이 85% 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사고대비물질 영업과 동시에 유독물질 영업에 해당하므로 변경허가 대상임

-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동일 사업장 내의 증설, 사업장 부지 경계로의 시설 위치 변경, 유해화학물질 변경 등의 사유로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참고 >

○ 사례별 변경허가 대상

예1) 기존시설을 활용(장외영향평가 정보 변경 없음)하여 보관저장 시설의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

예2) 신규시설을 설치하여 보관저장 시설의 100분의 50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장외영향평가 정보 변경)

예3) 기존 취급시설을 그대로 활용하여 연간 취급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가: 변경허가 대상

예4) 신규시설을 설치하여 연간 취급량의 100분의 50미만 증가: 변경허가 대상(장외영향평가 정보 변경)

예5) 사업장 부지 경계로의 시설 위치를 변경하여 보관저장 시설을 100분의 50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장외영향평가 정보 변경)

예6) 기존 시설 위치 범위 내에서 보관저장 시설을 100분의 50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장외영향평가 정보 변경)

예7) 동일 위치에 동일 규모로 시설 재설치: 변경허가 대상 아님

예8) 연간취급량 또는 보관저장시설 변경 없이 사업장 부지경계로의 생산·이송 시설 위치 변경: 변경허가 대상

※ 경계로의 이동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작성한 지침 참조

❍ 변경신고 대상

-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 사업장의 합병, 인수 등으로 명칭이 변경된 경우 권리·의무 승계서와 변경신고서 동시 제출
  -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은 취급시설 변경이 없이 단순 사무실 변경의 경우만 해당

3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신고

❍ 개요

-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을 영업(제조업, 사용업, 보관·저장업, 판매업, 운반업)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또는 사용)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수급인(하수급을 포함)의 명칭, 도급의 사유, 도급계획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를 도급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를 해야 함

❍ 제도에 대한 이해

-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과정에서 화학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도급행위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적극 제기되어, 취급 도급을 할 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수급자는 일정 능력과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도급할 때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자가 수급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못하는 내용과 안전정보 제공의무를 명문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업무 흐름도

신고서 제출 (신청인)	⇒	접수 [유역(지방)환경청]	⇒	검토 [유역(지방)환경청]	⇒	현지확인 [유역(지방)환경청]	⇒	결재 [유역(지방)환경청]

○ 법령 내용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①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이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라 한다)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해당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도급의 사유, 도급계획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이 법 위반에 따른 효과는 도급인에게도 미친다. 다만, 제7장 벌칙(제57조부터 제64조까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급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과 기준을 갖춘 자에게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여야 한다. ④ 도급인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도급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도급인·수급인의 주요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2. 도급계획서(도급대상 작업의 개요, 도급사유, 수급인이 보유한 개인보호장구 명세서, 수급인의 취급시설 및 인력 명세서, 제2항제4호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3. 화학사고 안전관리 계획서 ② 법 제31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과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완비할 것 2.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할 것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능력과 기준을 맞출 것 ③ 법 제31조제4항에서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급계약 등에서 정한 공사·보수 기간의 단축 2. 심야시간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사·보수. 다만,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게 공사·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화학사고 발생 우려에 따른 수급인의 정당한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및 취급시설의 공사·보수·운영 지시 4. 화학사고 발생 사실 또는 발생 우려의 은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 관련예규: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환경부 예규 제537호, '14.12.31)

○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의 신고서 제출 기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 제조업: 유해화학물질 제조시설 소재지
-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 시설 소재지(별도의 저장·보관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주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판매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 시설 소재지
-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차고지 또는 차량 등록지
-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사용시설 소재지

○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의 신고서 신청서류

- 허가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
- 첨부서류

(ⅰ) 신청인・도급인・수급인의 주요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1부 (ⅱ) 도급계획서(도급대상 작업의 개요, 도급사유, 수급인이 보유한 개인보호장구 명세서, 수급인의 취급시설 및 인력 명세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1부 (ⅲ)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도급인·수급인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30일 이상 도급 시 작성) 나. 화학사고 위험성과 예방대책, 응급조치 및 개인보호장구 사용계획

다. 화학사고 발생 시 경보운영 및 비상조치 계획 라. 수급인의 개인보호장구 사용 및 유지 관리 계획(30일 이상 도급 시 작성) 마. 도급인 및 수급인의 비상연락체계 바. 수급인의 근로자 자체 교육 실시 계획 사. 그 밖에 화학사고의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 ※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지침 및 작성샘플은 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참고

○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시 수급인이 갖추어야 할 조건**

- 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의 완비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준수
-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이수
-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경부 고시 사항

○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시 수급인에게 무리하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항목**

- 도급계약 등에 정해진 공사·보수 기간의 단축
- 심야시간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및 취급시설의 공사·보수·운영. 다만,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하게 공사·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
- 화학사고 발생 우려에 따른 수급인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및 취급시설의 공사·보수·운영 지시
- 화학사고 발생 사실 또는 발생 우려의 은폐
-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경부 고시 사항

벌 칙

○ 과태료

-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의 도급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1차 위반 : 600만원, 2차 위반 : 800만원, 3차 이상 위반 :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법 제64조제1항제6호, 시행령 별표 1)

○ 행정처분

-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도급인에게도 그 책임을 부여(단, 제57조부터 제64조의 벌칙 적용은 제외)

- 영업정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너.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6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더.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능력과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도급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7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러. 법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을 요구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8호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게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 취급 도급에 해당되는지?**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간 거래는 영업거래로 형태로 볼 수 있어 취급 도급에 해당되지 않음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이송배관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취급 도급에 해당되는지?**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이송배관 시설을 점검하는 경우 취급시설의 유지관리 형태로 볼 수 있어 취급에 해당되며, 이를 도급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에 해당

○ **단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취급 도급의 경우에도 화학사고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30일 미만의 단기 도급의 경우에도 신청서를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불필요한 행정소요 시간을 줄이고, 사고예방에 대한 안전조치에 집중하도록 제출 항목을 간소화(일부 항목 작성 면제*)

* 도급·수급인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개인보호구 유지관리 계획 등 중장기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 항목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는 2015년 이전에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 언제까지 도급신고를 해야 하는지?**

⇒ 화학물질관리법 부칙 제6조 및 규칙 부칙 제8조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도급신고를 해야 함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저장시설 또는 이송배관의 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에 해당이 되는지?**

⇒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 취급 도급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시설·설비 내 유해화학물질의 고체, 액체, 증기·가스·분진 등이 잔류·체류하는 시설의 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화관법 제31조에 따른 취급도급의 대상이 됩니다.

○ **유해화학물질 사용시설인 Fab 설비 청소, 소모품 교체, 단순 육안검사 업무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에 해당이 되는지?**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사용 시설·설비의 청소, 검사, 설비 수리·교체 등은 취급시설의 유지관리로 볼 수 있어 취급에 해당되며, 이를 도급하는 경우 화관법 제31조에 따른 취급 도급의 대상이 됩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2차 이상으로 하도급하여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 어느 단계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서 제출 대상이 되는지?**

⇒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의 경우는 하도급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모든 취급 도급 작업에 대해 화관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신고서(첨부 포함*)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도급·수급인 정보, 도급계획서(도급 작업개요, 도급사유, 개인보호장구 명세서, 수급인 취급시설·인력명세서, 수급인 능력·기준 근거 서류),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등

○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작업이 같은 날 2개 이상(다른 도급인) 이뤄지는 경우 도급인은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를 각각 작성해야 되는지?**

⇒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작업을 여러 수급인에게 도급하는 경우 화관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작업에 대한 현지 확인은 모든 도급에 해당되는지?**

⇒ 화관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취급 도급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지방환경관서는 취급물질목록, 취급량,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사고예방에 필요한 취급 도급 작업에 대해 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작업에 대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무리하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경우는?**

⇒ 화관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를 준수해야 하며, 그 밖에 취급 도급 작업에 대한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현장조사, 사고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추후 고시할 예정입니다.

○ **화관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심야시간대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공사·보수를 무리하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사항 중 심야시간은 언제인지?**

⇒ 심야시간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 받은 수급인이 법을 위반한 경우 도급인이 그 책임을 지는지?**

⇒ 화관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 그 효과는 도급인에게도 있습니다. 다만, 화관법 제57조 내지 제64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처벌은?**

⇒ 화관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7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2차 위반 시 경고,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4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 **단기 도급을 하는 경우도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서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30일 미만의 단순 작업의 경우도 단기 도급에 해당되며, 이 경우 화관법 제32조에 따른 신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공동활용

○ 개요

- 본 조는 2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이는 유독물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공동 활용은 해당 사업장이 동일 부지 또는 동일 건축물에 소재할 것을 조건으로 함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에 관한 승인권한 및 변경신고의 접수 권한은 이 법률 제55조 및 시행령 제22조제2항제18호에 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 법령 내용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에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 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그 유해화학물질	**제1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②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기술사·화공기술사·가스기술사·대기관리기술사·수질관리기술사·폐기물처리기술사	**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법 제32조제1항에서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 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 다만,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이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다음 각 목의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취급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여행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종사자에게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수탁관리자 및 취급시설 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기사·산업안전기사·가스기사·수질환경기사·대기환경기사·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위험물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환경기능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5.「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화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6.「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7.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구분에 따른 인원. 다만,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판매업(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사자 500명당 1명을, 유해화학물질사용업의 경우에는 종사자수 5,000명당 1명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가.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1,000톤 미만인 경우: 1명 나.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1,000톤 이상 10,000톤 미만인 경우: 2명 다.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10,000톤 이상 100,000톤 미만인 경우: 3명 라.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100,000톤 이상 1,000,000톤 미만인 경우: 4명 마.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1,000,000톤 이상인 경우: 5명 **제34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야 한다. 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⑦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자격·인원·직무범위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대리자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정하여 고시한 사람 ③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2. 법 제14조에 따른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필요한 조치 3.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에 필요한 조치 4. 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조치 5.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6. 법 제2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에 필요한 조치 7. 법 제31조에 따른 수급인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조치 8. 법 제40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9.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조치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0호서식의 선임·해임·퇴직서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명단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에 필요한 기간의 연장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업무를 대리하는 자의 이력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53호서식의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0. 법 제43조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에 필요한 조치 11.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 ④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대리자 대행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38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① 같은 부지나 건축물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별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①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공동 활용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활용계획서 2. 개별업소의 명세 및 위치도 3.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설 및 장비의 내역서 4. 개별업소 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 등의 협약서 5.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 명세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방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법은 별표 8과 같다. **제43조(공동 활용의 변경신고)**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업소 및 공동 활용 업소 2. 공동 활용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용량(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공동 활용하는 업무대행자의 대행 범위 4.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 등의 협약서 중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의 공동대처방안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공동 활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동 활용자의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 화학물질관리법에 정한 취급인력의 구분

- 기술인력: 취급시설을 동반하는 영업허가를 득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시행규칙 [별표 6]의 자격 조건을 갖춘자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자로 책임자와 점검원으로 구분

-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기술인력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아닌 자 중에 직접 취급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4-257호)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취급시설 없이 판매를 알선하는 자 제외)는 취급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사업장마다 책임자를 1인(2인 이상 임명 가능)을 선임하고, 점검원은 종사자수 및 취급량에 따라 선임

- 책임자: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는 1명. 다만,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이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를 겸할 수 있음

- 점검원의 선임기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선임하되,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판매업(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사자 500명당 1명을,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의 경우에는 종사자수 5,000명당 1명을 추가로 선임

  -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1,000톤 미만인 경우: 1명
  -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1,000톤 이상 10,000톤 미만인 경우: 2명
  -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10,000톤 이상 100,000톤 미만인 경우: 3명
  -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100,000톤 이상 1,000,000톤 미만인 경우: 4명
  -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1,000,000톤 이상인 경우: 5명

  * 종사자라 함은 한 사업장 내에서 상시로 근무하는 근로자(시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포함)로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하지 않더라고 동일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포함함
  * 기술인력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할 수 있음
  * 한 사업장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2인(책임자, 점검원)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나,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이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를 겸할 수 있음(1인만 선임 가능)

- 사례별로 선임하여야 할 점검원 수

영업형태	취급량(톤)	종사자 수	선임해야 할 점검원 수	영업형태	취급량(톤)	종사자 수	선임해야 할 점검원 수
제조업	5,000	100	2	사용업	5,000	100	2
제조업	120,000	600	5(4+1)	사용업	120,000	600	4
제조업	15,000	1,200	5(3+2)	사용업	15,000	1,200	3
제조업	1,500,000	6,100	17(5+12)	사용업	1,500,000	6,100	6(5+1)

* 연간취급량에 따른 종사자 선임 시 취급량은 연간취급예정량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취급량이 연간취급예정량을 초과하여 점검원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점검원을 충원하여야 함.

○ 선임 및 해임 신고

1)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 해임 및 퇴직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9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50호서식의 선임·해임·퇴직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2)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확인증을 발급

3)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

4) 만일,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선임하여 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기간은 30일 이내로 함(연장 불가)

- 대리자 선임 시 별지 제52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대리하는 자의 이력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 대리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충족 할 필요는 없으며, 당해 사업장 내에 상시로 재직 중일 필요는 없으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대리자의 이력 등을 검토하여 대리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음

5)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여행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함(지방환경관서에 승인신청서 제출 불필요)

- 대리기간은 30일 이내로 하고 1차례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기술사·화공기술사·가스기술사·대기관리기술사·수질관리기술사·폐기물처리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기사·산업안전기사·가스기사·수질환경기사·대기환경기사·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위험물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 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환경기능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화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 책임자와 점검원의 자격기준은 같음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화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이라 함’은 일반화학, 분석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물리화학, 생화학 등 화학관련 과목을 1학점 이상 취득한 자를 의미함

○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직무범위 및 의무

- 직무범위

1) 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2) 법 제14조에 따른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필요한 조치

3)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에 필요한 조치
4) 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조치
5)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6) 법 제2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에 필요한 조치
7) 법 제31조에 따른 수급인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조치
8) 법 제40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9)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조치
10) 법 제43조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에 필요한 조치
11)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

- 의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종사자에게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수탁관리자 및 취급시설 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

* 책임자와 점검원의 직무는 사업장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책임자는 점검원을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음

○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공동활용

- 같은 부지 또는 건축물 안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2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영업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57호 서식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공동활용을 신청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공동활용 승인의 조건과 승인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자에게 공문서로 승인 여부 통보

-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변경신고서 제출

벌 칙

❍ 과태료

- 제38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를 아니한 자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1차 위반 : 600만원, 2차 위반 : 800만원, 3차 이상 위반 :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법 제64조제1항제10호, 시행령 별표 1)

❍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19호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참고1 영업자의 기술인력 및 관리자 선임기준 (법 제28조 및 제32조)

구분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책임자 및 점검원)
채용	1. **기술인력 : 1명** 이상, -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운반업, 판매업 또는 사용업의 경우에는 제외	1. **책임자** : 1명, 단 종업원 10명 미만인 경우는 점검원이 책임자를 겸직 2. **점검원** [기본]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량 기준에 따라 차등 선임 - 1,000톤 미만 : 1명 - 1,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 2명 - 10,000톤 이상 100,000톤 미만 : 3명 - 100,000톤 이상 1,000,000톤 미만 : 4명 - 1,000,000톤 이상 : 5명 [추가] 제조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판매업은 종업원수 500명당 1명, 사용업은 5,000명당 1명을 추가 선임
자격	1. 화공안전・화공・가스·대기관리·수질관리·폐기물처리 또는 산업위생관리 기술사를 취득한 사람 2. 산업안전・기계・화공・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위험물 또는 가스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화공・산업안전・가스·산업위생관리·수질환경·대기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산업안전・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위험물・가스·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위험물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1. 화공안전기술사·화공기술사·가스기술사·대기관리기술사·수질관리기술사·폐기물처리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화공기사·산업안전기사·가스기사·수질환경기사·대기환경기사·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산업안전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위험물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4. 가스기능사·환경기능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5.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화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6.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7.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8. 그 밖에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비고	경과규정 : 기존업체는 2017.12.31.까지 충족	경과규정 : 기존업체는 2015.12.31일까지 관리인 선임신고

※ 단 기술인력이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될 수 있음

참고2 영업자의 기술인력 및 관리자 선임 예시

질의) ‘A社’는 염화수소를 연간 1,321톤 제조하는 업체로 종업원은 15명인 경우 채용 인력은?
답변) **기술인력 1명 이상,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는 3명(책임자 1명, 점검원 2명)**
설명) 제조업이므로 기술인력 1인 이상, 종업원이 10명 이상이므로 책임자 별도 선임, 취급량은 천톤 이상이므로 점검원 2명

질의) ‘B社’는 황산을 연간 260톤을 사용하는 업체로 종업원은 5명인 경우 채용 인력은?
답변) **기술인력 제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는 1명(책임자 겸임)**
설명) 사용업 중 10인 미만이므로 기술인력 제외, 종업원 10명 미만인 경우는 점검원이 책임자를 겸직

질의) ‘C社’는 톨루엔을 연간 25,000톤을 판매하는 업체로 종업원은 780명인 경우 채용 인력은?
답변) **기술인력 1명 이상,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는 5명(책임자 1명, 점검원 4명)**
설명) 연간 취급량이 25,000톤이므로 3명, 판매업은 종업원수 500명당 1명 추가 선임

질의) ‘D社’는 연간 페놀150톤, 황산2,000톤, 염산6,000톤 등 총 8,150톤을 운반하는 업체로 종업원은 8명인 경우 채용 인력은?
답변) **기술인력 제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는 2명(1인이 책임자 겸직)**
설명) 연간 취급량이 총 8,150톤이므로 점검원 2명,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는 점검원이 책임자를 겸직

질의) 'E社’는 연간 포스겐 900톤, 트리에틸갈륨 110톤을 제조하는 업체로 종업원은 6명인 경우 채용 인력은?
답변) **기술인력 1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점검원 1인(1인이 책임자 겸직)**
설명)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기술인력 1인 이상, 트리에틸갈륨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되지 않아 연간 제조량은 1,000톤 미만이므로 점검원 1명, 종업원 10명 미만이므로 점검원이 책임자 겸임

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 개요

- 개정법은 안전교육 대상자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관리책임자, 점검원), 취급담당자로 확대 및 교육 이수시간을 확대하고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 전문교육 및 사업장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신설하였음

- 안전교육을 전담하는 교육기관의 지정, 교육계획 등 기관 관리를 위해 필요 사항 규정하였음

○ 제도에 대한 이해

- 개정법 이전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협회에서 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교육기관을 확대하였고 교육대상자도 관리자 등 모든 화학물질 취급 종사자로 확대하여 안전교육을 강화함

○ 교육업무 흐름도

신청서 (신청인)	⇒	접수 및 교육대상자 통보 (교육기관)	⇒	안전교육 (교육기관)	⇒	수료증 발급 (교육기관)	⇒	교육결과 보고 (교육기관 →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 법령 내용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①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제35조(안전교육기관)**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한 때에는 그 해당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취급 담당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3.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화학물질안전원 2. 협회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안전교육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 가. 화학물질안전원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30일 이상 수료한 전문가를 3명 이상 보유할 것 나. 동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교육장을 갖출 것 다. 가목에 따른 전문가 외에 화학물질 안전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보유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일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육담당자는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따른 교육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항제3호 각 목의 요건과 안전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36조(안전교육계획)** ①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교육의 기본방향 2. 안전교육 수요 및 장기 추계 3. 안전교육 과정의 설치 계획 4. 안전교육 교재 편찬 계획 5. 안전교육 성적의 평가방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33조제1항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매 2년마다 1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16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과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함께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거나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현장에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매년 1회, 2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유해화학물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질 안전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결과를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내용 및 결과 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자 명단 3.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강사 이력서 ⑤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교육 경비는 교육 내용 및 교육 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조문해설

○ 관련 고시 및 훈령

-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4-257호, '14.12.31)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127호, '14.12.31)

○ 안전교육대상자 관리자 및 교육시간(8시간 이상/3년에서 16시간 이상/2년) 확대

- 관리자는 유해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관리자 1명을 지정하면 되었으나 관리자를 책임자와 점검원으로 나누어 지정하도록 하고 점검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종사자의 수에 따라 선임하도록 규정

- 16시간 이상 추가교육을 받아야하는 전문교육 대상자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 교육기관과 취급시설의 검사기관이 함께 실시하는 안전교육이나 정기검사 받을 경우 교육 면제

○ **전문기관으로 지정**

- 지정 조건은 반드시 비영리기관이어야 하며 전문교육장, 안전원 교육 이수한 전문가 등을 갖추어야 함

벌 칙

○ **과태료**

-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영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1차 위반 : 180만원, 2차 위반 : 240만원, 3차 이상 위반 :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법 제64조제2항제1호, 시행령 별표 1)

○ 안전교육 대상자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관리자, 취급담당자, 유해화학물질 해당 사업장 종사자

* 취급 담당자: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위해관리계획서 담당자

⇒ 안전교육 외 교육은 관리자 선임자 중 교육(32시간)이 필요한 자

* 24시간 교육을 받아 유독물 관리자가 된 사람은 8시간 추가 교육이수 필요

○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할 시간은?

⇒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관리자, 취급담당자는 16시간이상/2년, 해당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는 매년 2시간이상(온라인 교육 가능)/년 교육이수

⇒ 위해관리계획서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는 16시간 추가교육 이수

○ 안전교육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

⇒ 안전교육은 화학물질안전원, 협회, 환경부가 지정·고시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됨

⇒ 종사자 교육은 관리자가 실시하거나 온라인 교육을 받으면 됨

* 화학물질안전원은 '15년 상반기에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구축 후 하반기 운영

○ 출장 교육을 쉽게 이용하기 위해 산단 공동체에 교육자 파견을 요청하면 가능한가요?

⇒ 교육기관인 협회에서는 안전교육을 위해 지역별로 교육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출장교육의 필요 여부는 '15년 교육과정 운영 후 검토하겠음

○ **유해화학물질 운전자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운전자는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으로 16시간 이상/2년 안전교육을 받아야 됨

○ **모든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적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 안전교육(16시간 이상/2년) 대상자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이수 후 증명서를 받아 보관하면 됨

⇒ 종사자 교육(2시간 이상/년) 대상자는 관리자가 실시한 교육을 받고 교육 증명서(자체작성)를 발급·보관하거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 후 증명서를 보관하면 됨

* 관리자는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 교육 증명서를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에 보고해야 됨
* 화학물질안전원은 '15년 상반기에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후 하반기 운영 추진 중

6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단, 휴·폐업

❍ 개요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아래와 같이 취급시설 가동중지, 취급중단, 취급방법 변경하는 경우는 대기·수계·토양 등 환경으로 배출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30일 이상 가동을 중지 • 취급을 30일 이상 중단 • 작업자가 직접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도록 변경(수동 변경)하는 경우 등

- 특히, 60일 이상 가동을 중지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전에 안전하게 처분한 후 휴·폐업 예정일 10일 전에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를 한 후 확인·점검을 받아야 함

❍ 제도에 대한 이해

-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중단하거나, 휴·폐업으로 인해 화학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유해화학물질의 방치 등으로 초래할 수 있는 환경·인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변동현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 업무 흐름도

신고서 제출 (신청인)	⇒	접수 [유역(지방)환경청]	⇒	검토 [유역(지방)환경청]	⇒	현지확인 [유역(지방)환경청]	⇒	확인증 발급 [유역(지방)환경청]

○ 법령 내용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4조(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등)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중단하거나 취급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의 경우 미리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여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이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게 폐업 또는 휴업 전에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8조(취급중단 및 휴업·폐업시 조치사항)** ①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30일 이상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30일 이상 중단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중단하려는 경우 미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부인의 출입이 없도록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이 대기·수계·토양 등 환경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취급시설을 밀폐할 것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주기적인 자체 점검 계획을 마련할 것 4. 저온 동파로 인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온 대책을 마련할 것 5. 취급 중단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할 것 ②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취급방식을 수동으로 변경함으로써 취급자가 직접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도록 변경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조치하여야 하는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이 대기·수계·토양 등 환경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39조(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신고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10일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2. 영업실적보고서(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34조제1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여부에 관한 서류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및 보관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조문해설

○ 유해화학물질 휴·폐업, 재개 신고서 제출 기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 제조업: 유해화학물질 제조시설 소재지
-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 시설 소재지(별도의 저장・보관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주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판매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 시설 소재지
-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차고지 또는 차량 등록지
-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사용시설 소재지

○ 유해화학물질 휴・폐업, 재개 신고서 신청서류

- 허가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54호 서식
- 첨부서류

(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ⅱ) 영업실적보고서(폐업의 경우) 1부
(ⅲ) 법 제34조제1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여부에 관한 서류
가.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폐업의 경우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 처분
나. 법 제34조제1항 및 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30일 취급시설 가동 중지 또는 취급 중단 시 안전조치
- 외부인의 출입이 없도록 출입 통제를 위한 대책 수립
- 유해화학물질이 대기·수계·토양 등 환경으로 배출이 없도록 취급시설의 밀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주기적인 자체점검 계획 수립
- 저온 동파로 인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온 대책 수립
- 취급 중단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 처분

벌 칙

○ **벌칙 및 과태료**

-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58조제5호)

-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1차 위반 : 600만원, 2차 위반 : 800만원, 3차 이상 위반 :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법 제64조제1항제8호, 시행령 별표 1)

○ **행정처분**

- **조치 명령**(법 제34조제3항)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휴·폐업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및 보관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FAQ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대정비보수를 위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60일 이상 가동중지 하는 경우에 사업장 전체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해야 하는지?**

⇒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을 지속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개·보수 하는 경우는 본 조의 취지와 다름을 감안하여 해당 공정·시설에 한정하여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함.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준수해야 함

7 유해화학물질 영업정지

○ 개요

- 본 조에 규정된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은 이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주무관청이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수단이다.
-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권한은 이 법률 제55조 및 시행령 제22조제2항제15호에 의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 법령내용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8조를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취급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제27조 각 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과 관계되는 인가·허가 등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제40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및 별표 7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개선명령서에 개선조치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그 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른 필요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2.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한 경우 6.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한 경우 7.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9.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10. 제24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11. 제25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27조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14. 제28조제4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15.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6.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능력과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도급한 경우 18.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을 요구한 경우 19.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0.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1. 제42조를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22.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3.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4.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5.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6.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산·환경에 영향이 발생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반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호	영업정지 15일	허가취소		
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2호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3호				
1) 법 제13조제2호의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그 밖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라.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4호				
1) 사업주가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아 작업자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사업주가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였으나 작업자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마.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5호				
1)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한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2)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한 경우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바.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6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사.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7호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8호	영업정지 1개월	허가취소		
자.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9호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개월	
차.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0호				
1)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6개월		
카. 법 제25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1호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개월	
타.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2호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파. 법 제27조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3호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하.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후 2년	법 제35조	허가취소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제2항제14호				
거. 법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5호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너.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6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더.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능력과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도급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7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러. 법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을 요구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8호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머.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9호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버.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20호				
1) 사고대비물질의 유출·누출 또는 도난·전용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5일
2)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서.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21호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어.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22호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저.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23호				
1) 터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2) 1) 외의 경우에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처.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법 제35조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보고한 경우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2항제24호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2)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커.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25호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산·환경에 영향이 발생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26호				
1) 업무상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나)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법 제45조에 따라 화학사고 조사단이 실시한 영향조사 결과 사업장 밖 피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피해금액 1억원당 영업정지 1일(최대 30일)	피해금액 1억원당 영업정지 1일(최대 60일)		
2)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나)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법 제45조에 따라 화학사고 조사단이 실시한 영향조사 결과 사업장 밖 피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피해금액 5천만원당 영업정지 1일(최대 90일)	피해금액 5천만원당 영업정지 1일(최대 180일)		

8 영업정지 갈음한 과징금

○ 개요

-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영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

○ 제도에 대한 이해

-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연간 유독물 제조량·사용량 또는 보관·저장량을 5단계 등급에 따라 산정된 1일당 과징금 금액에 영업정지 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3억원 한도 내에서 부과하였음

-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산정된 1일당 과징금 금액에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산정된 영업정지 기간을 곱하여 과징금을 산정

○ 업무 흐름도

과징금 통지서 발급 [유역(지방)환경청]	⇒	통지서 접수 (사업장)	⇒	과징금 납부 (사업장)	⇒	영수증 발급 및 수납내역 보고 (수납기관)	⇒	과징금 납부 확인 [유역(지방)환경청]

○ 법령 내용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6조(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하여 제35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단일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34조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으로 제3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제14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조문해설

○ **관련규정: 일부 영업정지 대상 및 과징금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지침)

○ **과징금 산정**

- 과징금 = 1일당 과징금 금액 × 영업정지 일수
  = 연간 매출액 × 1/3,600(단, 단일사업장은 1/7,200) × 영업정지 일수

○ **연간 매출액 산정**

- 영업의 전부 정지 시 연간 매출액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매출액

❖ 과징금

- 「과징금(過徵金)」이란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행정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임.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이 산정하여 부과함

-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부과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은 이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으며, 유역(지방)환경청은 법 제36조제2항 및 시행령 별표 1의 부과기준을 참고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음

❖ 국세체납처분

- 본 조의 과징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징수함. 국세체납처분이란 국세체납자에 대하여 세무행정관청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행하는 강제징수방법의 하나이며, 일종의 강제집행 절차에 속함.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는 민사상의 강제집행과 같이 압류, 매각, 청산의 3단계로 성립되지만, 집행명의가 판결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민사상의 강제집행에 비하여 간단하고 신속하게 종결됨
- 국세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체납자에게 독촉을 해야 하며,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국가・지방자치 단체의 경우를 제외하고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매달 체납국세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60개월 이하)을 징수함과 아울러, 납기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함. 이런 경우의 납부기간은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이며, 독촉절차가 끝나면 재산압류, 매각, 청산의 3단계에 걸쳐 체납처분을 하게 됨

- 영업의 일부 정지 시 연간 매출액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영업정지 대상 영업에서 발생한 연평균매출액

순 수수료

○ 개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는 아래의 검사단위로 구분한 후 취급량, 저장보관용량, 시설수량의 보정계수를 반영하여 산정함

● 제조·사용시설 및 설비/ ● 실외 저장·보관시설 및 설비 ● 실내 저장·보관시설 및 설비/ ● 지하 저장·보관시설 및 설비 ● 차량운반시설 및 설비/ ● 배관이송시설 및 설비

○ 제도에 대한 이해

-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정기·수시검사는 사업장 단위로 시·도지사가 수행하며, 검사수수료는 수입증지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고, 안전진단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노임단가 기준에 실제 공량을 곱하여 산출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기준으로 부과하였음

-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며, 노임단가 기준에 실제투입 공량을 곱하여 산출하되 취급량, 보관저장량, 시설수량 등을 반영하여 할증·할감토록 하여 수수료 부과를 현실화 함

○ 업무 흐름도

검사·진단 신청 (신청인)	⇒	검사·진단 수수료 확인 (신청인,검사기관)	⇒	수수료 납부 (신청인)	⇒	검사 및 진단수행 (검사기관)	⇒	검사 및 진단결과서 송부 (검사기관)

○ 법령 내용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5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지정·확인·심사 또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증명의 발급 2.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 및 변경허가 3.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 5.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 6. 제20조제4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변경허가 및 유독물질의 수입변경신고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의 승인 및 변경승인 8.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9. 제24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진단 10.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11. 제28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제59조(수수료)** ① 법 제54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3. 제3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휴업·폐업 신고		

조문해설

○ **관련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4-242호, '14.12.31)

○ 검사수수료는 원가계산에 의한 「용역원가 계산방식」, 진단수수료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함

○ 세부검사 단위별 수수료의 산정은 제조사용시설은 검사단위별 취급량, 저장·보관시설은 저장량 및 보관시설 면적, 차량이송시설은 차량대수, 사업장외 이송배관 길이 등을 기준으로 부과함

FAQ

○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으로 연간 취급량이 1,128톤이고, 저장탱크(20톤) 2기와 보관창고(115㎡) 2개소가 있을 경우 검사수수료 및 소요시간은?**

⇒ 검사 수수료는 취급시설 유형별로 부과되며, 취급량 또는 저장보관시설 용량에 따라 차등부과됨. 위 사업장의 경우 설치검사는 검사원 2인을 기준으로 4.1일이 소요되며, 수수료는 약 4,200,000원이 부과됨. 정기검사의 경우는 검사원 2인을 기준으로 1.5일 정도 소요되며, 수수료는 약 1,520,000원이 부과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참고

4. 사고 예방·대응

1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

○ 개요

-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고대비물질(69종)을 취급하는 자는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시행규칙 별표 9)을 지키도록 하게 함

○ 제도에 대한 이해

- 사고대비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하여 사고대비물질을 지정·고시하고,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마련

○ 법령 내용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9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1. 인화성, 폭발성 및 반응성, 유출·누출 가	**제17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고시)**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능성 등 물리적·화학적 위험성이 높은 물질 2. 경구(經口) 투입, 흡입 또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급성독성이 큰 물질 3.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 등에서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명된 물질 4. 그 밖에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법 제40조 본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조문해설

○ **관련고시: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참고**(환경부 고시 제2014-248호, '14.12.31)

○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9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관리**

-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은 제외

  *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말함(법 제2조 제6호)

  ** '연구실'이란 대학・연구기관 등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장비・연구실험실・연구재료 등 연구시설을 말함

-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은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이 있으며 일반기준은 사고대비물질에 모두 적용되는 기준이며, 개별기준은 황산 등과 같은 도난・전용 위험물질 등에 특별하게 적용되는 기준 임(시행규칙 별표 9참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의 제4조 별표 1 사고대비물질별 개인보호 장구의 종류에 따라 호흡보호구, 보호장갑 등의 개인보호장구를 착용

-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0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

- 적합 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위해관리계획서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관리

벌 칙

❍ 벌칙

-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58조제6호)

❍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버.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1) 사고대비물질의 유출·누출 또는 도난·전용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20호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15일 경고	영업정지 1개월 경고	영업정지 5일

○ **화관법 내용을 살펴보면 지정 화학물질을 지정한 범위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사고대비물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정범위 이하로 사용하면 사고대비물질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톨루엔의 경우 연간 1500 ton을 사용해야 사고대비물질인데 사업장에서 연간 톨루엔을 100 ton 사용하면 사고대비물질이 아니고,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 모든 사고대비물질은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의 톨루엔의 경우는 관리기준 중 일반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톨루엔을 연간 1,500,000 kg 이상 제조·사용하거나 200,000 kg 보관·저장할 경우에는 화관법 제41조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톨루엔 및 그 취급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

○ **사고대비물질을 희석하거나 다른 물질과 혼합하여 취급하는 경우에도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나요?**

⇒ 화관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0의 사고대비물질별 지정기준에 따라 해당 사고대비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면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25% 암모니아수를 취급하고 있다면 암모니아의 적용범위는 "암모니아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하고 있는 혼합물질"이므로 25% 암모니아수는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합니다.

○ **사고대비물질을 관리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은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이 있습니다. 그중 69종에 모두 적용되는 일반적인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을 따라야 한다(「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의 독성가스는 제외한다).
-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적합 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를 해당 사업장에 보관하고 위해관리계획서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사고대비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당사는 황산 및 질산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황산 및 질산 등 도난·전용이 있는 물질을 관리할 경우는 사고대비물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기준 외 다음 6가지 항목의 개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해당 물질을 인계인수한 때에는 인수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이후 인수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물질 종류 및 물질의 양을 기록하고 이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외부인 침입방지를 위하여 취급시설 및 판매시설 내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하여 확인·기록하고 이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보관이 곤란할 경우에는 외부인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의 영상 장비를 설치하고 그 영상 기록물 등을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해당 물질에 대해서는 외부인의 접근을 엄격히 차단하고, 다음과 같이 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옥내 보관시설 중 창문이 있는 경우 창문에는 보호철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옥외 보관시설에는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저장·보관 시설, 진열·보관 장소에는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평상시에는 잠가 두어야 한다.
- 해당 물질을 인터넷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 시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 인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해당 물질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동의서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해당 물질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경찰서, 국가정보원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 제출

○ 개요

-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시행규칙 별표 10)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로 인한 주민 및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중 사고대응정보 등을 지역사회에 고지토록 하는 제도

○ 제도에 대한 이해

- (**배경**) '12.9월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사고예방 프로그램, 장외평가 및 비상대응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위해관리계획을 수립 · 이행하게 하고 이중, 사고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하는 제도의 필요성 제기

- (**목적**) 사고대비물질 및 그 취급시설의 사고 위험성 및 사고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사고예방 및 비상대응계획을 체계적 구축 · 이행하여 화학사고로 인한 주민 및 환경 피해 최소화

○ 위해관리계획 업무 흐름도

신청서 (신청인)	⇒	접수 (화학물질 안전원)	⇒	검토 (화학물질 안전원)	⇒	현장확인 (필요시) (안전원)	⇒	결재 (화학물질 안전원)	⇒	검토결과서 통보 (신청인)	⇒	이행점검 [안전원 · 유역(지방) 환경청]

- **(1단계)**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 (규칙 제46조제1호)

- **(2단계)** 위해관리계획서 검토(안전원) (규칙 제47조)

- **(3단계)** 계획서 현장확인(안전원, 사실여부 및 준수여부 확인(필요시)) (규칙 제54조제10호)
- **(4단계)** 검토결과서(계획서 적합여부) 통보(안전원) (규칙 제47조)
- **(5단계)** 계획서 이행점검(안전원·지방환경관서) (규칙 제54조제10호)

○ 법령 내용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①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3.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5.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제45조(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46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별표 10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검토신청서에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이하 "위해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매 5년마다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1조제1항제8호에 따른 확인 결과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에 주민이 없고 최근 5년간 화학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6호·제8호에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산계획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그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따른 사항만을 포함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검토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60호서식의 검토결과서에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보완기간을 적고 수정·보완사항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수정·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사유가 없는 한 위해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해관리계획서의 세부적 내용,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취급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매년 1회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고지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에의 고지는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등의 방법 중에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한다. ③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제2항에		**제48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고지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위해관리계획고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고지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고지서 2. 고지 대상 명단 및 고지방법 ③ 제1항에 따른 고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되, 개별사업장 또는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고지할 수 있다. 1. 서면통지하는 경우: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 2.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경우: 설명 후 서명날인 3. 집합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공청회나 설명 회 등의 개최방식으로 전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따른 고지 이외에도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의 내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해관리계획서의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의 방법으로 고지하는 경우: 일간신문, 화학물질안전원 및 관할 시청·구청·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사무소·면사무소를 통하여 전달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조문해설

○ **관련고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4-256호, '14.12.31)

○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

*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말함(법 제2조 제6호)

** 사고대비물질별 지정수량은 시행규칙 별표 10과 같음(시행규칙 제45조)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내용: 사고예방 분야, 장외평가 분야, 비상대응 분야로 구성

작성항목	포함내용
① 사고예방 분야	1호) 취급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2호)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3호)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4호)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작업자 현황 5호)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및 자체 점검 계획 6호) 그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장외평가 분야	7호)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호)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농작물, 환경매체 확인
③ 비상대응 분야	9호)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 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10호)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근로자 포함)의 소산계획
④ 기타	11호)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요건

- 규칙 제37조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16시간과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 16시간을 이수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수준

- 과거 5년간 사고이력 및 영향범위 내 주민 유무 또는 타사고 예방제도의 적용 여부에 따라 1수준, 2수준, 3수준으로 구분

  • 1 수준: 과거 5년간 화학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사고 영향범위 내에 주민이 없는 경우(11개 항목 중 1, 2, 4, 5, 6호만을 작성하고, 8호를 작성하여 영향범위 내 주민이 없음을 증명)

• 2 수준: 1 수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11개 항목을 모두 작성하되 제3호의 일부만 작성)

• 3 수준: 1 수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제출 대상인 경우(11개 항목을 모두 작성)

< 위해관리계획 작성수준 결정 체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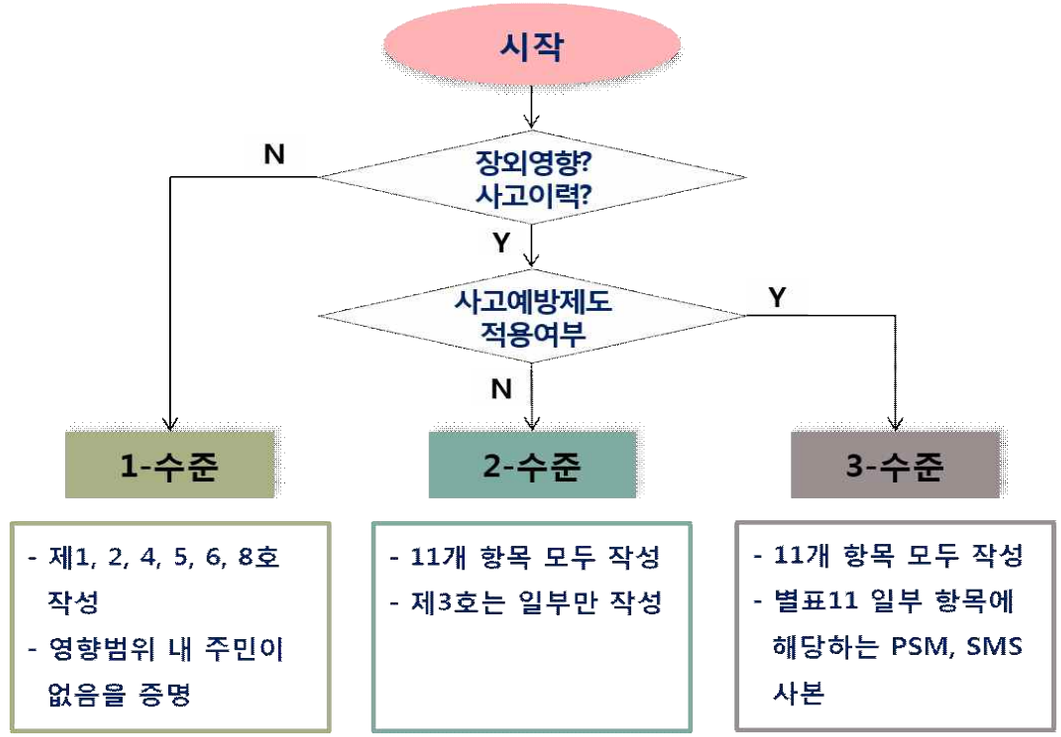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방법**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에 접속하여「정보마당-위해관리계획서」에서 아래 내용을 다운받아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에 활용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안내서(안내서에는 작성 고시 포함)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4종)
  · 작성지원 범용프로그램 및 사용자 안내서

-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개설하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신청(홈페이지의 교육마당 참고)

- 화학물질관리협회의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 신청

○ **위해관리계획서 제출시기(신규 및 기존 시설의 경우)**

- 신규시설은 영업허가를 받기 전에 제출하고, 5년마다 작성·제출

  *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및 영업허가증 발급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영업개시 3~4개월 전에 제출

- 기존시설은 규칙 부칙 제10조 경과조치에 따라 제출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

❖ 화관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한 자 또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①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제출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 · 제출 대상자

②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제출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 제출 대상자

③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제출대상

· ①번 또는 ②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 제출 대상인 자

❍ 위해관리계획서 제출시기(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 허가사항에 해당되면서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 업종별 보관 · 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 증가(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
-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
-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 변경
-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항목 중 장외평가 정보가 변경된 경우(동일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 변경,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변경 등의 사유로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경우에만 해당)
-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사고대비물질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거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방법**

- 신청인이 화학물질안전원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검토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서식
- 첨부서류: 위해관리계획서 3부

○ **위해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 통보**

-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검토 후, 신청인에게 적합여부를 통지
-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이 적합, 조건부 적합, 부적합으로 구분

< 검토결과 구분 >

① 적합: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이 검토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② 조건부 적합: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이 검토기준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나, 그 사항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취급시설의 설치 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취급시설이 설치된 경우는 30일 이내)
③ 부적합: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이 검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 위해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법 제42조 및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고지(시행규칙 별지 제62호 서식)

- 지역사회 고지 방법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

• 서면통지(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의 방법) • 개별설명(서명날인을 받아 관리) • 집합전달(공청회 또는 설명회) • 기타(일간신문, 화학물질안전원 및 관할 시청·구청·군청 홈페이지에 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사무소·면사무소, 통반장을 통한 대표 전달)

- 사업자는 위해관리계획 고지서, 고지대상 명단, 고지방법을 보관

< 위해관리계획 고지 내용 및 방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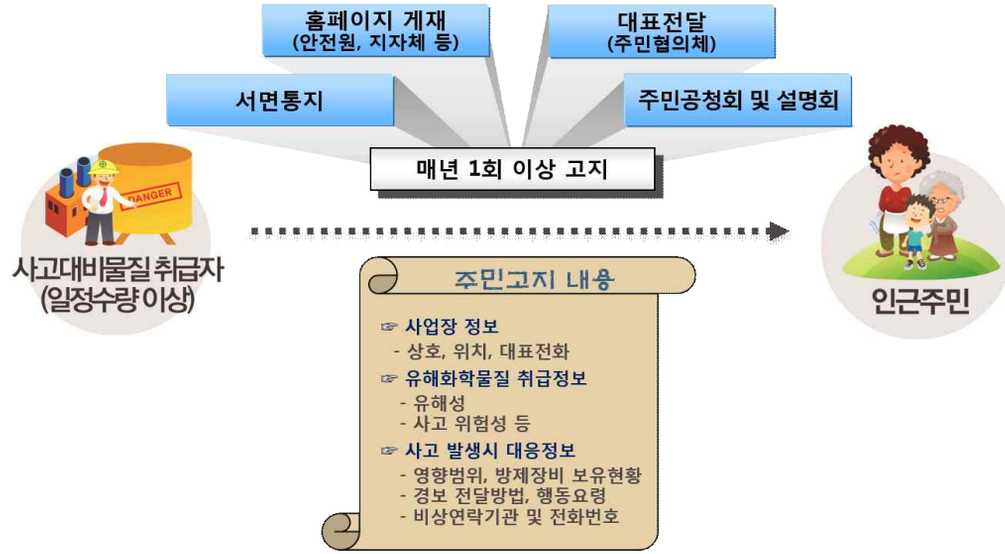

벌 칙

❍ 벌칙

-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58조)
  -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 및 제거조치, 복구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61조제5호)
  -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 행정처분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

  * 단,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상태를 평가한 결과 사고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는 해당 규정에 따라 처분을 경감할 수 있음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 이상위반
·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21호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22호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FAQ

○ 누가 작성·제출해야 하나요?

⇒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가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사고대비물질별 지정수량은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0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또한, 작성 담당자는 화학물질안전원 등에서 실시하는 16시간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16시간의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ncis)에서 확인 가능

○ 무엇을 작성해야 하나요?

⇒ 다음과 같이 총 11개의 세부항목을 작성해야 합니다.

항목	구분
1. 취급 사고대비 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사고예방 분야
2.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3.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 · 작업자현황	
5. 화학사고 대비 교육 · 훈련 및 자체 점검 계획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 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비상대응 분야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 · 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장외평가 분야
8. 사고발생 시 영향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 · 농작물, 환경매체 확인	
9. 사고발생 시 주민(근로자 포함)의 소산계획	비상대응 분야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 · 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그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예방 분야

⇒ 다만, 작성수준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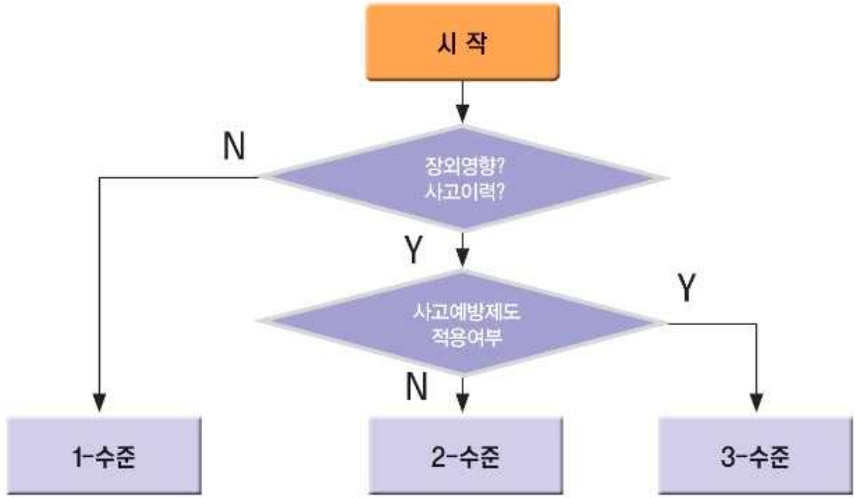

* (**1-수준**) 과거 5년간 화학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사고 영향범위 내에 주민이 없는 경우 → 11개 항목 중 제1~6항과 8항(영향범위가 없음을 증명)을 작성

* (**2-수준**) 1-수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공정안전보고서 및 안전성향상계획 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 → 11개 항목을 모두 작성하되 제3항의 일부만 작성

* (**3-수준**) 1, 2-수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11개 항목을 모두 작성

❍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신규시설 또는 기존시설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신규시설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가 필요하므로 영업개시 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및 영업허가증 발급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영업개서 3~4개월 전에 제출

⇒ 기존시설은 다음에 해당하는 시기에 제출해야 합니다.

* (**2015년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자 중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의 안전성향상계획 작성·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

* (**2016년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자 중 규정수량에 해당하는 사업장

* (**2017년 제출**) 공정안전보고서·안전성향상계획 작성·제출 대상이 아닌 그 밖의 사업장

○ **설비를 변경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지?**

⇒ 다음과 같이 보관·저장시설의 총용량 및 제조·사용량이 변경된 경우는 제출해야 합니다.

* 화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사항에 해당하면서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 사고대비물질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하거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 **제출은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위해관리계획서를 3부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0 화학물질안전원(한국선급건물 2층)/ (**연락처**) 042-605-7045～47

○ **제출할 때 수수료가 있나요?**

⇒ 수수료는 없습니다.

○ **사고대비물질과 관련된 설비에 대해서만 작성합니까?**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범위는 지정수량이상의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해당 물질의 취급시설과 연관설비에 대한 정보만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황산은 지정수량을 넘으나 염산은 지정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는 황산을 취급하는 시설과 연관설비를 중심으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사고대비물질을 희석하여 취급하는 경우는 지정수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사고대비물질 지정수량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사고대비물질 지정기준) 적용범위의 물질만 지정수량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암모니아의 적용범위는 암모니아 및 이를 10%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이며 이 경우는 10%이상의 암모니아가 포함된 물질(암모니아수 등)만 지정수량 계산에 적용됩니다.

○ **"제조·사용수량"과 "보관·저장수량"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 "제조·사용수량"은 사고대비물질을 설비에서 1년간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말하며, "보관·저장수량"은 저장소, 저장탱크 등 사고대비물질을 보관·저장하는 시설에서 보관·저장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말합니다.

○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습니까?**

⇒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화학물질관리법 제 58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 현장확인 및 이행점검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 위해관리계획서 검토는 안전원에서 수행하며 담당 연구관 및 연구사 또는 외부전문가로 검토반을 구성하여 검토합니다. 검토기간은 30일 이내이며 보완기간은 최대 60일 이내입니다.
현장확인은 서류검토 등에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이행점검은 점검계획에 의해 수시로 실시하게 됩니다.

○ **위해관리계획서의 재 제출 및 변경시 제출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 위해관리계획서는 매 5년마다 재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제출일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전·후 30일 이내)에 위해관리계획서를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변경으로 재제출할 경우는 그 이후 5년이 되는 날에 재 제출해야 합니다.

○ **공정안전보고서와 중복된 내용은 사본으로 제출 가능합니까?**

⇒ 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유해성 정보 등 검토할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주민고지는 언제 해야 하나요?**

⇒ 주민고지의 최초, 변경 고지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합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 및 그로부터 매1년

* 고지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주민고지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대안의 시나리오의 영향범위에 있는 주민이 해당됩니다.

○ **주민고지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 다음과 같은 고지서에 사업장 정보,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및 사고 발생시 대응정보를 작성하여 고지합니다.

위해관리계획 고지서		동 고지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취급되는 유해화학물질 정보와 화학사고 발생시 행동 요령 등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상호(명칭)		
사업장 위치(주소)		
사업장 대표전화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종류	
	유해성	
	사고 위험성	
사고 발생시 대응정보	영향 범위	
	방제장비 보유현황	
	경보 전달방법	
	행동요령	
	비상연락 기관 및 전화번호	

○ **위해관리계획 내용을 인터넷으로 고지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고지는 어떻게 합니까?**

⇒ 인터넷 고지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현재, 온라인 주민고지 시스템을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에 구축 중에 있으며 조만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는 위해관리계획서(주민고지 내용 포함)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고 난 후에 해당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3 화학사고 발생신고

○ 개요

- 본 조는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신고 시간, 유출·누출 신고 기준량 및 보고 내용 등을 규정

○ 신고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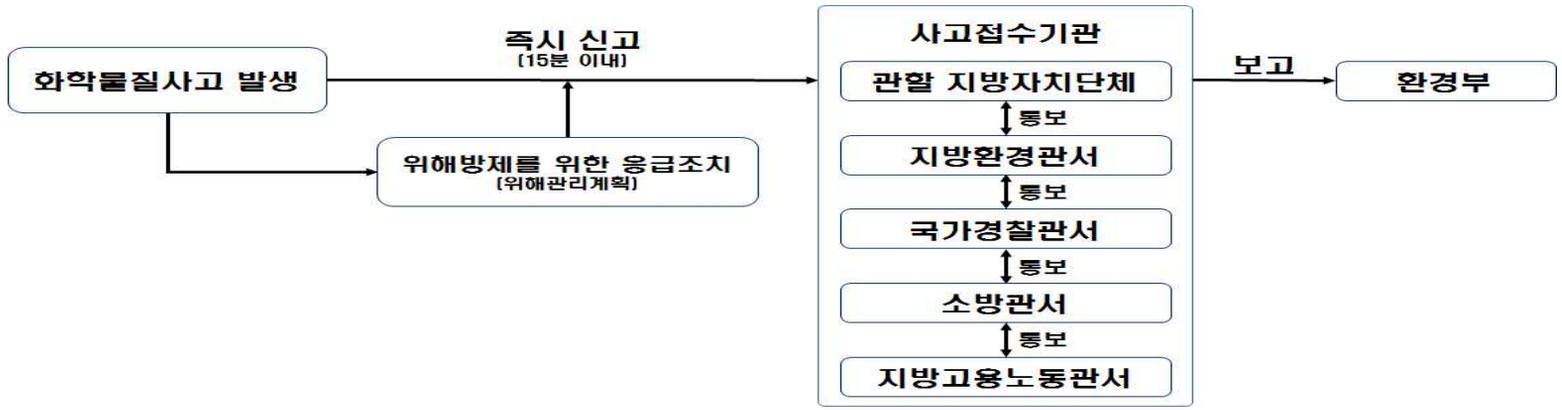

○ 법령 내용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		**제49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별 유출량·누출량 및 화학사고 양태(樣態)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여야 한다. ②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규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각각 마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규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해설

○ **관련예규: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환경부 예규 제538호, '14.12.31)

○ **화학물질 취급자의 즉시 신고 규정**

- 화학물질 유출·누출로 사람이나 사업장 밖의 환경에 영향이 있는 경우는 즉시 신고
- 즉시는 15분 이내 다만, 화학물질 취급자가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 화학물질이 유출·누출되었음에도 인명피해가 없고, 사업장 밖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는 유해화학물질이 5L 또는 5kg을 초과하여 유출·누출된 때 즉시 신고. 다만, 인체 및 환경 유해성과 이화학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신고 기준은 유·누출량에 따라 별도 규정

○ 화학사고 발생 시 취급자가 신고해야 할 내용

- 사고 발생 시간·장소, 원인, 원인 물질 및 피해·응급조치·주민대피 현황 등(관련 규정 제4조)

벌 칙

○ 벌칙

-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60조)

○ 행정 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23호				
1)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산·환경에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2) 위 1) 외의 경우에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산·환경에 영향이 발생한 경우

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나)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다) 법 제45조에 따라 화학사고 조사단이 실시한 영향조사 결과 사업장 밖 피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화학사고 발생 최초시점에서 15분이 경과한 후에 화학사고 발생을 인지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되나요?**

⇒ 확인 시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업무상 공공연하게 확인 할 수 있는 시점을 일컫는 것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이었고 고의성이 없었다면 지연신고가 처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신고 시점이 화학사고 발생 후 15분을 약간 경과하였을 경우에도 처벌받게 되나요?**

⇒ '즉시'의 시간적 개념으로 설정된 '15분'은 통상적인 짧은 시간을 나타내기 위함이므로 규정 시간 내에 신고할 수 있는 사전 조치가 되어 있고, 실제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최선의 행위가 확인 된다면 약간의 시간 경과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화학물질 누출·유출량이 5L 혹은 5kg 기준을 초과했는지 모호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고 기준량인 5L 혹은 5kg은 안전예방 차원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누출·유출량이 모호할 경우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4 화학사고 조치

❍ 개요

- 본 조는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후 사고 대응 관련 조정·지원, 영향조사, 피해산정, 복구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

❍ 제도에 대한 이해

- 개정법 이전에는 유해화학물질 사고 후 영향조사 등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했으나,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현장수습조정관을 지정하여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정보의 수집과 통보 등 역할을 구체화하여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개정법 이전의 화학사고 영향조사, 복구 및 사후 관리 항목에 비해,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화학사고 영향조사, 조치명령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또한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여 화학사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함

○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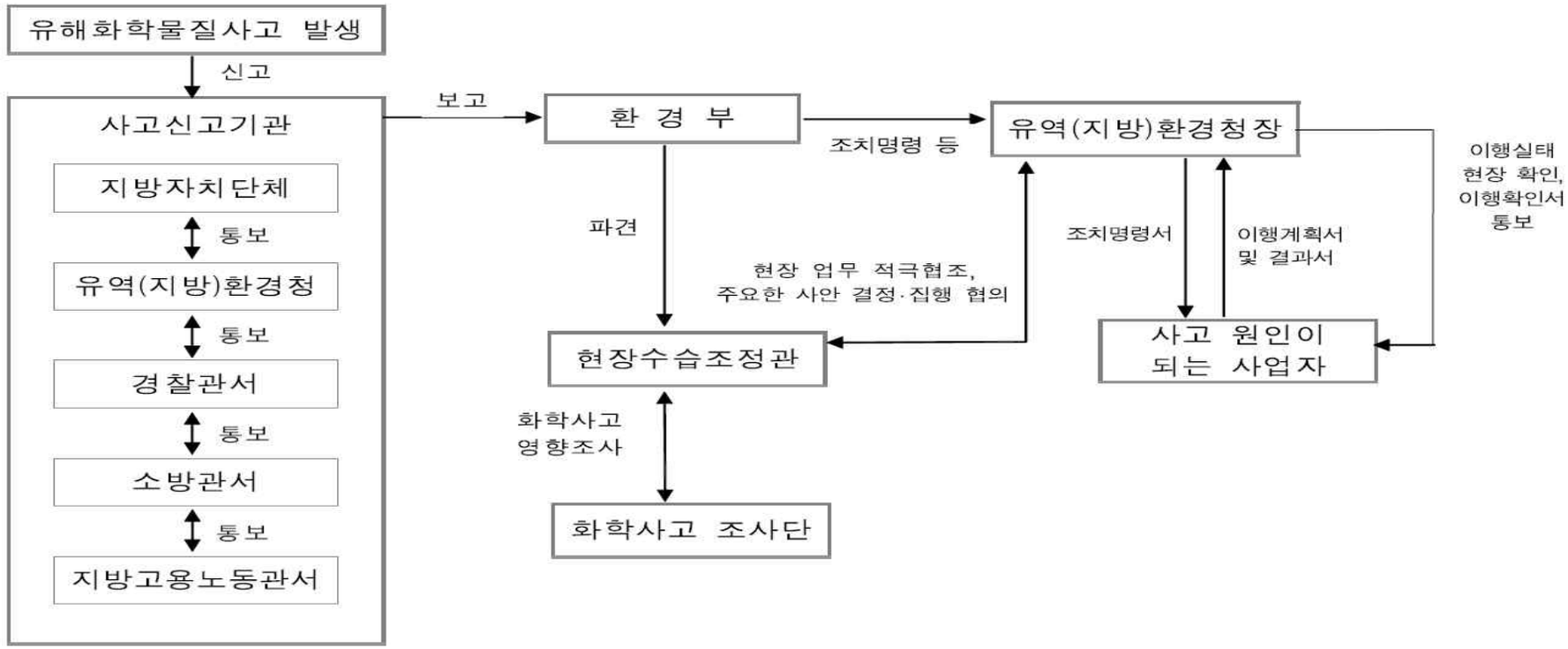

○ 법령 내용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44조(화학사고 현장 대응)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 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해당 화학사고 발생현장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다.		**제50조(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법 제44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이란 화학사고 대응능력을 갖춘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화학사고의 대응 관련 조정·지원 2. 화학사고 대응, 영향조사, 피해의 최소화·제거,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 3. 화학사고 대응, 복구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연락 유지 4. 화학사고 원인, 피해규모, 조치 사항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브리핑 5. 그 밖에 화학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 ③ 화학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을 포함한다)은 현장수습조정관이 화학사고 현장에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주요한 사안을 결정·집행할 경우에는 현장수습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5조(화학사고 영향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의 원인 규명,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 피해의 최소화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영향조사(이하 "영향조사"	**제18조(화학사고 조사단)**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조사단(이하 "화학사고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화학사고의 원인, 규모, 경과 및 인적·물적 피해사항 2.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특성 및 유해성·위해성 3. 화학사고 발생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4.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노출량 및 오염정도 5.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대기·수질·토양·자연환경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 6. 화학사고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 7. 그 밖에 화학사고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영향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화학사고 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의 유형,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원, 조사시기와 기간 등을 정한다. ③ 화학사고 조사단의 단장은 화학사고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된 구성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조사단의 단장과 구성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장 또는 구성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화학사고 조사단의 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화학사고 조사단은 조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화학사고 조사단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영향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해당 화학사고의 원인이 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1조(조치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조치명령서에 조치명령 상세 내역서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 화학사고로 인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 및 제거 2. 화학물질로 오염된 지역에 대한 복구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소화 및 제거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노출경로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복구조치의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환경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을 따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소화·제거 조치, 복구조치 및 이행계획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간은 해당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조치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서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5호서식의 이행계획서에 이행계획서 상세 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서를 받은 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6호서식의 이행결과서에 이행결과서 상세 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행결과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명령의 이행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점검한 후 별지 제67호서식의 이행확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등 화학사고 발생	**제19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 내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감독 및 화학사고 대응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특별관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주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관리지역의 범위 등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해당 특별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조문해설

○ 화학사고 현장 대응

- 화학사고의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의 장과 소속공무원으로서 화학사고 대응능력을 갖춘 자를 현장수습조정관으로 선정하여 화학사고의 대응 관련 조정·지원, 영향조사, 피해 최소화, 복구 등에 역할을 수행

○ 화학사고 영향조사

- 화학사고의 초동대응이 완료된 후 당해 사고 물질이 인근 주민의 건강 및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규명함을 말함

○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 및 운영 기준**

-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체적인 구성 및 수행사항은 관련 지침 제5조에 따라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동 비율로 구성(20명 이내)하며, 조사단의 단장은 현장수습조정관, 간사는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개발교육과장으로 구성

○ **사고 후 영향조사 결과 통보**

- 화학사고 조사단은 영향조사 완료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복구 및 사후관리**

- 화학사고의 원인이 되는 사업자는 피해의 최소화 및 제거,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이 사고원인자에게 사고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2차 오염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복구에 필요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조치명령서를 발부. 사고원인자는 조치명령서를 발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제출하고, 조치명령 이행 후에는 이행결과서를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제출.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은 이행결과서 접수 후 이행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점검하여 해당 조치명령 이행 완료에 대한 이행확인서를 통보

❍ 벌칙

-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 피해의 최소화 및 제거조치, 복구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58조제10호)

❍ 행정처분

- 영업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제35조제2항)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산·환경에 영향이 발생한 경우 1) 업무상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 법 제45조에 따라 화학사고 조사단이 실시한 영향조사 결과 사업장 밖 피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26호	1억원당 영업정지 1일 (최대30일)	1억원당 영업정지 1일 (최대60일)		
2)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 법 제45조에 따라 화학사고 조사단이 실시한 영향조사 결과 사업장 밖 피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26호	5천만원당 영업정지 1일 (최대90일)	5천만원당 영업정지 1일 (최대180일)		

○ **화학사고 후 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가 사업장 밖에 까지 영향을 미쳐 인명피해(사망 및 입원)가 발생하거나 환경피해(어류패사, 농작물 고사 등)가 발생한 경우, 동시에 주거지역에서의 대기 중 사고물질 농도가 급성노출지표의 기준치(환경부 사고대비물질 키인포가이드, 2-Tier Level) 초과한 경우 영향조사 실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전평가를 실시합니다. 이후 화학사고 조사단의 의결(과반 참석에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최종 영향조사 실시가 결정됩니다. 다만, 단순 안전사고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제외됩니다.

○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원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조사단은 20명 이내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동 비율로 구성됩니다. 민간위원의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분야별·지역별 전문가 인력풀은 매 2년마다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공하게 됩니다.

○ **영향조사의 실시하는 경우 조사 대상 지역과 항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조사 지역은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의 구동결과를 근거로 고・중・저노출 지역 및 비교지역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조사 항목은 대상지역 내의 주민 및 현장 대응자, 환경자원(토양, 대기, 지표수, 지하수), 생물자원(수서생물, 야생동식물, 기타 생명체)을 포함합니다. 조사단장은 조사 인력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조사 항목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화학물질로 오염된 지역에 대한 복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의해 발생한 주민건강 및 환경자원(토양·대기·지표수·지하수·수서생물·야생동식물·기타생명체 등)에 대한 피해·손상·손실을 사고 전의 형태로 되돌리는, 또는 감소된 환경혜택을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제반 활동을 말합니다.

○ **화학사고 후 영향조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영향조사는 주민건강영향과 환경영향으로 구분하여 수행하며, 각 영향 조사는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의 조사기간은 1단계 2개월, 2단계 10개월, 3단계 1년 혹은 그 이상이며, 필요 시 조사단장이 기간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 주요기관 연락처 ≫

기관	연락처	홈페이지
· 화학물질안전원 - 장외영향평가 - 위해관리계획 - 화학물질통계조사	 042-605-7046 042-605-7050 042-605-7057	http://nics.me.go.kr
·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02-6050-1304	http://www.chemnavi.or.kr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707	http://www.kcma.or.kr
· 한강유역환경청	031-790-2879	
· 금강유역환경청	042-865-0761	
· 낙동강유역환경청	055-211-1662	
· 영산강유역환경청	062-410-5264	
· 대구지방환경청	053-230-6571	
· 원주지방환경청	033-764-0985	
· 새만금지방환경청	063-270-1860	